

2026 마곡지구 17단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입주자모집공고

- ▶ **공급위치** :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동 마곡도시개발사업구역 17단지
- ▶ **공급대상** : 총 577세대 중 전용면적 59㎡, 84㎡ 공급호수 381호
- ▶ **입주자모집공고일** : 2026. 02. 27.

구분		접수기간
사전청약 당첨자		2026.03.10.(화) 10:00 ~ 03.11.(수) 17:00
특별공급 (전체)	청년	2026.03.12.(목) 10:00 ~ 03.13.(금) 17:00
	신혼부부	
	생애최초	
	신생아	
	철거민	
일반공급	1순위자 (서울시 2년 이상 거주)	2026.03.16.(월) 10:00 ~ 17:00
	1순위자 (서울시 2년 미만 거주, 수도권)	2026.03.17.(화) 10:00 ~ 17:00
	2순위자	2026.03.18.(수) 10:00 ~ 17:00
당첨자 발표		2026.04.02.(목) 16:00 이후





마곡지구 17단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입주자모집공고

본 입주자모집공고(마곡지구 17단지, 2026.02.27.)의 주택 유형은

「주택법」 제2조제9호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23조의4제2항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입니다.

※ 본 단지는 2023.09.27.자로 사전청약 입주자모집공고를 실시한 '마곡지구 10-2단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과 동일한 단지입니다.

공급위치 및 대상	<p>▶ 공급위치 :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동 마곡도시개발사업구역 17단지(구 10-2단지)</p> <p>▶ 공급대상 : 총 577세대(임대주택 포함) 중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381호(전용면적 59㎡ 355세대, 84㎡ 26세대)</p>
<p>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이하 SH)에서는 콜센터(1600-3456) 등을 통해 입주자모집공고와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담 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의 참고 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숙지하시어 사전에 주민등록표등·초본, 등기부등본 및 소득관련 서류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2.27.) 현재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동일세대 내 2인 이상(부부 제외)이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중복 및 교차청약 시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됩니다. (단, 신청자 본인이 동일블록 내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에 중복신청은 가능하며,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됨) ■ 부부(예비신혼부부 제외)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해 각각 청약 신청할 수 있으나, 중복당첨 시 선 접수분만 유효하며 후 접수분은 당첨 무효처리 됩니다. ■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APT, 불법행위재공급, 규제지역 무순위 등)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청약홈, LH 등 타기관을 통해 청약 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도 포함),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당첨자 발표일이 다른 주택에 청약하는 것은 가능하며, 중복 당첨 시 발표일이 먼저인 단지의 당첨만 유효함) 	
<p>이 공고문의 공급대상 주택은 「주택법」 제2조제9호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23조의4제2항에 따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서 토지의 소유권은 건설사업을 시행하는 SH가 가지게 되고 토지 지상의 건축물 등에 대한 소유권은 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가지게 됩니다. 주택을 분양받을 경우 장기간 토지를 임대받게 되나 토지소유권을 가질 수는 없으므로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임대료를 납부하여야 하고, 분양받은 주택을 양도할 경우 거주무기간 및 전매제한기간 중에는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해당 주택의 매입을 신청하여야 하는 등의 제한이 있으므로 이 점을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p> <p>이 공고문에 대하여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SH 홈페이지에 '변경공고'가 게시될 수 있으며 신청자께서는 청약 접수 전까지 반드시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p>	

■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2.27.)** 현재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주택도시시기금 대출 상품을 관계부처에서 협의 중이며, 세부 내용은 추후 당첨자를 대상으로 별도로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알려드립니다】

■ 이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6.02.27**이며, 이는 청약자격(청약신청, 자격조건인 기간, 나이, 세대구성원, 지역우선, 주택소유 등)의 판단기준일이 됩니다. 주택관리번호는 **2026000041**이며, 공고문은 공사 홈페이지(www.i-sh.co.kr) 및 인터넷청약시스템(www.i-sh.co.kr/app)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건본주택 관람 안내**

대 상	방문 일정	주 소	주 차	기 타
일반고객 (사전청약 당첨자 포함)	2026.03.07.(토) ~ 03.09.(월) 10:00~17:00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동 747-1, 마곡지구 17단지	주차가 불가하므로 대중교통 이용	* 관람 시 대기 발생 가능 문의 : ☎ 1600-3456

- **[중요]** 현장 여건상 주차공간이 매우 협소하고, 주변이 모두 주거 단지로 이루어져 있어 차량 정체 및 교통 혼잡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방지하고자 **주차장을 운영하지 않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방문 시 반드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불가피하게 차량 이용 시 인근 공영주차장 등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 임산부 등 이동약자를 위한 일부 주차 공간은 마련되어 있으나, 공간이 매우 협소하여 주차가 불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건본주택은 59A, 84B 타입이 설치되었으므로 관람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치되지 않은 타입의 세대(59B, 59D, 59E, 84A)는 팸플릿 및 사이버 건본주택을 통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이버 건본주택** : SH인터넷청약시스템(www.i-sh.co.kr/app) > 왼쪽 하단의 '사이버 모델하우스' > 주택분양 > 마곡지구 17단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 건본주택 관람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이버 건본주택 및 팸플릿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실물 건립 세대를 관람하지 못하고 청약을 신청하여 당첨된 것에 대해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현장 여건상 **건본주택에서는 청약 상담이 이루어지지 않으니** 청약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콜센터(1600-3456) 전화상담 또는 **본사(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방문상담**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

공고	청약접수			당첨자발표	당첨자 서류접수(방문)	계약(방문)
	사전청약 당첨자	특별공급	일반공급			
2026.02.27. (금)	03.10.(화) 10:00 ~ 03.11.(수) 17:00	03.12.(목) 10:00 ~ 03.13.(금) 17:00	03.16.(월) 10:00 ~ 03.18.(수) 17:00	04.02.(목) (16:00 이후)	04.06.(월) ~ 04.09.(목) (10:00 ~ 17:00)	06.24.(수) ~ 6.26.(금) (10:00 ~ 17:00)

- ※ **청약접수**는 SH인터넷청약시스템(www.i-sh.co.kr/app)을 통해 이루어지며, 상세 내용은 본 입주자모집공고문 44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일반공급의 경우 거주지역 및 통장순위에 따라 접수 일자가 상이**하므로, 상세 내용은 본 입주자모집공고문 44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당첨자 서류접수 및 계약**은 본사(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SH)에서 이루어지며, 상세 내용은 본 입주자모집공고문 47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약 자격 확인 및 준비사항

구 분	조회방법
청약통장 납입인정회차 및 인정금액 확인	(인터넷사용가능시)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접속(www.applyhome.co.kr) → 청약자격 확인 → 청약통장 순위확인서 발급 → 기타 정보 입력 후 조회 (인터넷사용불가시) 청약통장 가입은행 방문 →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발급 → 납입인정금액 및 납입인정 회차 확인
청약제한사항 확인	청약제한사항 : 재당첨제한, 특별공급 1회 제한, 부적격자 1년 내 재당첨, 민간사전청약당첨 등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접속(www.applyhome.co.kr) → 청약자격 확인 → 청약제한사항 확인
거주지역 및 세대구성원 확인	정부24 접속(www.gov.kr) → 주민등록표등본으로 검색
인터넷 청약신청을 위한 인증서 준비	인증서를 소지 하고 SH 홈페이지 인터넷 청약시스템에 접속(www.i-sh.co.kr/app) 하여 인터넷 신청하시기 바라며, 모바일을 통해 청약할 경우에도 인증서가 필요하므로 모바일에 인증서를 미리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증서 : 공동인증서(금융결제원, 코스콤,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 정보통신), 간편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 일부 인증서의 경우 시스템점검·오류 등으로 사용이 불가할 수 있으니, 두 개 이상의 인증서를 준비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안내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정의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주택법」 제2조제9호에 의하여 토지의 소유권은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사업을 하는 SH가 가지고, 건축물 등에 대한 소유권(건축물의 전유부분에 대한 구분소유권은 이를 분양받은 자가 가지고, 건축물의 공용부분·부속건물은 분양받은 자들이 공유)은 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가지는 주택을 말합니다.
- 공공주택사업자인 SH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23조의4제2항에 따라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당첨자를 선정하게 되므로 다른 형태의 공공주택 입주자 선정과는 그 기준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는 토지소유자(SH)와 「주택법」 제78조제3항 및 「주택법 시행규칙」 제31조에서 정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여 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며,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주택의 구분소유권을 목적으로 그 토지 위에 40년 이내의 임대차기간(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소유자의 75퍼센트 이상이 계약갱신을 청구하는 경우 40년의 범위에서 갱신이 가능) 동안 지상권이 설정된 것으로 봅니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양수한 자 또는 상속받은 자는 위 임대차계약을 승계합니다.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임대료는 「주택법 시행령」 제81조제2항에 의하여 '해당 택지의 조성원가에 입주자모집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의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3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한 가액에 입주자모집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의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3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사이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여 정하는 금액을 12개월로 분할한 금액 이하로 할 수 있습니다.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임대료는 「주택법」 제78조제6항에 따라 월별 임대료를 원칙으로 하되 토지소유자와 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합의한 경우 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주택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토지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하려는 경우 그 보증금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이자율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3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이자율 이상으로 적용합니다.
- 「주택법 시행령」 제81조제3항 및 제4항에 의하여, 토지소유자(SH)는 토지임대주택을 분양받은 자와 토지임대료에 관한 약정을 체결한 후 2년이 지나기 전에는 토지임대료 증액을 청구할 수 없으며, 2년이 지나 토지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 평균지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증액률을 산정하되 이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차임 등의 증액청구 한도 비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과 관련하여 「주택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민법」 순으로 적용합니다.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소유자가 관련 법률에 따라 해당 주택을 철거하고 재건축을 하고자 하는 경우 「주택법」 제79조에 따라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재건축할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공공매입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서, 「주택법」 제78조의2에 따라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전매제한기간이 지나기 전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주택법 시행규칙」 제32조의2에 따른 매입신청서를 작성하고 일정서류(분양계약서 사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를 첨부하여 SH에 해당 주택의 매입을 신청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SH는 해당 주택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 또한 「주택법」 제6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전매제한기간 내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전매가 이루어진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SH가 해당 주택을 매입합니다.
- 위의 경우 SH는 해당 주택의 매입비용과 보유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하여 해당 주택을 취득합니다.

■ 신청자격 안내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2.27.) 현재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다음의 각 자격을 갖춘 분에게 1세대 1주택(청년의 경우 1인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부부 제외)으로 모두 부적격처리 됩니다.

〈표1〉 공급유형별 신청자격 및 자격검증대상

구분	사전청약 당첨자	특별공급				일반공급		
		청년	신혼부부*	생애최초	신생아	신생아 우선공급	우선공급(1순위자)	추첨공급
무주택여부, 중복청약, 재당첨여부 등	세대구성원	신청자 본인	세대구성원	세대구성원 (과거 5년 이내 당첨 이력 없음**)	세대구성원	세대구성원	세대구성원 (과거 5년 이내 당첨 이력 없음**)	세대구성원
세대주 여부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신청자 본인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신청자 본인	해당 없음
과거 주택소유이력	세대구성원 (사전청약 공고일부대)	신청자 본인	해당 없음	세대구성원***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입주자저축	해당 없음	가입 6개월 경과, 6회 이상 납입	가입 6개월 경과, 6회 이상 납입	1순위자 (가입 2년 경과, 24회 이상 납입) ※ 저축액 선납금 포함 600만원 이상	가입 6개월 경과, 6회 이상 납입	입주자저축 가입**	1순위자 (가입 2년 경과, 24회 이상 납입)	입주자저축 가입
소득	해당 없음	(신청자 본인) 월평균소득 140%이하	(세대)월평균소득 130%이하 (맞벌이) 200%이하	(세대)월평균소득 130%이하 (맞벌이) 200%이하	(세대)월평균소득 140%이하 (맞벌이) 200%이하	(세대)월평균소득 100%이하 (맞벌이) 140%이하	(세대)월평균소득 100%이하 (맞벌이) 140%이하	(세대)월평균소득 100%이하 (맞벌이) 200%이하
총자산	해당 없음	(신청자 본인) 276백만원 이하 (부모) 1,035백만원 이하	362백만원 이하					

- * 신혼부부 특별공급 중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검증합니다.
- ** **마곡지구 17단지**는 「주택법」 제63조에 의한 **투기과열지구**로서, 1순위 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제1항제1호의 1순위 요건(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하였을 것, 세대주일 것,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과거 5년 이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되지 아니하였을 것)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경우 세대구성원 전원이 과거 주택소유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단, 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신고 전 주택을 소유하였다가 혼인신고 전 처분한 사실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 **** ‘맞벌이’란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 ※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23.0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인 경우 10%p, 2명 이상인 경우(‘23.0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이고 ’23.03.27. 이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포함) 20%p 가산하여 소득·자산기준이 완화되며, 완화 기준은 “〈표3-1〉 출산가구 자산보유기준 완화” 및 “〈표5-1〉 출산가구 소득기준 완화”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완화된 기준을 인정받으려는 분은 출생, 입양, 임신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해당 내용을 증명해야 하며,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격미달일 경우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 **철거민 특별공급의 신청자격은 3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 안내

- 무주택세대구성원(청년 특별공급은 신청자 본인,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 이하 본 공고문에서 같음)의 기준일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2.27.)이며, 그 이후 등본상 세대구성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ex.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이전 등) 공고일 기준 세대구성원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등본 및 초본(세대주와의 관계, 전입변동일 포함 발급)을 당첨자 서류와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증빙 서류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의 책임은 당첨자에게 있습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할 때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청년 특별공급의 경우 무주택자)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아래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등본의 직계존비속까지 포함)이 다음 [주택 및 분양권등]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무주택자로 판단

[무주택세대구성원]

- 가.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주택공급신청자’라 함)
-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이하 같음)
- 라.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주택 및 분양권등]

- 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동산 중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다. 나목에 따른 지위(이하 “분양권등”이라 한다)를 승계취득(전체 또는 일부의 권리를 매매하여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기타 신청자격]

- ※ 「민법」상 미성년자는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거나,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만 신청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자녀 및 형제자매는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 세대구성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5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가. 실종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 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 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 다. 공급신청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 ※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란 예비신혼부부가 입주 시 제출하는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될 세대원 전원을 말합니다.

- 2018년 12월 11일 개정·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이라 함)을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판단하오니, 청약 시 관련 내용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사업계획승인,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한 주택을 신규 계약한 경우, ‘공급계약체결일’ 기준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단, 시행일 이후 모집공고 등을 하였으나, 청약 미달로 인해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한 분양권 등을 최초로 취득한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
 - 시행일(‘18.12.11.) 이전에 모집공고 등을 통해 공급한 분양권 등을 매매로 취득하여 시행일 이후 실거래신고한 경우, 실거래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단, 시행일 전에 모집공고 등을 한 주택에 청약하여 취득하고 계신 분양권 등은 주택으로 보지 않으나, 해당 분양권 등의 매매대금 완납, 소유권 이전 등으로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분양권 등이 아닌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지역우선 공급 관련 안내

지구	단지	투기과열지구 여부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여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4조)	지역우선 공급조건
마곡도시개발사업구역	17단지	0	X	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 2년 이상 거주

- 금회 공급하는 지구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및 제25조 규정에 의거 신청자격별 <지역우선 공급기준(18페이지)>에 따라 지역별 물량을 배정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2.27.) 현재 지역별 거주자(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경우 일정기간 이상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거주지역 및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주택으로, 거주기간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역산했을 때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기간을 말하며, 아래 기준에 따라 국외에 거주한 기간은 국내에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 거주기간 산정 시 국외 체류기간 적용 기준

거주기간에서 출입국사실증명서상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 또는 연간 183일을 초과(거주제한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은 각 연도별 183일을 말함)하여 국외에 거주한 기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단, 단독세대주이거나 동거인이 세대원일 경우 국내 거주 인정 불가)

▶ 국외 체류기간 적용 예시

- 사례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며 지역우선 거주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으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지역우선 거주기간'을 역산한 기간 동안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체류한 경력이 있으면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는 불인정하나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로는 청약 가능
- 사례2)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음
- 사례3)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

■ 재당첨제한, 전매제한, 거주 의무 등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으로 아래 기간만큼 재당첨제한, 전매제한 및 거주 의무가 적용됩니다.

구분	기준일 (~로부터)	기간	관련법령
재당첨제한	당첨자 발표일	10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
전매제한	당첨자 발표일	10년	「주택법」제64조, 「주택법 시행령」제73조
거주 의무	최초 입주가능일	5년	「주택법」제57조의2, 「주택법 시행령」제60조의2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의3에 따른 특례 안내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의3에 따라 아래와 같은 경우에도 청약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제외)·생애최초·신생아 특별공급**의 경우, 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신고일 전에 당첨자로 관리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혼인특례]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제외)** 특별공급의 경우, 신청자 본인이 혼인신고일 전에 당첨자로 관리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출산특례]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포함)·신생아 특별공급**의 경우, '24.06.19.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나 입양 포함)가 있는 분은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특별공급 당첨이력이 있더라도 한 차례에 한정(1세대 1주택 기준)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신청자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한함) 신청할 수 있으나, 당첨 후 기존 소유 주택(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으로서 분양권등을 포함)의 처분 조건*을 승낙하여야 합니다. (단, 이 경우 기존 소유 주택도 자산보유기준 적용 대상이 됩니다.)
- * 기존 소유 주택의 처분 조건

1. 기존 소유 주택의 처분 조건을 승낙할 것
2.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에 관하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각 호(건물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할 것
3. 공급받은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처분을 완료할 것

※ 위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하며, 공급받은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 전까지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했음을 증빙하지 못할 경우 공급계약이 취소되고 입주가 불가합니다.

■ 기타사항

- 본 단지의 청약 신청은 PC 또는 모바일에서 가능합니다. 모바일 사용 시 WIFI에 연결되지 않을 경우 데이터 요금이 부과되며, 스마트기기(스마트폰 등)에 따라 O/S 및 브라우저 버전, 호환성 등의 문제로 일부 사용이 불가할 수 있으니, 사전에 모바일로 신청이 가능한지 [모바일 → SH인터넷청약시스템 → 주택분양 → 청약신청 → 인터넷 청약(인증서 로그인)]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바일 청약이 시스템장애 등으로 중단될 경우 일반 PC를 이용하여 인터넷청약이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우리 공사에서 확인하며, 확인 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되거나 당첨자 서류 제출일에 당첨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 기간 입주자 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추후 계약 체결 일정 등에 대한 안내는 청약 시 기재된 연락처를 기준으로 별도 안내할 예정이므로, 연락처가 변경되거나 잘못 기재한 경우 서면으로 변경 사실을 우리 공사에 고지하여야 합니다. 고지하지 않을 경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안내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우리 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이 공고문에 기재된 나이는 별도 표시가 없는 경우 「민법」 제158조에 따른 「만 나이」를 의미합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공공주택 입주예약자 업무처리지침」 등 관계법령에 따르며, 공고문에 기재된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청약신청 시 유의사항】

■ (다른 주택 당첨으로 인한) 재당첨제한 및 부적격 당첨에 따른 청약 제한 기간 중에 있는 분

- 청년 특별공급의 경우 재당첨제한 적용주택(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등)에 당첨되어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당첨자 발표일 현재 재당첨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청약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은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청년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신혼부부·생애최초·신생아·철거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경우 재당첨제한 적용주택(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등)에 당첨되어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당첨자 발표일 현재 재당첨제한 기간 내에 있는 당첨자 및 그 세대(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에 속한 분,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청약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은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신혼부부·생애최초·신생아·철거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위 사항에 해당되는 분이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 당첨이 취소되며, 계약 체결이 불가하고 부적격 당첨자로 명단 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 선정 제한 등) 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당첨제한규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의거,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그 중 가장 긴 제한 기간을 적용)

당첨된 주택의 구분	적용기간(당첨일로부터)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제1 항제3호) -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제1 항제6호)	10년간
-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제1 항제7호)	7년간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제1 항제5호)	5년간

■ (다른주택 당첨으로) 특별공급을 받은 분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6의 특별공급을 받은 분 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내지 제47조에 의하여 특별공급(과거 3자녀 우선공급, 노부모부양 우선공급 포함)을 받은 분은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청년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6의 특별공급을 받은 분 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내지 제47조에 의하여 특별공급(과거 3자녀 우선공급, 노부모부양 우선공급 포함)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신혼부부·생애최초·신생아·철거민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합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 단서조항에 해당하는 경우나 제55조의3을 적용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은 6페이지 하단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른 특례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동·호는 신청 주택형 내에서 동별·층별·향별·타입별·층 세대 구분 없이 한국부동산원의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됩니다.

■ 청약통장 전환 관련

- 종전 통장(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여 해당 주택에 신청하고자 할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2026.02.26.)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하며, 전환한 주택청약종합저축 실적이 각 공급유형별 입주자저축 요건 및 배점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청약저축 기 납입실적을 합산하여 인정하며, 청약예금·청약부금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한 날부터 납입실적을 인정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2.27.) 이후 종전 통장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해당 주택의 순위확인서 발급(순위확인)이 불가하며 추첨대상에서 제외됨



■ 그 외 유의사항

- 방문 접수 시의 혼잡 방지 및 신청자의 편의 도모를 위해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오니, 신청접수일 전에 인증서(공동인증서, 간편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미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신청접수 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기재)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본 공고문의 신청자격(무주택세대구성원여부, 거주지역, 해당제한여부, 주택소유여부 및 소득·자산 등), 유의사항 등을 사전에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심사 등을 통해 우리공사에서 확인한 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때에는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 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 선정 제한 등)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신청자의 입주자저축 순위, 납입인정금액 및 당첨자 확정 후 무주택여부, 당첨 사실 등 조회 확인을 위해 가입은행 등 해당 기관에 개인정보 제공이 필수적이므로 신청자는 청약 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과 '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해야 하며, 당첨자는 당첨자 서류제출 시 소득 및 자산조회를 위해 별도의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 등이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급유형에 따라 신청일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접수일정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관계법령에 따라 각 공급유형 및 청약순위 신청일에 신청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공급규모 · 공급대상 및 공급가격 등

1. 공급규모

- 마곡도시개발사업구역 17단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전용면적 59㎡ 355세대, 84㎡ 26세대 (사전청약 175세대, 특별공급 162세대, 일반공급 44세대)
- ※ 마곡도시개발사업구역 17단지의 총 건설호수는 577세대(임대주택 포함)입니다.

2. 공급대상

지구 및 단지	주택형	발코니 타입	주택 타입	세대당 주택면적(㎡)					세대당 사용 대지 면적 (㎡)	공급세대수							최고 총 수	최 하 총 세 대 수		
				공급면적		그 밖의 공용면적		계약 면적 (계)		계	사전 청약 당첨자	특별공급							일반공급	
				주거 전용	주거 공용	기타 공용	지하 주차장					철거민	청년	신혼부부	생애 최초	신생아				
합계									381	175	1	30	30	30	71	44				
마곡 17	059.0000H	확장	59A	59.40	22.82	10.48	37.06	129.76	34.51	355	175	-	30	26	26	61	37	16	7	
			59B	59.46	22.84	10.47	37.09	129.86	34.54											
			59D	59.93	23.04	10.57	37.39	130.93	34.82											
			59E	59.70	22.94	10.51	37.25	130.40	34.69											
	084.0000H	확장	84A	84.85	32.61	14.96	52.94	185.36	49.30	26	-	1	-	4	4	10	7			-
			84B	84.86	32.61	14.96	52.95	185.38	49.31											

- ※ 주택관리번호 : 2026000041
-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전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며, 발코니 면적 등 실주거면적은 각 세대 타입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사이버)견본주택 또는 팸플릿 등을 통해 사전에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미확인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 청약 신청은 반드시 주택형(전용면적)별로 신청해야 하며, 개별 주택타입 선택은 불가능합니다.
- ※ 동·호는 신청 주택형 내에서 동별·층별·항별·타입별·축 세대 구분 없이 한국부동산원의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됩니다.
-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건축 공정률 90%를 초과한 후 분양하는 주택으로서 마이너스 옵션제 등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 ※ 사전청약 당첨자의 미신청 물량은 일반공급 물량으로 전환되며, 사전청약 당첨자의 접수 결과에 따라 일반공급 물량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습니다. (㎡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 × 0.3025 또는 ㎡ ÷ 3.3058)
- ※ '주택형'의 표기는 주거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표기하였으며,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입니다.
- ※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 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동일한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 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 최고 층수는 해당 주택형의 최상층 층수이며, 동·호수는 팜플릿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공급가격

■ 건물분양가

- ※ 본 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주택법」 제57조에 따라 산정한 분양가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층, 항 등에 차등을 두어 책정한 금액입니다.
- ※ 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을 포함하여 층·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이를 기준으로 실제 층고에 해당하는 층·호수를 고려하여 주택가격을 산정하였습니다.
- ※ 상기 금액에는 취득세, 인지세 등의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 동·호는 당첨자 선정 시 한국부동산원의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되며, 분양가는 타입·층·항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반드시 청약 전 (사이버) 견본주택 및 팜플릿 등을 통해 동·호 배치도, 평면도 및 면적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동	호	주택형	평면유형	주택가격(천원)			발코니 확장비용 (원, 부가세 포함)
				계	계약금 (계약 시 10%)	잔금 (입주 시 90%)	
1701	201	084.0000H	84B	409,523	40,952	368,571	3,228,500
1701	202	059.0000H	59A	313,326	31,333	281,993	5,482,400
1701	203	059.0000H	59A	319,993	31,999	287,994	5,482,400
1701	204	059.0000H	59A	319,993	31,999	287,994	5,482,400
1701	301	084.0000H	84B	422,593	42,259	380,334	3,228,500
1701	302	059.0000H	59A	319,993	31,999	287,994	5,482,400
1701	303	059.0000H	59A	326,659	32,666	293,993	5,482,400
1701	304	059.0000H	59A	326,659	32,666	293,993	5,482,400
1701	401	084.0000H	84B	422,593	42,259	380,334	3,228,500
1701	402	059.0000H	59A	326,659	32,666	293,993	5,482,400
1701	403	059.0000H	59A	333,326	33,333	299,993	5,482,400
1701	404	059.0000H	59A	333,326	33,333	299,993	5,482,400
1701	501	084.0000H	84B	435,663	43,566	392,097	3,228,500
1701	502	059.0000H	59A	333,326	33,333	299,993	5,482,400
1701	503	059.0000H	59A	339,992	33,999	305,993	5,482,400
1701	504	059.0000H	59A	339,992	33,999	305,993	5,482,400
1701	601	084.0000H	84B	435,663	43,566	392,097	3,228,500
1701	602	059.0000H	59A	339,992	33,999	305,993	5,482,400
1701	603	059.0000H	59A	343,326	34,333	308,993	5,482,400
1701	604	059.0000H	59A	343,326	34,333	308,993	5,482,400
1701	701	084.0000H	84B	435,663	43,566	392,097	3,228,500
1701	702	059.0000H	59A	343,326	34,333	308,993	5,482,400
1701	703	059.0000H	59A	343,326	34,333	308,993	5,482,400
1701	704	059.0000H	59A	343,326	34,333	308,993	5,482,400
1701	801	084.0000H	84B	435,663	43,566	392,097	3,228,500
1701	802	059.0000H	59A	343,326	34,333	308,993	5,482,400
1701	803	059.0000H	59A	343,326	34,333	308,993	5,482,400
1701	804	059.0000H	59A	343,326	34,333	308,993	5,482,400
1701	901	084.0000H	84B	444,376	44,438	399,938	3,228,500



동	호	주택형	평면유형	주택가격(천원)			발코니 확장비용 (원, 부가세 포함)
				계	계약금 (계약 시 10%)	잔금 (입주 시 90%)	
1701	902	059.0000H	59A	343,326	34,333	308,993	5,482,400
1701	1001	084.0000H	84B	444,376	44,438	399,938	3,228,500
1701	1002	059.0000H	59A	343,326	34,333	308,993	5,482,400
1701	1101	084.0000H	84B	444,376	44,438	399,938	3,228,500
1701	1102	059.0000H	59A	343,326	34,333	308,993	5,482,400
1701	1201	084.0000H	84B	453,089	45,309	407,780	3,228,500
1701	1202	059.0000H	59A	343,326	34,333	308,993	5,482,400
1701	1301	084.0000H	84B	453,089	45,309	407,780	3,228,500
1701	1302	059.0000H	59A	343,326	34,333	308,993	5,482,400
1701	1401	084.0000H	84B	453,089	45,309	407,780	3,228,500
1701	1402	059.0000H	59A	343,326	34,333	308,993	5,482,400
1702	103	059.0000H	59B	296,658	29,666	266,992	6,173,200
1702	105	059.0000H	59D	296,658	29,666	266,992	5,511,000
1702	203	059.0000H	59B	306,660	30,666	275,994	6,173,200
1702	205	059.0000H	59D	306,660	30,666	275,994	5,511,000
1702	302	059.0000H	59A	313,326	31,333	281,993	5,482,400
1702	303	059.0000H	59B	313,326	31,333	281,993	6,173,200
1702	305	059.0000H	59D	306,660	30,666	275,994	5,511,000
1702	402	059.0000H	59A	313,326	31,333	281,993	5,482,400
1702	403	059.0000H	59B	313,326	31,333	281,993	6,173,200
1702	405	059.0000H	59D	306,660	30,666	275,994	5,511,000
1702	502	059.0000H	59A	319,993	31,999	287,994	5,482,400
1702	503	059.0000H	59B	319,993	31,999	287,994	6,173,200
1702	505	059.0000H	59D	313,326	31,333	281,993	5,511,000
1702	602	059.0000H	59A	326,659	32,666	293,993	5,482,400
1702	603	059.0000H	59B	326,659	32,666	293,993	6,173,200
1702	605	059.0000H	59D	313,326	31,333	281,993	5,511,000
1702	702	059.0000H	59A	326,659	32,666	293,993	5,482,400
1702	703	059.0000H	59B	326,659	32,666	293,993	6,173,200
1702	705	059.0000H	59D	313,326	31,333	281,993	5,511,000
1702	802	059.0000H	59A	333,326	33,333	299,993	5,482,400
1702	803	059.0000H	59B	333,326	33,333	299,993	6,173,200
1702	805	059.0000H	59D	319,993	31,999	287,994	5,511,000
1702	902	059.0000H	59A	333,326	33,333	299,993	5,482,400
1702	903	059.0000H	59B	333,326	33,333	299,993	6,173,200
1702	905	059.0000H	59D	319,993	31,999	287,994	5,511,000
1702	1003	059.0000H	59B	333,326	33,333	299,993	6,173,200
1702	1005	059.0000H	59D	326,659	32,666	293,993	5,511,000
1702	1103	059.0000H	59B	333,326	33,333	299,993	6,173,200
1702	1105	059.0000H	59D	326,659	32,666	293,993	5,511,000
1702	1203	059.0000H	59B	339,992	33,999	305,993	6,173,200
1702	1205	059.0000H	59D	326,659	32,666	293,993	5,511,000
1702	1303	059.0000H	59B	339,992	33,999	305,993	6,173,200
1702	1305	059.0000H	59D	326,659	32,666	293,993	5,511,000
1702	1403	059.0000H	59B	339,992	33,999	305,993	6,173,200
1702	1405	059.0000H	59D	326,659	32,666	293,993	5,511,000
1702	1503	059.0000H	59B	339,992	33,999	305,993	6,173,200
1702	1505	059.0000H	59D	326,659	32,666	293,993	5,511,000
1702	1603	059.0000H	59B	339,992	33,999	305,993	6,173,200
1702	1605	059.0000H	59D	326,659	32,666	293,993	5,511,000
1703	201	059.0000H	59D	306,660	30,666	275,994	5,511,000
1703	202	059.0000H	59B	306,660	30,666	275,994	6,173,200
1703	301	059.0000H	59D	306,660	30,666	275,994	5,511,000
1703	302	059.0000H	59E	313,326	31,333	281,993	5,000,600

동	호	주택형	평면유형	주택가격(천원)			발코니 확장비용 (원, 부가세 포함)
				계	계약금 (계약 시 10%)	잔금 (입주 시 90%)	
1703	305	059.0000H	59A	313,326	31,333	281,993	5,482,400
1703	401	059.0000H	59D	306,660	30,666	275,994	5,511,000
1703	402	059.0000H	59E	313,326	31,333	281,993	5,000,600
1703	405	059.0000H	59A	313,326	31,333	281,993	5,482,400
1703	501	059.0000H	59D	313,326	31,333	281,993	5,511,000
1703	502	059.0000H	59B	319,993	31,999	287,994	6,173,200
1703	505	059.0000H	59A	319,993	31,999	287,994	5,482,400
1703	601	059.0000H	59D	313,326	31,333	281,993	5,511,000
1703	602	059.0000H	59B	326,659	32,666	293,993	6,173,200
1703	605	059.0000H	59A	326,659	32,666	293,993	5,482,400
1703	701	059.0000H	59D	313,326	31,333	281,993	5,511,000
1703	702	059.0000H	59E	333,326	33,333	299,993	5,000,600
1703	705	059.0000H	59A	326,659	32,666	293,993	5,482,400
1703	801	059.0000H	59D	319,993	31,999	287,994	5,511,000
1703	802	059.0000H	59E	333,326	33,333	299,993	5,000,600
1703	805	059.0000H	59A	333,326	33,333	299,993	5,482,400
1703	901	059.0000H	59D	319,993	31,999	287,994	5,511,000
1703	902	059.0000H	59B	333,326	33,333	299,993	6,173,200
1703	905	059.0000H	59A	333,326	33,333	299,993	5,482,400
1703	1001	059.0000H	59D	326,659	32,666	293,993	5,511,000
1703	1002	059.0000H	59B	339,992	33,999	305,993	6,173,200
1703	1005	059.0000H	59A	333,326	33,333	299,993	5,482,400
1703	1101	059.0000H	59D	326,659	32,666	293,993	5,511,000
1703	1102	059.0000H	59B	339,992	33,999	305,993	6,173,200
1703	1201	059.0000H	59D	326,659	32,666	293,993	5,511,000
1703	1202	059.0000H	59B	339,992	33,999	305,993	6,173,200
1703	1301	059.0000H	59D	326,659	32,666	293,993	5,511,000
1703	1302	059.0000H	59B	339,992	33,999	305,993	6,173,200
1703	1401	059.0000H	59D	326,659	32,666	293,993	5,511,000
1703	1402	059.0000H	59B	339,992	33,999	305,993	6,173,200
1703	1501	059.0000H	59D	326,659	32,666	293,993	5,511,000
1703	1502	059.0000H	59B	343,326	34,333	308,993	6,173,200
1703	1601	059.0000H	59D	326,659	32,666	293,993	5,511,000
1703	1602	059.0000H	59B	343,326	34,333	308,993	6,173,200
1704	402	059.0000H	59A	313,326	31,333	281,993	5,482,400
1704	404	059.0000H	59B	319,993	31,999	287,994	6,173,200
1704	405	059.0000H	59D	306,660	30,666	275,994	5,511,000
1704	502	059.0000H	59A	319,993	31,999	287,994	5,482,400
1704	504	059.0000H	59B	326,659	32,666	293,993	6,173,200
1704	505	059.0000H	59D	313,326	31,333	281,993	5,511,000
1704	602	059.0000H	59A	326,659	32,666	293,993	5,482,400
1704	604	059.0000H	59B	333,326	33,333	299,993	6,173,200
1704	605	059.0000H	59D	313,326	31,333	281,993	5,511,000
1704	702	059.0000H	59A	326,659	32,666	293,993	5,482,400
1704	704	059.0000H	59B	333,326	33,333	299,993	6,173,200
1704	705	059.0000H	59D	313,326	31,333	281,993	5,511,000
1704	802	059.0000H	59A	333,326	33,333	299,993	5,482,400
1704	804	059.0000H	59B	333,326	33,333	299,993	6,173,200
1704	805	059.0000H	59D	319,993	31,999	287,994	5,511,000
1704	902	059.0000H	59A	333,326	33,333	299,993	5,482,400
1704	904	059.0000H	59B	339,992	33,999	305,993	6,173,200
1704	905	059.0000H	59D	319,993	31,999	287,994	5,511,000
1704	1002	059.0000H	59A	333,326	33,333	299,993	5,482,400



동	호	주택형	평면유형	주택가격(천원)			발코니 확장비용 (원, 부가세 포함)
				계	계약금 (계약 시 10%)	잔금 (입주 시 90%)	
1704	1004	059.0000H	59B	339,992	33,999	305,993	6,173,200
1704	1005	059.0000H	59D	326,659	32,666	293,993	5,511,000
1704	1104	059.0000H	59B	339,992	33,999	305,993	6,173,200
1704	1105	059.0000H	59D	326,659	32,666	293,993	5,511,000
1704	1204	059.0000H	59B	339,992	33,999	305,993	6,173,200
1704	1205	059.0000H	59D	326,659	32,666	293,993	5,511,000
1704	1304	059.0000H	59B	343,326	34,333	308,993	6,173,200
1704	1305	059.0000H	59D	326,659	32,666	293,993	5,511,000
1704	1404	059.0000H	59B	343,326	34,333	308,993	6,173,200
1704	1405	059.0000H	59D	326,659	32,666	293,993	5,511,000
1704	1504	059.0000H	59B	343,326	34,333	308,993	6,173,200
1704	1505	059.0000H	59D	326,659	32,666	293,993	5,511,000
1704	1604	059.0000H	59B	343,326	34,333	308,993	6,173,200
1704	1605	059.0000H	59D	326,659	32,666	293,993	5,511,000
1705	402	084.0000H	84A	422,593	42,259	380,334	2,869,900
1705	404	059.0000H	59A	313,326	31,333	281,993	5,482,400
1705	405	059.0000H	59A	313,326	31,333	281,993	5,482,400
1705	502	084.0000H	84A	422,593	42,259	380,334	2,869,900
1705	504	059.0000H	59A	313,326	31,333	281,993	5,482,400
1705	505	059.0000H	59A	313,326	31,333	281,993	5,482,400
1705	602	084.0000H	84A	435,663	43,566	392,097	2,869,900
1705	604	059.0000H	59A	319,993	31,999	287,994	5,482,400
1705	605	059.0000H	59A	319,993	31,999	287,994	5,482,400
1705	702	084.0000H	84A	435,663	43,566	392,097	2,869,900
1705	704	059.0000H	59A	319,993	31,999	287,994	5,482,400
1705	705	059.0000H	59A	326,659	32,666	293,993	5,482,400
1705	802	084.0000H	84A	435,663	43,566	392,097	2,869,900
1705	804	059.0000H	59A	326,659	32,666	293,993	5,482,400
1705	805	059.0000H	59A	326,659	32,666	293,993	5,482,400
1705	902	084.0000H	84A	435,663	43,566	392,097	2,869,900
1705	904	059.0000H	59A	326,659	32,666	293,993	5,482,400
1705	905	059.0000H	59A	333,326	33,333	299,993	5,482,400
1705	1002	084.0000H	84A	444,376	44,438	399,938	2,869,900
1705	1004	059.0000H	59A	326,659	32,666	293,993	5,482,400
1705	1005	059.0000H	59A	333,326	33,333	299,993	5,482,400
1705	1102	084.0000H	84A	444,376	44,438	399,938	2,869,900
1705	1104	059.0000H	59A	333,326	33,333	299,993	5,482,400
1705	1105	059.0000H	59A	333,326	33,333	299,993	5,482,400
1705	1202	084.0000H	84A	444,376	44,438	399,938	2,869,900
1705	1204	059.0000H	59A	333,326	33,333	299,993	5,482,400
1705	1205	059.0000H	59A	333,326	33,333	299,993	5,482,400
1705	1302	084.0000H	84A	444,376	44,438	399,938	2,869,900
1705	1304	059.0000H	59A	333,326	33,333	299,993	5,482,400
1705	1305	059.0000H	59A	333,326	33,333	299,993	5,482,400
1705	1402	084.0000H	84A	444,376	44,438	399,938	2,869,900
1705	1404	059.0000H	59A	333,326	33,333	299,993	5,482,400
1705	1405	059.0000H	59A	333,326	33,333	299,993	5,482,400
1705	1502	084.0000H	84A	453,089	45,309	407,780	2,869,900
1705	1504	059.0000H	59A	333,326	33,333	299,993	5,482,400
1705	1505	059.0000H	59A	339,992	33,999	305,993	5,482,400
1705	1602	084.0000H	84A	453,089	45,309	407,780	2,869,900
1705	1605	059.0000H	59A	339,992	33,999	305,993	5,482,400
1706	401	059.0000H	59D	306,660	30,666	275,994	5,511,000

동	호	주택형	평면유형	주택가격(천원)			발코니 확장비용 (원, 부가세 포함)
				계	계약금 (계약 시 10%)	잔금 (입주 시 90%)	
1706	402	059.0000H	59B	319,993	31,999	287,994	6,173,200
1706	403	059.0000H	59B	313,326	31,333	281,993	6,173,200
1706	405	059.0000H	59A	313,326	31,333	281,993	5,482,400
1706	501	059.0000H	59D	306,660	30,666	275,994	5,511,000
1706	502	059.0000H	59B	326,659	32,666	293,993	6,173,200
1706	503	059.0000H	59B	319,993	31,999	287,994	6,173,200
1706	505	059.0000H	59A	319,993	31,999	287,994	5,482,400
1706	601	059.0000H	59D	306,660	30,666	275,994	5,511,000
1706	602	059.0000H	59B	333,326	33,333	299,993	6,173,200
1706	603	059.0000H	59B	326,659	32,666	293,993	6,173,200
1706	605	059.0000H	59A	326,659	32,666	293,993	5,482,400
1706	701	059.0000H	59D	306,660	30,666	275,994	5,511,000
1706	702	059.0000H	59B	333,326	33,333	299,993	6,173,200
1706	703	059.0000H	59B	326,659	32,666	293,993	6,173,200
1706	705	059.0000H	59A	326,659	32,666	293,993	5,482,400
1706	801	059.0000H	59D	313,326	31,333	281,993	5,511,000
1706	802	059.0000H	59B	333,326	33,333	299,993	6,173,200
1706	803	059.0000H	59B	333,326	33,333	299,993	6,173,200
1706	805	059.0000H	59A	333,326	33,333	299,993	5,482,400
1706	901	059.0000H	59D	313,326	31,333	281,993	5,511,000
1706	902	059.0000H	59B	339,992	33,999	305,993	6,173,200
1706	903	059.0000H	59B	333,326	33,333	299,993	6,173,200
1706	905	059.0000H	59A	333,326	33,333	299,993	5,482,400
1706	1001	059.0000H	59D	313,326	31,333	281,993	5,511,000
1706	1002	059.0000H	59B	339,992	33,999	305,993	6,173,200
1706	1003	059.0000H	59B	333,326	33,333	299,993	6,173,200
1706	1005	059.0000H	59A	333,326	33,333	299,993	5,482,400
1706	1101	059.0000H	59D	313,326	31,333	281,993	5,511,000
1706	1102	059.0000H	59B	339,992	33,999	305,993	6,173,200
1706	1103	059.0000H	59B	333,326	33,333	299,993	6,173,200
1706	1105	059.0000H	59A	333,326	33,333	299,993	5,482,400
1706	1201	059.0000H	59D	313,326	31,333	281,993	5,511,000
1706	1202	059.0000H	59B	339,992	33,999	305,993	6,173,200
1706	1203	059.0000H	59B	339,992	33,999	305,993	6,173,200
1706	1205	059.0000H	59A	339,992	33,999	305,993	5,482,400
1706	1301	059.0000H	59D	313,326	31,333	281,993	5,511,000
1706	1302	059.0000H	59B	343,326	34,333	308,993	6,173,200
1706	1303	059.0000H	59B	339,992	33,999	305,993	6,173,200
1706	1305	059.0000H	59A	339,992	33,999	305,993	5,482,400
1706	1401	059.0000H	59D	313,326	31,333	281,993	5,511,000
1706	1402	059.0000H	59B	343,326	34,333	308,993	6,173,200
1706	1403	059.0000H	59B	339,992	33,999	305,993	6,173,200
1706	1405	059.0000H	59A	339,992	33,999	305,993	5,482,400
1706	1501	059.0000H	59D	313,326	31,333	281,993	5,511,000
1706	1502	059.0000H	59B	343,326	34,333	308,993	6,173,200
1706	1503	059.0000H	59B	339,992	33,999	305,993	6,173,200
1706	1505	059.0000H	59A	339,992	33,999	305,993	5,482,400
1706	1601	059.0000H	59D	313,326	31,333	281,993	5,511,000
1706	1602	059.0000H	59B	343,326	34,333	308,993	6,173,200
1706	1603	059.0000H	59B	339,992	33,999	305,993	6,173,200
1706	1605	059.0000H	59A	339,992	33,999	305,993	5,482,400
1707	204	059.0000H	59B	306,660	30,666	275,994	6,173,200
1707	302	059.0000H	59A	313,326	31,333	281,993	5,482,400



동	호	주택형	평면유형	주택가격(천원)			발코니 확장비용 (원, 부가세 포함)
				계	계약금 (계약 시 10%)	잔금 (입주 시 90%)	
1707	304	059.0000H	59E	313,326	31,333	281,993	5,000,600
1707	305	059.0000H	59D	306,660	30,666	275,994	5,511,000
1707	402	059.0000H	59A	313,326	31,333	281,993	5,482,400
1707	404	059.0000H	59E	313,326	31,333	281,993	5,000,600
1707	405	059.0000H	59D	306,660	30,666	275,994	5,511,000
1707	502	059.0000H	59A	319,993	31,999	287,994	5,482,400
1707	504	059.0000H	59B	319,993	31,999	287,994	6,173,200
1707	505	059.0000H	59D	313,326	31,333	281,993	5,511,000
1707	602	059.0000H	59A	326,659	32,666	293,993	5,482,400
1707	604	059.0000H	59B	326,659	32,666	293,993	6,173,200
1707	605	059.0000H	59D	313,326	31,333	281,993	5,511,000
1707	702	059.0000H	59A	333,326	33,333	299,993	5,482,400
1707	704	059.0000H	59E	333,326	33,333	299,993	5,000,600
1707	705	059.0000H	59D	313,326	31,333	281,993	5,511,000
1707	802	059.0000H	59A	333,326	33,333	299,993	5,482,400
1707	804	059.0000H	59E	333,326	33,333	299,993	5,000,600
1707	805	059.0000H	59D	313,326	31,333	281,993	5,511,000
1707	902	059.0000H	59A	333,326	33,333	299,993	5,482,400
1707	904	059.0000H	59B	333,326	33,333	299,993	6,173,200
1707	905	059.0000H	59D	319,993	31,999	287,994	5,511,000
1707	1002	059.0000H	59A	339,992	33,999	305,993	5,482,400
1707	1004	059.0000H	59B	339,992	33,999	305,993	6,173,200
1707	1005	059.0000H	59D	319,993	31,999	287,994	5,511,000
1707	1104	059.0000H	59B	339,992	33,999	305,993	6,173,200
1707	1105	059.0000H	59D	319,993	31,999	287,994	5,511,000
1707	1204	059.0000H	59B	339,992	33,999	305,993	6,173,200
1707	1205	059.0000H	59D	319,993	31,999	287,994	5,511,000
1707	1304	059.0000H	59B	343,326	34,333	308,993	6,173,200
1707	1305	059.0000H	59D	326,659	32,666	293,993	5,511,000
1707	1404	059.0000H	59B	343,326	34,333	308,993	6,173,200
1707	1405	059.0000H	59D	326,659	32,666	293,993	5,511,000
1707	1504	059.0000H	59B	343,326	34,333	308,993	6,173,200
1707	1505	059.0000H	59D	326,659	32,666	293,993	5,511,000
1707	1604	059.0000H	59B	343,326	34,333	308,993	6,173,200
1707	1605	059.0000H	59D	326,659	32,666	293,993	5,511,000
1708	101	059.0000H	59D	296,658	29,666	266,992	5,511,000
1708	102	059.0000H	59B	306,660	30,666	275,994	6,173,200
1708	201	059.0000H	59D	306,660	30,666	275,994	5,511,000
1708	202	059.0000H	59B	313,326	31,333	281,993	6,173,200
1708	301	059.0000H	59D	306,660	30,666	275,994	5,511,000
1708	302	059.0000H	59B	313,326	31,333	281,993	6,173,200
1708	305	059.0000H	59A	313,326	31,333	281,993	5,482,400
1708	401	059.0000H	59D	306,660	30,666	275,994	5,511,000
1708	402	059.0000H	59B	313,326	31,333	281,993	6,173,200
1708	405	059.0000H	59A	319,993	31,999	287,994	5,482,400
1708	501	059.0000H	59D	306,660	30,666	275,994	5,511,000
1708	502	059.0000H	59B	319,993	31,999	287,994	6,173,200
1708	505	059.0000H	59A	326,659	32,666	293,993	5,482,400
1708	601	059.0000H	59D	313,326	31,333	281,993	5,511,000
1708	602	059.0000H	59B	326,659	32,666	293,993	6,173,200
1708	605	059.0000H	59A	333,326	33,333	299,993	5,482,400
1708	701	059.0000H	59D	313,326	31,333	281,993	5,511,000

동	호	주택형	평면유형	주택가격(천원)			발코니 확장비용 (원, 부가세 포함)
				계	계약금 (계약 시 10%)	잔금 (입주 시 90%)	
1708	702	059.0000H	59B	333,326	33,333	299,993	6,173,200
1708	705	059.0000H	59A	333,326	33,333	299,993	5,482,400
1708	801	059.0000H	59D	313,326	31,333	281,993	5,511,000
1708	802	059.0000H	59B	333,326	33,333	299,993	6,173,200
1708	805	059.0000H	59A	333,326	33,333	299,993	5,482,400
1708	901	059.0000H	59D	313,326	31,333	281,993	5,511,000
1708	902	059.0000H	59B	333,326	33,333	299,993	6,173,200
1708	905	059.0000H	59A	339,992	33,999	305,993	5,482,400
1708	1001	059.0000H	59D	319,993	31,999	287,994	5,511,000
1708	1002	059.0000H	59B	339,992	33,999	305,993	6,173,200
1708	1101	059.0000H	59D	319,993	31,999	287,994	5,511,000
1708	1102	059.0000H	59B	339,992	33,999	305,993	6,173,200
1708	1201	059.0000H	59D	319,993	31,999	287,994	5,511,000
1708	1202	059.0000H	59B	339,992	33,999	305,993	6,173,200
1708	1301	059.0000H	59D	319,993	31,999	287,994	5,511,000
1708	1302	059.0000H	59B	339,992	33,999	305,993	6,173,200
1708	1401	059.0000H	59D	319,993	31,999	287,994	5,511,000
1708	1402	059.0000H	59B	339,992	33,999	305,993	6,173,200
1708	1501	059.0000H	59D	326,659	32,666	293,993	5,511,000
1708	1502	059.0000H	59B	343,326	34,333	308,993	6,173,200
1708	1601	059.0000H	59D	326,659	32,666	293,993	5,511,000
1708	1602	059.0000H	59B	343,326	34,333	308,993	6,173,200
1709	302	059.0000H	59A	313,326	31,333	281,993	5,482,400
1709	303	059.0000H	59B	306,660	30,666	275,994	6,173,200
1709	304	059.0000H	59E	306,660	30,666	275,994	5,000,600
1709	402	059.0000H	59A	313,326	31,333	281,993	5,482,400
1709	403	059.0000H	59B	313,326	31,333	281,993	6,173,200
1709	404	059.0000H	59E	313,326	31,333	281,993	5,000,600
1709	502	059.0000H	59A	319,993	31,999	287,994	5,482,400
1709	503	059.0000H	59B	313,326	31,333	281,993	6,173,200
1709	504	059.0000H	59B	313,326	31,333	281,993	6,173,200
1709	602	059.0000H	59A	326,659	32,666	293,993	5,482,400
1709	603	059.0000H	59B	319,993	31,999	287,994	6,173,200
1709	604	059.0000H	59B	319,993	31,999	287,994	6,173,200
1709	702	059.0000H	59A	333,326	33,333	299,993	5,482,400
1709	703	059.0000H	59B	326,659	32,666	293,993	6,173,200
1709	704	059.0000H	59E	326,659	32,666	293,993	5,000,600
1709	802	059.0000H	59A	333,326	33,333	299,993	5,482,400
1709	803	059.0000H	59B	326,659	32,666	293,993	6,173,200
1709	804	059.0000H	59E	326,659	32,666	293,993	5,000,600
1709	902	059.0000H	59A	333,326	33,333	299,993	5,482,400
1709	903	059.0000H	59B	333,326	33,333	299,993	6,173,200
1709	904	059.0000H	59B	333,326	33,333	299,993	6,173,200
1709	1003	059.0000H	59B	333,326	33,333	299,993	6,173,200
1709	1004	059.0000H	59B	333,326	33,333	299,993	6,173,200
1709	1103	059.0000H	59B	333,326	33,333	299,993	6,173,200
1709	1104	059.0000H	59B	333,326	33,333	299,993	6,173,200
1709	1203	059.0000H	59B	333,326	33,333	299,993	6,173,200
1709	1204	059.0000H	59B	339,992	33,999	305,993	6,173,200
1709	1303	059.0000H	59B	333,326	33,333	299,993	6,173,200
1709	1304	059.0000H	59B	339,992	33,999	305,993	6,173,200
1709	1403	059.0000H	59B	333,326	33,333	299,993	6,173,200
1709	1404	059.0000H	59B	339,992	33,999	305,993	6,173,200



동	호	주택형	평면유형	주택가격(천원)			발코니 확장비용 (원, 부가세 포함)
				계	계약금 (계약 시 10%)	잔금 (입주 시 90%)	
1709	1503	059.0000H	59B	339,992	33,999	305,993	6,173,200
1709	1504	059.0000H	59B	339,992	33,999	305,993	6,173,200
1709	1603	059.0000H	59B	339,992	33,999	305,993	6,173,200
1709	1604	059.0000H	59B	339,992	33,999	305,993	6,173,200
1710	102	059.0000H	59A	306,660	30,666	275,994	5,482,400
1710	103	059.0000H	59A	306,660	30,666	275,994	5,482,400
1710	104	059.0000H	59A	306,660	30,666	275,994	5,482,400
1710	202	059.0000H	59A	313,326	31,333	281,993	5,482,400
1710	203	059.0000H	59A	313,326	31,333	281,993	5,482,400
1710	204	059.0000H	59A	313,326	31,333	281,993	5,482,400
1710	302	059.0000H	59A	319,993	31,999	287,994	5,482,400
1710	303	059.0000H	59A	319,993	31,999	287,994	5,482,400
1710	304	059.0000H	59A	313,326	31,333	281,993	5,482,400
1710	402	059.0000H	59A	326,659	32,666	293,993	5,482,400
1710	403	059.0000H	59A	326,659	32,666	293,993	5,482,400
1710	404	059.0000H	59A	319,993	31,999	287,994	5,482,400
1710	502	059.0000H	59A	333,326	33,333	299,993	5,482,400
1710	503	059.0000H	59A	333,326	33,333	299,993	5,482,400
1710	504	059.0000H	59A	326,659	32,666	293,993	5,482,400
1710	602	059.0000H	59A	333,326	33,333	299,993	5,482,400
1710	603	059.0000H	59A	333,326	33,333	299,993	5,482,400
1710	604	059.0000H	59A	333,326	33,333	299,993	5,482,400
1710	702	059.0000H	59A	339,992	33,999	305,993	5,482,400
1710	703	059.0000H	59A	339,992	33,999	305,993	5,482,400
1710	704	059.0000H	59A	333,326	33,333	299,993	5,482,400
1710	802	059.0000H	59A	339,992	33,999	305,993	5,482,400
1710	803	059.0000H	59A	339,992	33,999	305,993	5,482,400
1710	804	059.0000H	59A	339,992	33,999	305,993	5,482,400
1710	902	059.0000H	59A	343,326	34,333	308,993	5,482,400
1710	1002	059.0000H	59A	343,326	34,333	308,993	5,482,400
1710	1102	059.0000H	59A	343,326	34,333	308,993	5,482,400
1710	1202	059.0000H	59A	343,326	34,333	308,993	5,482,400
1710	1302	059.0000H	59A	343,326	34,333	308,993	5,482,400
1710	1402	059.0000H	59A	343,326	34,333	308,993	5,482,400

4. 발코니 확장

- ※ 본 단지는 **전 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됩니다.
- ※ **동·호**는 **당첨자 선정 시 무작위로** 배정되며 **배정받은 동·호의 평면유형에 따라 발코니 확장비용이 상이**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아래의 발코니 확장비용은 공급금액과는 별도로 납부하셔야 하는 비용으로,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 발코니 확장비용은 계약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주택형	평면유형	발코니 확장비용(원, 부가세 포함)		
		계	계약금(계약 시 10%)	잔금(입주 시 90%)
059.0000H	59A	5,482,400	548,240	4,934,160
	59B	6,173,200	617,320	5,555,880
	59D	5,511,000	551,100	4,959,900
	59E	5,000,600	500,060	4,500,540
084.0000H	84A	2,869,900	286,990	2,582,910
	84B	3,228,500	322,850	2,905,650

5. 토지임대료

전용면적(㎡)	주택형	토지임대료(원/월)
59	059.0000H	663,900
84	084.0000H	946,000

토지임대료 산정방법 및 유의사항

- 본 입주자모집공고에서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23조의4제2항 및 「주택법」 제2조제9호에 의하여 공공주택사업자가 입주자를 선정하여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주택법」 제2조제9호에 의하여 토지의 소유권은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사업을 하는 SH가 가지고, 건축물 등에 대한 소유권(건축물의 전유부분에 대한 구분소유권은 이를 분양받은 자가 가지고, 건축물의 공용부분·부속건물은 분양받은 자들이 공유함)은 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갖는 주택을 의미합니다.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는 토지소유자(SH)와 「주택법」 제78조제3항 및 「주택법 시행규칙」 제31조에서 정하는 표준임대차계약을 사용하여 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며,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주택의 구분소유권을 목적으로 그 토지 위에 40년 이내의 임대차기간(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소유자의 75퍼센트 이상이 계약갱신을 청구하는 경우 40년의 범위에서 갱신 가능) 동안 지상권이 설정된 것으로 봅니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양수한 자 또는 상속받은 자는 위 임대차계약을 승계합니다.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임대료는 '23. 04. 07.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 제81조제2항에 의하여 '해당 택지의 조성원가에 입주자모집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의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3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한 가액에 입주자모집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의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3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사이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여 정하는 금액'을 '12개월로 분할한 금액 이하'로 할 수 있습니다.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임대료는 「주택법」 제78조제6항에 따라 월별 임대료를 원칙으로 하되, 토지소유자와 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합의한 경우 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주택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토지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하려는 경우 그 보증금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이자율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3년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 이상으로 적용합니다.
- 「주택법 시행령」 제81조제3항 및 제4항에 의하여, 토지소유자(SH)는 토지임대주택을 분양받은 자와 토지임대료에 관한 약정을 체결한 후 2년이 지나기 전에는 토지임대료 증액을 청구할 수 없으며, 2년이 지나 토지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 평균지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증액률을 산정하되 이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차임 등의 증액청구 한도 비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토지임대료의 납부 방법, 연체료율 등에 관한 사항은 「주택법」 제78조제3항에 따른 표준임대차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토지임대료 보증금 전환

- 월 토지임대료의 최대 60%를 보증금으로 전환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전환이율 및 상세 내용은 향후 관계 법령 및 공사 기준에 따라 확정될 예정입니다.
- ※ 「주택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토지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하려는 경우 그 보증금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이자율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3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 이상으로 적용합니다.
- 월 토지임대료의 보증금 전환은 선택사항으로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 토지임대료의 보증금 전환 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입주 전 별도로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 아래의 예시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2026.02.27.) 기준 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실제 입주 시의 전환이율 및 이에 따른 보증금 등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토지임대료 보증금 전환 예시]

전용면적(㎡)	전환 전 토지임대료(원/월)	보증금 전환율	전환이율	전환보증금	전환 후 토지임대료
59	663,900	60%	2.18	219,000,000원	265,560원
84	946,000	60%	2.18	312,000,000원	378,400원

※ 전환이율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산정한 은행의 3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로 가정

6. 입주금 납부 안내

■ 입주금 납부 안내

- 입주금(주택가격, 발코니확장비용 포함)은 계약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일) 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 잔금을 납부기한 이전(입주지정기간 개시일 1일 전까지)에 선납할 경우에는 선납금액에 대하여 선납일 수 만큼 연 3.4%(공고일 현재 기준, 변동 시 별도 안내, 선납시점의 선납할인율 적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하여 드립니다.
- 잔금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에는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그 연체일수에 연체이율(공고일 현재 연 7.5%, 변동 시 별도 안내)을 적용하여 산정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적용이율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된 이율에 의하여 각각 일할 계산합니다.
- 상기 선납할인율, 연체이율 등 각종 이율은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이자율로서 시중금리변동 및 우리 공사의 방침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율 변경을 사유로 이미 납부한 입주금을 반환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자 등의 산정은 평년의 경우 1년을 365일로 보며, 윤년의 경우 1년을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합니다.
- 입주 시 관리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에치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주지정기간을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입주(열쇠 불출) 및 잔금 납부 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발생하는 관리비, 제세 공과금 등을 수분양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2

신청기준(지역별 물량배정, 무주택, 소득·자산)

1. 지역우선 공급물량 배정기준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규정에 의거 신청자격별 <지역우선 공급기준>에 따라 지역별 물량을 배정하고, 동일순위 내 경쟁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서울특별시 2년 이상)에게 우선공급 비율만큼 배정하며 해당지역 거주자 신청 결과 미달된 물량은 수도권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으며, 해외 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거나 전체 기간이 **연간(매년) 183일**을 초과하는 분은 지역 우선공급 대상자(서울특별시 2년 이상 거주자) 및 기타지역 거주자(서울특별시 2년 미만 및 수도권 거주자)로 청약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당첨될 경우 부적격 처리됩니다.

※ 6페이지 '지역우선 공급 관련 안내' 참고

〈표2〉 지역우선 공급기준

기준일	우선공급비율		지역구분	
	해당지역(서울)	기타지역(수도권)	해당지역(서울)	기타지역(수도권)
입주자모집공고일 (2026.02.27.)	100%	0%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 2년 미만 거주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인천광역시 거주자

※ 지역우선 공급기준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 거주지역**이며, 주민등록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됩니다.

※ 우선공급 기준에 따라 선정된 입주예정자는 본인의 생년월일부터 공고일 현재까지의 출입국기록을 공사로 제출하여 우선공급 기간 중에 해당 지역에 계속해서 거주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하며, 증명하지 못할 경우 부적격 처리됩니다.

※ 동일순위 내 경쟁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에게 우선공급 비율만큼 우선공급하며,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신청 결과 미달된 물량은 수도권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공급유형별 신청자격을 충족한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서울특별시가 아닌 수도권 거주자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무주택세대구성원 및 주택소유여부 판정 기준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신청 자격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의3호, 제4호 및 제53조에 따라 아래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당첨자 발표(2026.04.02.예정) 후 주택(분양권 등 포함)소유여부 전산검색 및 주민등록표등본 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분은 해당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 소명기간(우리 공사가 소명요청을 안내한 날부터 7일) 내에 아래 기준에 근거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됩니다.**

■ **적용대상** : 사전청약 당첨자, 철거민·청년·신혼부부·생애최초·신생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신청자

■ **공급신청 자격자**

- (청년 특별공급) 주택공급신청자는 **무주택자**만 가능합니다.
- (청년 특별공급 외) 주택공급신청자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가능 합니다.
- ※ **부부(예비신혼부부 제외)**는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각각 청약할 수 있으나, 중복당첨된 경우 청약 접수일(분 단위까지의 접수시간을 포함)이 빠른 사람의 당첨(분 단위 접수시간이 동일한 경우 신청자 중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가 당첨된 주택을 말함)만을 인정하며 후 접수분은 무효 처리합니다.
- ※ 「민법」상 미성년자는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거나,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만 신청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자녀 및 형제자매는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 세대구성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5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가. 실종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 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 다. 공급신청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 무주택(분양권등 포함) 여부 판단대상

- 아래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다음 [주택 및 분양권등]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무주택자로 판단
- ※ (청년 특별공급) 신청자 본인에 한하여 검증함
- ※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예비신혼부부) 입주 시 제출하는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
- ※ (생애최초 특별공급) 세대구성원 전원이 과거 주택소유사실이 없어야 함. 단, 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신고 전 주택을 소유하였다가 혼인신고 전 처분한 사실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 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등본의 직계존비속까지 포함

[무주택세대구성원]

- 가.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주택공급신청자’라 함)
-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이하 같음)
- 라.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주택 및 분양권등]

- 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동산 중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다. 나목에 따른 지위(이하 “분양권등”이라 한다)를 승계취득(전체 또는 일부의 권리를 매매하여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주택(분양권등 포함)의 범위

-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하며, 주택은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재산세 과세대장 등에 등재되어 있는 전국 소재 주택을 말합니다.
- 주택(분양권등 포함)의 공유지분 소유자 및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 소유자도 주택소유자에 해당됩니다.
 - ※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 소유자 전원이 주택소유자로 인정되고, 공동소유, 공동상속의 경우에는 지분면적에 관계없이 지분소유자 전원이 각각 그 주택의 면적 전부를 소유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동산 중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하 ‘분양권등’이라 함)를 취득한 경우, 공급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분양권등을 매개로 승계취득하여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무주택기간(분양권등 포함) 산정 기준

- 무주택 기간은 신청자 및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무주택기간을 고려하여 산정합니다.
- 주택소유 및 무주택기간 산정 기준일(단,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등기접수일과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이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 1)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등기접수일
 -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 3) 분양권 등의 계약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 4) 분양권 등의 매매계약서
 -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 :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 5) 기타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신청자 및 세대구성원 전원이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계속해서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나,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만 30세가 되는 날(만 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합니다.
- 신청자 및 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두 차례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합니다.



■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 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 나. 85㎡ 이하의 단독주택
 -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무허가건물(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함)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함
-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해당 목에서 정하는 주거전용면적 및 가격 요건을 갖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 가.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나목3)에 해당하지 않는 것: 주거전용면적 60㎡ 이하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6천만원) 이하일 것
 - 나. 다음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거전용면적 85㎡ 이하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3억원(수도권은 5억원) 이하일 것
 - 1) 「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 2)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3)에 해당하지 않는 것
 - 3)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 등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자는 제외)
-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 제1호가목2)를 준용한다.
 - 나. 주거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는 경우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23.05.10.) 전에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
- 주택공급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함. 이하 이 호에서 같음)일 것
 - 나. 주거전용면적이 60㎡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일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3. 총자산 보유기준

■ 적용대상

- 청년 특별공급 : 신청자 본인 및 부모
- 신혼부부(신혼부부, 한부모가족)·생애최초·신생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 신혼부부 중 예비신혼부부 :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예비신혼부부가 입주 시 제출해야 하는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될 세대를 말함)
- **사전 청약 당첨자 : 재심사하지 않음**

■ 총자산 보유기준 적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2.27.) 현재 공급유형별 신청자격 외에 아래 “<표3> 총자산 보유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이하 같음)의 ‘부동산, 자동차, 일반자산 및 금융부채 외 부채’의 산정시점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이며,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산정시점은 사회보장급여 공통업무안내서에 따라 조사기준일(통상 우리 공사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조회 요청하는 날로부터 3개월전 말일)로 합니다.

다만, 우리 공사는 당첨자 서류접수 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당첨자의 총자산을 조사 확정하게 되므로, **공고일 이후 변동된 총자산금액이 조회된 경우 해당 금액을 당사자의 총자산금액으로 간주합니다.**

- **청년 특별공급의 총자산기준은** ①신청자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건물+토지)·자동차·금융자산·일반자산 가액의 총합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 및 ②신청자의 부모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건물+토지)·자동차·금융자산·일반자산 가액의 총합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을 각각 검증합니다. 기준 초과 시 당첨이 취소되며,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 선정 제한 등))을 받게 됩니다.
- **신혼부부·생애최초·신생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총자산기준은**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건물+토지)·자동차·금융자산·일반자산 가액의 총합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으로 검증합니다. 기준 초과 시 당첨이 취소되며,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 선정 제한 등))을 받게 됩니다.
- 부동산(건물 + 토지) 및 자동차를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경우 전체가액 중 해당지분가액(단, 동일 세대원 간에 지분을 공유할 때에는 지분합계액)만을 소유한 것으로 보며,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의거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 주택과 그 주택의 부속 토지’는 자산보유기준 적용 대상이 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제4항에 따라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에는 기존 소유 주택도 자산보유기준 적용 대상이 됩니다.

■ 자산보유 조사방법

- 당첨자(예비입주자)의 자산관련 자료는 “〈표3〉 총자산보유기준”에 의거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우리 공사에서 일괄 조회할 예정입니다.

■ 조사대상자의 의무

- 우리 공사에서 당첨자의 자격심사를 위해 원천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으로부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대상자 전원의 자산에 관한 정보를 수집·조사하여야 하므로 당첨자 서류제출 시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조사대상자 전원이 동의하여 우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이 불가능합니다.

〈표3〉 총자산 보유기준

구분	총자산 보유기준	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 (상기 ‘3. 총자산 판정 기준’에서 자산 및 부채의 산정시점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① 부동산 (건물+토지)	①+②+③+④ 합계액에서 ⑤를 차감한 금액이 362백만원 이하 (청년 계층은 신청자 본인 276백만원 이하 및 부모 1,035백만원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건축물 종류</th> <th>지방세정 시가표준액</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주택</td> <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 <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 </tr> <tr> <td>단독주택</td> <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 </tr> <tr> <td colspan="2">건 물</td> <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 </tr> <tr> <td colspan="2">시설물</td> <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 </tr> </tbody> </table>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건 물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시설물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건 물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시설물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② 자동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아래 토지는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의 소유자와 농업인확인서 상 농업인이 일치하는 경우 -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업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산지관리법」 제4조에 따른 산지로서 소유자와 농업인확인서 상 농업인이 일치하는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 포함) 또는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이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을 적용하며, 해당세대가 보유한 모든 자동차의 가액을 합하여 산출하고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 사용 자동차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의 경우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함. 														



구분	총자산 보유기준	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 (상기 '3. 총자산 판정 기준'에서 자산 및 부채의 산정시점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③ 일반자산	①+②+③+④ 합계액에서 ⑤를 차감한 금액이 362백만원 이하 (청년 계층은 신청자 본인 276백만원 이하 및 부모 1,035백만원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 포함) : 임대차계약서 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 「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임목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준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 기준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④ 금융자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 조사기준일로부터 과거 3개월간 평균 잔액 •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 조사기준일의 계좌 잔액 또는 총납입액 •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펀드, 선물옵션 등 : 조사기준일의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 •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 조사기준일의 액면가액 • 예수금 : 조사기준일 당시 잔액 • 연금저축 : 조사기준일 당시 잔액 또는 총납입액 • 보험증권 : 조사기준일 당시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 연금보험 : 조사기준일 당시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⑤ 부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 조회 시 제외되는 항목 예시 : 한도대출(일명 '마이너스통장 대출'), 카드론 등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대출금 •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가 인수한 부실채권으로 공사가 증명한 부채 • 서민금융진흥원 대출금 •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 • 임대보증금(단,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

※ (출산가구 자산기준 완화) '23.0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인 경우 10%p, 2명 이상인 경우('23.0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이고 '23.03.27. 이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포함) 20%p 가산하여 자산기준이 완화되며, 완화된 기준은 아래 「표3-1」 출산가구 자산보유기준 완화」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표3-1〉 출산가구 자산보유기준 완화

구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청년	신혼 부부	생애 최초	신생아	신생아 우선공급	우선공급 (1순위자)	추첨 공급
총자산	'23.0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없는 경우	(신청자 본인) 276백만원 이하 (부모) 1,035백만원 이하		362백만원 이하			
	'23.03.28. 이후 출생한 자녀 1명만 있는 경우	(신청자 본인) 311백만원 이하 (부모) 1,035백만원 이하		397백만원 이하			
	'23.0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23.0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이고, '23.03.27. 이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포함)	(신청자 본인) 345백만원 이하 (부모) 1,035백만원 이하		431백만원 이하			

※ 완화된 자산기준을 인정받으려는 분은 당첨자서류 제출 시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해당 내용을 증명해야 하며,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격미달일 경우 부적격 처리됩니다.

※ (출생) 가족관계증명서(출생 신고 전인 경우에는 출생증명서)

※ (입양) 입양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임신)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1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 부동산(건물+토지) 공시가격 확인 방법

- 방문신청 : 해당 부동산이 소재한 지자체에서 확인
- 온라인 조회 :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 또는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

■ 차량기준가액 자료 출처 :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국토부 차적정보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 자동차 가격 적용기준

- 자동차 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 : 자동차 출고(취득)가격(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금액)
- 자동차 등록증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취·등록세 납부 영수증, 지방세납부확인서 등에 표시된 과세표준액 확인 또는 해당 시, 군, 구청으로 문의
- 경과연수는 연식이 아닌 **최초 신규등록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경과연수에 따라 매년 10퍼센트씩 감가상각**
예시) 자동차 등록증상 2025년식 자동차를 2024년도에 구입하여 등록하였으면 차량기준가액에서 10%를 차감한 금액으로 판정

4. 소득기준

■ 적용대상

- 청년 특별공급 : **신청자 본인**
- 신혼부부(신혼부부, 한부모가족)·생애최초·신생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 신혼부부 중 예비신혼부부 :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예비신혼부부가 입주 시 제출해야 하는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될 세대를 말함)
- **사전청약 당첨자 : 재심사하지 않음**

■ 소득기준 적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2.27.) 현재 공급유형별 신청자격 외에 아래의 **소득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우리 공사는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이하 같음)로 선정되신 분의 소득을 당첨자 서류접수 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표6〉 조회대상 소득항목 및 소득자료 출처”에 따라 **조사 확정**하게 되므로, **공고일 이후 변동된 소득금액이 조회된 경우 해당 금액을 당사자의 소득 금액으로 간주**합니다.

■ 청년 소득기준

-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2.27.) 현재 **청년 특별공급**은 아래 “〈표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청년)”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표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청년)

대상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비율	1인
청년 특별공급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70%	2,669,354원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3,813,363원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40%	5,338,708원

※ 청년 특별공급의 가구당 월평균소득은 주택공급 **신청자 본인의 소득**만 산정합니다.

※ (출산가구 소득기준 완화) '23.0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인 경우 10%p, 2명 이상인 경우('23.0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이고 '23.03.27. 이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포함) 20%p 가산하여 소득기준이 완화되며, 완화된 기준은 아래 “〈표4-1〉 출산가구 소득기준 완화(청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표4-1〉 출산가구 소득기준 완화(청년)

대상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비율	1인
청년 특별공급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80%	3,050,690원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90%	3,432,027원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10%	4,194,699원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4,576,036원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50%	5,720,045원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60%	6,101,381원

※ 완화된 소득기준을 인정받으려는 분은 출생, 입양, 임신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해당 내용을 증명해야 하며,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격미달일 경우 부적격 처리됩니다.

■ **신혼부부 · 생애최초 · 신생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소득기준**

-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2.27.) 현재 신혼부부 · 생애최초 · 신생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은 아래 “〈표5〉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표5〉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

공급유형		구 분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혼 부부	우선공급 (3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	9,793,892원	11,442,863원	12,125,081원	12,878,142원	13,631,203원	14,384,265원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40% (단,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0,547,268원	12,323,083원	13,057,779원	13,868,768원	14,679,757원	15,490,747원
	일반공급 (6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	9,793,892원	11,442,863원	12,125,081원	12,878,142원	13,631,203원	14,384,265원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40% (단,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0,547,268원	12,323,083원	13,057,779원	13,868,768원	14,679,757원	15,490,747원
	추첨공급 (1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	9,793,892원	11,442,863원	12,125,081원	12,878,142원	13,631,203원	14,384,265원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200% (단,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5,067,526원	17,604,404원	18,653,970원	19,812,526원	20,971,082원	22,129,638원
생애 최초	우선공급 (7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7,533,763원	8,802,202원	9,326,985원	9,906,263원	10,485,541원	11,064,819원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단,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9,040,516원	10,562,642원	11,192,382원	11,887,516원	12,582,649원	13,277,783원
	일반공급 (2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	9,793,892원	11,442,863원	12,125,081원	12,878,142원	13,631,203원	14,384,265원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40% (단,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0,547,268원	12,323,083원	13,057,779원	13,868,768원	14,679,757원	15,490,747원
	추첨공급 (1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	9,793,892원	11,442,863원	12,125,081원	12,878,142원	13,631,203원	14,384,265원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200% (단,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5,067,526원	17,604,404원	18,653,970원	19,812,526원	20,971,082원	22,129,638원
신생아	우선공급 (7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7,533,763원	8,802,202원	9,326,985원	9,906,263원	10,485,541원	11,064,819원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단,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9,040,516원	10,562,642원	11,192,382원	11,887,516원	12,582,649원	13,277,783원
	일반공급 (2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40%	10,547,268원	12,323,083원	13,057,779원	13,868,768원	14,679,757원	15,490,747원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50% (단,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1,300,645원	13,203,303원	13,990,478원	14,859,395원	15,728,312원	16,597,229원
	추첨공급 (1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40%	10,547,268원	12,323,083원	13,057,779원	13,868,768원	14,679,757원	15,490,747원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200% (단,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5,067,526원	17,604,404원	18,653,970원	19,812,526원	20,971,082원	22,129,638원
일반 공급	신생아 우선공급 (5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7,533,763원	8,802,202원	9,326,985원	9,906,263원	10,485,541원	11,064,819원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40% (단,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0,547,268원	12,323,083원	13,057,779원	13,868,768원	14,679,757원	15,490,747원
	우선공급 (1순위자) (3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7,533,763원	8,802,202원	9,326,985원	9,906,263원	10,485,541원	11,064,819원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40% (단,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0,547,268원	12,323,083원	13,057,779원	13,868,768원	14,679,757원	15,490,747원
	추첨공급 (2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7,533,763원	8,802,202원	9,326,985원	9,906,263원	10,485,541원	11,064,819원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200% (단,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5,067,526원	17,604,404원	18,653,970원	19,812,526원	20,971,082원	22,129,638원

- ※ 8인 초과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 월평균소득금액(원) + 초과 1인당 소득금액(100% 기준 579,278원) 추가
- ※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란 본인 및 배우자(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할 예비배우자)가 모두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이하 '맞벌이')
- ※ (출산가구 소득기준 완화) '23.0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인 경우 10%p, 2명 이상인 경우('23.0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이고 '23.03.27. 이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포함) 20%p 가산하여 소득기준이 완화되며, 완화된 기준은 아래 「표5-1」 출산가구 소득기준 완화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표5-1〉 출산가구 소득기준 완화

구 분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10%	8,287,139원	9,682,422원	10,259,684원	10,896,889원	11,534,095원	12,171,301원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9,040,516원	10,562,642원	11,192,382원	11,887,516원	12,582,649원	13,277,783원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	9,793,892원	11,442,863원	12,125,081원	12,878,142원	13,631,203원	14,384,265원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40%	10,547,268원	12,323,083원	13,057,779원	13,868,768원	14,679,757원	15,490,747원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50%	11,300,645원	13,203,303원	13,990,478원	14,859,395원	15,728,312원	16,597,229원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60%	12,054,021원	14,083,523원	14,923,176원	15,850,021원	16,776,866원	17,703,710원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70%	12,807,397원	14,963,743원	15,855,875원	16,840,647원	17,825,420원	18,810,192원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210%	15,820,902원	18,484,624원	19,586,669원	20,803,152원	22,019,636원	23,236,120원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220%	16,574,279원	19,364,844원	20,519,367원	21,793,779원	23,068,190원	24,342,602원

※ 완화된 소득기준을 인정받으려는 분은 출생, 입양, 임신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해당 내용을 증명해야 하며,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격미달일 경우 부적격 처리됩니다.

● 가구원수 적용 기준

구 분	가구원수 적용 기준
신혼부부·신생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5페이지의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자 전원을 포함하여 산정하되, 예비신혼부부는 입주 시 제출하는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 ※ 임신 중인 태아도 가구원수에 포함
생애최초 특별공급	5페이지의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자 전원을 포함하여 산정. 단,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구원수에 포함 ※ 임신 중인 태아도 가구원수에 포함

● 가구당 월평균소득액 산정기준

구 분	가구당 월평균소득액 산정기준
신혼부부·생애최초·신생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 위 '가구원수 적용 기준'에 따라 산정된 가구원 중 주택공급신청자 및 19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소득을 합산 - 주택공급신청자가 혼인한 경우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하며,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그 배우자의 주민등록본에 있는 직계존비속을 포함 ※ 단, 세대의원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기준 초과 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해당 주택 무순위 대상으로 선정 불가 등))을 받게 됩니다.

■ 소득조사 및 부적격 소명방법

- 신청자는 조사대상자의 소득수준에 대하여 청약신청 전에 소득자료 출처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시근로자의 건강보험 보수월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 민원서비스 → 서비스찾기 → 보험료조회 → 직장보험료 조회 (인증서 로그인 필요)”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아래 “〈표6〉 조회대상 소득항목 및 소득자료 출처”의 각 소득별 소득항목 설명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조회된 자료는 모두 해당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 “〈표6〉 조회대상 소득항목 및 소득자료 출처”의 소득자료 출처기관이 아닌 기타 기관의 소득자료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조회될 수 있으며 조회된 자료는 모두 해당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 당첨자의 입주자격 심사를 위해 **조사대상자 전원의 소득**에 관한 개인의 정보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원천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집·조사하므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를 조사대상자 전원이 동의하여 제출하여야 하며(별도 양식),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 체결이 불가합니다.**
 - 소득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부적격 통보를 받은 분의 이의신청은 해당 소득자료 제공기관(소득자료 출처기관 참조)의 **공적자료 정정·수정·변경 등에 대한 등 기관의 확인서(공문 포함)**가 발급되는 경우에만 접수·처리하며, **만일 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빙자료(제공기관의 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분은 부적격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별도의 통지 없이 부적격 처리합니다.**
 - 공적이전소득은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부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국가보훈부 보훈대상자 보상급여 및 보훈대상자 명예수당 등입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상시근로소득을 조회한 결과 여러기관의 소득자료가 확인될 경우 **상시근로소득자료 반영순위**(①건강보험공단→②근로복지공단→③국민연금공단→④한국장애인고용공단→⑤국세청)에 따라 선순위 기관의 조회결과를 우선 반영하여 소득을 산정하므로, 반드시 **위 순위에 따라 본인 및 세대원의 소득을 확인한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예시 : ①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 보수월액) 자료상 월소득이 200만원이고, ⑤국세청(종합소득) 자료상 월소득이 190만원일 경우 소득자료 반영 순위에 따라 ①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 보수월액)의 소득자료를 적용함
- **휴직자의 소득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서 조사된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의 소득자료를 적용합니다.**

〈표6〉 조회대상 소득항목 및 소득자료 출처

구분	항목	소득항목 설명	소득자료 출처
근로 소득	상시근로소득	3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반영순위 ① 국민건강보험공단(보수월액) ② 근로복지공단(산재·고용보험 월평균보수) ③ 국민연금공단(기준소득월액) ④ 한국장애인고용공단(최저임금, 보수월액) ⑤ 국세청(종합소득 중 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제외) 	국세청
	자활근로소득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자활사업실시기관, 지자체
	공공일자리소득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보건복지부, 노동부
사업 소득	농업소득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증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농림축산식품부
	임업소득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기타사업소득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재산 소득	임대소득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국세청
	이자소득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국세청
	연금소득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국세청
기타 소득	공적이전 소득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금품 (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사학연금·공무원연금 군인연금관리공단, 근로복지공단, 국가보훈부 등

3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0. 사전청약 당첨자(입주예약자)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2.27.) 현재 아래 조건(①~②)을 모두 충족한 사전청약 당첨자
 - ①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2.27.)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 ② 사전청약 당첨자 및 그 세대에 속한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사전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2023.09.27)부터 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026.02.27.) 까지 주택을 소유한 사실(상속의 경우는 제외)이 없고,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에 당첨된 사실이 없는 분**
 - ※ 본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의 세대구성원을 기준으로 검증하므로, 사전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추가된 세대구성원이 있는 경우 해당 세대원도 검증대상에 포함됩니다.
 - ※ 청년 특별공급의 경우 본인을 기준으로 검증합니다.
 -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사전청약 신청 당시 제출한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기준으로 검증합니다.
- 본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2.27.) 기준 위 신청자격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모두 부적격** 처리되어 계약체결이 불가하고, 부적격 당첨자로 명단 관리 (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 선정 제한, 해당 주택의 무순위 대상자로 선정 불가 등) 됩니다.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6.03.10.(화) 10:00 ~ 2026.03.11.(수) 17:00
 - ※ 신청기간 중에는 인터넷으로 24시간 청약 가능
- 신청방법 : 청약자 편의를 도모하고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합니다.**

SH 인터넷청약시스템(<https://www.i-sh.co.kr/app>) 접속 → 홈페이지 상단의 청약공고에서 마곡지구 17단지 [신청하기] 선택 → [청약중] 선택 → 인증서 로그인 → [사전청약 당첨자] 선택 → 청약신청서 작성 → 청약내용 확인 후 청약신청 완료

- ※ 인터넷 사용 취약자(만 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를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방문 인터넷 대행접수를 운영하며, 상세 내용은 46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사전청약 당첨자는 반드시 위에 명시된 **“사전청약 당첨자” 전용** 청약 신청기간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 ※ 사전청약 당첨자는 사전청약 당첨 당시의 공급구분에 관계없이 **“사전청약 당첨자”**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일반공급 신청” 또는 “특별공급 신청” 아님)
- ※ 신청일에 인증서[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용 민간인증서(카카오톡, KB국민은행, 통신사 PASS, 삼성패스, 네이버, 신한은행,뱅크샐러드, 하나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토스)] 중 1개를 반드시 소지하셔야 합니다.
- ※ **사전청약 당첨자가 위 신청기간 및 방법에 따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사전청약 당첨자(입주예약자) 지위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반드시 본청약 신청을 하셔야 하며, 신청하지 않은 물량은 본청약 일반공급 물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유의사항

[주택형 안내]

- 사전청약 시 당첨된 주택형으로만 신청해야 하고, 타 주택형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 **주택타입은 선택하실 수 없습니다.** (예시 : 59㎡의 경우 59A, 59B)
- 동·호수는 본청약에 신청한 사전청약 당첨자를 포함한 본청약 당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한국부동산원)의 프로그램에 의해 신청 주택형 내에서 타입별·동별·층별·향별·축 세대 구분 없이 무작위로 전산추첨 합니다. (미신청 혹은 미계약된 동·호수가 발생할 경우에도 동·호수 변경 불가)
- 최근 분양주택의 발코니 확장신청 비율을 반영하여 전 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기 때문에 발코니 비확장형은 선택하실 수 없습니다.

사업지구	사전청약 시 당첨된 주택형	본청약 시 선택 가능한 주택형	발코니 확장 여부
마곡17	059.0000H	059.0000H	발코니 확장형



[입주자저축 효력상실]

- 사전청약 당첨자가 본청약에 신청하여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본청약 당첨자 발표일(2026.04.02.) 이후에 사전청약 시 사용한 입주자저축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또한 계약 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입주자저축의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 사전청약시 사용한 입주자저축으로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본청약 신청이 불가하며, 신청 시에는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 선정 제한, 해당 주택의 무순위 대상자로 선정 불가 등)) 됩니다.

[중복신청 불가]

- (공급유형 간) 사전청약 당첨자가 “사전청약 당첨자” 신청기간(2026.03.10. ~ 2026.03.11.)에 신청한 후, **다른 공급유형(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중복으로 신청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이 취소됩니다.** 단, 사전청약 당첨자가 “사전청약 당첨자” 신청기간(2026.03.10. ~ 2026.03.11.)에 신청하지 않은(포기한) 경우에는 다른 공급유형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본청약 신청자와 동일하게 자격심사 및 경쟁을 거쳐야 합니다.
- (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사전청약 당첨자 1인만 신청 가능하며, **사전청약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이 각각 신청하거나 1인이 중복으로 신청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이 취소됩니다.**
-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간) 청약 신청은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청약홈 등 타 기관을 통해 청약하는 경우도 포함)에 대하여 1세대 내 1건만 신청이 가능하고, **금회 공급하는 주택과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다른 주택(민간 청약 포함)에 1인이 중복으로 청약할 경우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됩니다.**
- ※ 부적격 처리되는 경우 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 선정 제한, 해당 주택의 무순위 대상자로 선정 불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약 제한]

- (특별공급 당첨 횟수 제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특별공급 및 같은 법 개정('10.02.23) 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분과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에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당첨자 서류 제출]

- 당첨자 서류제출 기간(2026.04.06. ~ 2026.04.09.) 내에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사전청약 당첨자가 본청약 당첨자로 선정되었을 때 제출해야 할 서류는 48페이지 ‘사전청약 당첨자 제출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모든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2.27.) 이후 발급분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청년 특별공급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2.27.) 현재 서울특별시 또는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①~④)을 모두 갖춘 분
 - ① 19세 이상~39세 이하로 혼인 중이 아니며,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무주택자
 - ②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 ※ 공고일 이후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의 청약통장 순위확인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③ 신청자 본인 및 부모의 각 총자산 합계액이 “〈표3〉 총자산보유기준” 이하인 분
 - ④ 신청자 본인의 월평균소득이 “〈표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청년)”의 140% 이하인 분

대상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비율	1인
청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40%	5,338,708원

■ 당첨자 선정방법

[1단계 우선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년 특별공급 신청자격을 갖춘 자 중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과거 1년 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분을 포함)로서 **신청자 본인이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을 대상으로 주택형별 공급량의 30%(소수점 이하는 올림)를 “〈표2〉 지역우선 공급기준”에 따라 공급합니다.
 - ※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또는 제20조(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하며, 해당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세액공제·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표7〉 청년 특별공급 우선공급 가점표”의 가점항목 다득점순으로 선정하되, 가점이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표7〉 청년 특별공급 우선공급 가점표

가점항목	평가요소	점수	비고
(1) 본인의 월평균 소득*	① 70% 이하	3	-
	② 70% 초과 100% 이하	2	
	③ 100% 초과	1	
(2) 해당 시도 연속 거주기간	① 2년 이상	3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표 등·초본상 계속해서 거주한 기간을 말하며,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0점 ※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으로 청약하는 자는 서울특별시에 실제 거주하지 않을 경우 0점
	② 1년 이상 2년 미만	2	
	③ 1년 미만	1	
	④ 미거주	0	
(3)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인정 횟수	① 24회 이상	3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약저축) 가입 확인서 기준
	② 12회 이상 23회 이하	2	
	③ 6회 이상 11회 이하	1	

* 본인의 월평균 소득 : 사회보장시스템을 통해 조회한 자료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을 초과하는 분이 해당 가점을 받아 당첨되었음이 판명될 경우 당첨자는 해당 사실을 소명해야 합니다. 만일 소명하지 못할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점수 선택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비율	1인
청년 특별공급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70%	2,669,354원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3,813,363원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40%	5,338,708원

※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23.0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인 경우 10%p, 2명 이상인 경우('23.0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이고 '23.03.27. 이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포함) 20%p 가산하여 소득 및 자산기준이 완화되며, 완화 기준은 “〈표3-1〉 출산가구 자산보유기준 완화” 및 “〈표4-1〉 출산가구 소득기준 완화(청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완화된 소득·자산 기준을 인정받으려는 분은 출생, 입양, 임신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해당 내용을 증명해야 하며,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격미달일 경우 부적격 처리 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2단계 일반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년 특별공급 신청자격을 충족한 자 및 1단계 우선공급 낙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잔여 물량을 “〈표2〉 지역우선 공급기준”에 따라 공급합니다.
-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표8〉 청년 특별공급 일반공급 가점표”의 가점항목 다득점순으로 선정하되, 가점이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표8〉 청년 특별공급 일반공급 가점표

가점항목	평가요소	점수	비고
(1) 본인의 월평균 소득*	① 70% 이하	3	-
	② 70% 초과 100% 이하	2	
	③ 100% 초과	1	
(2) 해당 시도 연속 거주기간	① 2년 이상	3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표 등·초본상 계속해서 거주한 기간을 말하며,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0점 ※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으로 청약하는 자는 서울특별시에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 0점
	② 1년 이상 2년 미만	2	
	③ 1년 미만	1	
	④ 미거주	0	
(3)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인정 횟수	① 24회 이상	3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약저축) 가입 확인서 기준
	② 12회 이상 23회 이하	2	
	③ 6회 이상 11회 이하	1	
(4) 근로기간 소득세 납부	① 5년 이상	3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또는 제20조(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세를 말하며, 해당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세액공제·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 소득세 납부이력이 없는 경우 0점
	② 3년 이상 5년 미만	2	
	③ 3년 미만	1	
	④ 해당 없음	0	

* 본인의 월평균 소득 : 사회보장시스템을 통해 조회한 자료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가구원수별 가구당 소득액을 초과하는 분이 해당 가점을 받아 당첨되었음이 판명될 경우 당첨자는 해당 사실을 소명해야 합니다. 만일 소명하지 못할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점수 선택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비율	1인
청년 특별공급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70%	2,669,354원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3,813,363원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40%	5,338,708원

※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23.0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인 경우 10%p, 2명 이상인 경우('23.0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이고 '23.03.27. 이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포함) 20%p 가산하여 소득 및 자산기준이 완화되며, 완화 기준은 “〈표3-1〉 출산가구 자산보유기준 완화” 및 “〈표4-1〉 출산가구 소득기준 완화(청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완화된 소득·자산 기준을 인정받으려는 분은 출생, 입양, 임신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해당 내용을 증명해야 하며,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격미달일 경우 부적격 처리 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유의사항

[청약신청 관련]

-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공급유형별 신청자격을 충족한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서울특별시 또는 수도권 거주자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입주자격 심사를 위해 청년 본인 및 부·모 모두(예외 사항 없음)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와 '자산 보유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됩니다.

[중복신청 관련]

- (공급유형 간) 청년 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 중복신청이 가능(특별공급간 중복신청은 불가)하나, 특별공급 주택에 당첨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신청자와 부모 간) 청년 특별공급 신청자 본인과 부모가 분리세대(신청자 본인과 부모가 별도의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인 경우는 부모가 별도로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년 특별공급 신청자 본인과 부모가 동일세대(신청자 본인과 부모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인 경우, 부모가 중복 청약하여 그 중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사전에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시어 인터넷청약 신청시 부모님의 동일세대·분리세대 여부를 정확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약제한사항 관련]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과 부적격 당첨 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입주자모집공고일(2026.02.27.) 기준 당첨일로부터 1년)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특별공급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10.2.23) 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청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 및 제55조의3을 적용하는 경우는 제외)
- 특별공급으로 신청하여 당첨자로 선정된 분은 본청약 후 당첨되면 특별공급 당첨자로 관리되며, 이후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 경과 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 포함) 특별공급 대상으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2. 신혼부부 특별공급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2.27.) 현재 서울특별시 또는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①~④)을 모두 갖춘 분
-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혼부부[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의 자녀(만 7세 미만으로 태아 포함)가 있는 분],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 중이고 해당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1년이 되기 전에 입주하는 경우 입주 전까지)], 한부모가족[6세 이하의 자녀(만 7세 미만으로 태아 포함)가 있는 분] 중 하나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5페이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설명 참고)
 - ※ (예비신혼부부) 청약 시 기입한 예비배우자와의 혼인관계증명서 및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가 포함된 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을 입주 전까지 우리공사로 제출해야 하며, 서류 미제출 또는 전 배우자와 재혼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계약이 해제되고 입주가 불가합니다.
 -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증명서를 통해 증명 가능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에 해당하는 분을 포함)을 말하며,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을 통해 공고일 현재 자녀 유무 등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일 추후 사실혼 관계 등 한부모가족 자격 미달인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취소 또는 해제될 수 있습니다.
- ②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 ※ 공고일 이후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의 청약통장 순위확인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③ 해당 세대의 총자산 합계액이 “〈표3〉 총자산보유기준” 이하인 분
- ④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5〉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태아를 포함한 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30%(단,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200%) 이하인 분

구분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혼부부 우선공급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	9,793,892원	11,442,863원	12,125,081원	12,878,142원	13,631,203원	14,384,265원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4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0,547,268원	12,323,083원	13,057,779원	13,868,768원	14,679,757원	15,490,747원
신혼부부 일반공급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	9,793,892원	11,442,863원	12,125,081원	12,878,142원	13,631,203원	14,384,265원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4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0,547,268원	12,323,083원	13,057,779원	13,868,768원	14,679,757원	15,490,747원
신혼부부 추첨공급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	9,793,892원	11,442,863원	12,125,081원	12,878,142원	13,631,203원	14,384,265원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20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5,067,526원	17,604,404원	18,653,970원	19,812,526원	20,971,082원	22,129,638원

※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란 본인 및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할 예비 배우자)가 모두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동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이하 '맞벌이')

※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23.0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인 경우 10%p, 2명 이상인 경우('23.0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이고 '23.03.27. 이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포함) 20%p 가산하여 소득 및 자산기준이 완화되며, 완화 기준은 "〈표3-1〉 출산가구 자산보유기준 완화" 및 "〈표5-1〉 출산가구 소득기준 완화"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완화된 소득·자산 기준을 인정받으려는 분은 출생, 입양, 임신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해당 내용을 증명해야 하며,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격 미달일 경우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1단계 우선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① 혼인기간 2년 이내이거나 2세 이하(만3세 미만으로 태아 포함, 이하 같음)의 자녀를 둔 신혼부부, ② 예비신혼부부, ③ 2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중 월평균소득이 <표5>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맞벌이인 경우에는 140%)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주택형별 공급량의 30%(소수점 이하는 올림)를 <표2> 지역우선 공급기준에 따라 공급합니다.
-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표9> 신혼부부 특별공급 우선공급 가점표의 가점항목 다득점순으로 선정하되, 가점이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표9> 신혼부부 특별공급 우선공급 가점표

가점항목	평가요소	점수	비고
(1)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	① 70% 이하	3	맞벌이인 경우 80% 이하
	② 70% 초과 100% 이하	2	맞벌이인 경우 80% 초과 110% 이하
	③ 100% 초과	1	맞벌이인 경우 110% 초과
(2) 해당 시도 연속 거주기간	① 2년 이상	3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시에 주민등록표 등·초본상 계속해서 거주한 기간을 말하며,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0점 ※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으로 청약하는 자는 서울특별시에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 0점
	② 1년 이상 2년 미만	2	
	③ 1년 미만	1	
	④ 미거주	0	
(3)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인정 횟수	① 24회 이상	3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약저축) 가입 확인서 기준
	② 12회 이상 23회 이하	2	
	③ 6회 이상 11회 이하	1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 : 사회보장시스템을 통해 조회한 자료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을 초과하는 분이 해당 가점을 받아 당첨되었음이 판명될 경우 당첨자는 해당 사실을 소명해야 합니다. 만일 소명하지 못할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점수 선택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구당 월평균소득 비율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70% 수준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 70%	5,273,634원	6,161,541원	6,528,890원	6,934,384원	7,339,879원	7,745,373원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 80%	6,027,010원	7,041,762원	7,461,588원	7,925,010원	8,388,433원	8,851,855원
100% 수준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 100%	7,533,763원	8,802,202원	9,326,985원	9,906,263원	10,485,541원	11,064,819원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 110%	8,287,139원	9,682,422원	10,259,684원	10,896,889원	11,534,095원	12,171,301원
130% 수준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 130%	9,793,892원	11,442,863원	12,125,081원	12,878,142원	13,631,203원	14,384,265원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 140%	10,547,268원	12,323,083원	13,057,779원	13,868,768원	14,679,757원	15,490,747원

※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23.0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인 경우 10%p, 2명 이상인 경우('23.0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이고 '23.03.27. 이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포함) 20%p 가산하여 소득 및 자산기준이 완화되며, 완화 기준은 "〈표3-1〉 출산가구 자산보유기준 완화" 및 "〈표5-1〉 출산가구 소득기준 완화"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완화된 소득·자산 기준을 인정받으려는 분은 출생, 입양, 임신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해당 내용을 증명해야 하며,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격 미달일 경우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2단계 일반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① **혼인가간이 2년 초과 7년 이내이거나 3세 이상 6세 이하인 자녀를 둔 신혼부부**, ② **3세 이상 6세 이하인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중 하나에 해당하고, 월평균소득이 “〈표5〉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맞벌이 경우에는 140%) 이하인 사람 및 1단계 우선 공급 낙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공급물량의 60%(소수점 이하는 올림)를 “〈표2〉 지역우선 공급기준”에 따라 공급합니다.
-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표10〉 신혼부부 특별공급 일반공급 가점표”의 가점항목 다득점순으로 선정하되, 가점이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표10〉 신혼부부 특별공급 일반공급 가점표

가점항목	평가요소	점수	비고
(1) 미성년 자녀 수*	① 3명 이상	3	태아(입양) 포함
	② 2명	2	
	③ 1명	1	
(2) 무주택기간**	① 3년 이상	3	〈표1〉의 신청자격별 검증 대상에 해당하는 모든 분이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신청자가 만 30세가 되는 날(신청자가 만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혼인관계증명서상 최초 혼인신고일)부터 산정 ※ “공고일 현재 만30세 미만인면서 혼인한 적이 없는 분은 0점
	② 1년 이상 3년 미만	2	
	③ 1년 미만	1	
	④ 해당 없음	0	
(3) 해당 시·도 연속 거주기간	① 2년 이상	3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표 등·초본상 계속해서 거주한 기간을 말하며,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0점 ※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으로 청약하는 자는 서울특별시에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 0점
	② 1년 이상 2년 미만	2	
	③ 1년 미만	1	
	④ 미거주	0	
(4)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인정 횟수	① 24회 이상	3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약저축) 가입 확인서 기준
	② 12회 이상 23회 이하	2	
	③ 6회 이상 11회 이하	1	

* (1) 미성년자녀수 입력방법

- (일반)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미성년 자녀 수(임신·출산·입양한 자녀를 포함하며, 이하 ‘자녀’라고 함)를 말하며,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에 등재하는 미성년 자녀 수를 입력하고, 한부모가족은 신청자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서 확인이 되는 신청자의 미성년 자녀 수를 입력합니다.
- (재혼 또는 이혼) 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자녀(직계비속)를 입력하되, 배우자의 재혼 전 자녀(배우자의 직계비속)는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인정합니다.
- (임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 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하고, 입주 시 출산 관련 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 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입양) 입주 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고,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입양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양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류를 미제출하거나 입주 전 파양한 경우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2) 무주택기간

- 〈표1〉의 신청자격별 검증 대상에 해당하는 모든 분이 무주택이 된 날부터 산정합니다.

산 정 예 시

무주택기간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2.27.)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주택공급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산하되, 만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부터 계산)으로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할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이 된 날부터 기간을 산정(주택소유여부는 “II. 신청기준”의 “2. 무주택세대구성원 및 주택소유여부 판정기준” 참조)

- 예시1 : 미혼인 신청자가 현재 만34세이고,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을 경우 무주택기간은 4년
- 예시2 : 미혼인 신청자가 현재 만35세이고, 무주택세대구성원이 가장 최근에 주택을 처분한 지 1년이 되었다면, 무주택기간은 1년
- 예시3 : 기혼(만26세 혼인)인 신청자가 현재 만31세이고,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을 경우 무주택기간은 5년
- 예시4 : 기혼(만26세 혼인)인 신청자가 현재 만34세이고,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처분한 지 2년이 되었다면, 무주택기간은 2년
- 예시5 : 현재 만32세 미혼(만26세에 혼인 후 이혼)인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6년
- 예시6 : 현재 만28세 미혼인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0년(불인정)

※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했다라도, 혼인 전 해당 주택을 처분했다면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3단계 추첨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격을 충족한 분 및 2단계 일반공급 낙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잔여 물량을 “〈표2〉 지역우선 공급기준”에 따라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유의사항

[청약신청 관련]

- 혼인기간을 산정할 때 전 배우자였던 사람과 재혼하는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포함합니다.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청약 시 ‘**혼인으로 구성할 세대**’를 기준으로 주택 소유, 자산 및 소득기준을 검증합니다. 따라서 신청자는 청약 전 혼인으로 구성할 세대를 결정하시고 세대원을 입력하시기 바라며, 청약 후에는 신청자가 입력한 세대원 내역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공급유형별 신청자격에 충족한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서울특별시가 아닌 수도권 거주자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복신청 관련]

- (공급유형 간) 신혼부부 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 중복신청이 가능(특별공급 간 중복신청은 불가)하나, 특별공급 주택에 당첨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신청자와 배우자 간) 부부(예비신혼부부 제외)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해 각각 청약할 수 있으나, 중복으로 당첨된 경우 **청약접수일** [분 단위까지의 접수시간을 포함하되, 분 단위도 동일하다면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이 **빠른 사람의 당첨만 인정**되고, 후 접수분은 무효 처리됩니다.
- (신청자와 세대구성원 간) 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구성원이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중복청약하여 그 중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청약제한사항 관련]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 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적격 당첨된 주택의 당첨일로부터 1년)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특별공급 및 동법 개정(‘10.02.23.) 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 및 제55조의3을 적용하는 경우는 제외)
- 특별공급으로 신청하여 당첨자로 선정된 분은 특별공급 당첨자로 관리되며, 이후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 경과 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 포함) 특별공급 대상으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 특례 관련]

- 신청자의 배우자(예비신혼부부 제외)가 혼인신고일 전에 당첨자로 관리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 (혼인특례) (예비신혼부부 제외) 신청자 본인이 혼인신고일 전에 당첨자로 관리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한 차례에 한정하여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 (출산특례) (예비신혼부부 포함) ‘24.06.19.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나 입양 포함)가 있는 분은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특별공급 당첨 이력이 있더라도 한 차례에 한정(1세대 1주택 기준)하여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신청자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주택 및 분양권 등을 소유한 경우에 한함) 청약 신청이 가능하나, 당첨 후 기존 소유 주택(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의 소유)의 처분 조건을 승낙하여야 합니다. 단, 이 경우 기존 소유 주택도 자산보유기준 적용 대상이 됩니다.(6페이지 출산특례 참고)
- ※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혼인특례 및 출산특례의 중복 적용은 불가**하므로 청약 신청 전에 신청자 및 그 배우자의 청약제한사항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첨공급 관련]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라 우선공급 등의 물량을 정해진 비율만큼 선 배정 후 잔여 주택에 대해 추첨공급하기 때문에, 특별공급 주택 수에 따라 추첨공급 물량이 없을 수 있습니다.

3. 생애최초 특별공급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2.27.) 현재 서울특별시 또는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하면서 아래조건(①~⑥)을 모두 갖춘 분
 -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에 속한 모든 분이 과거 주택소유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하나, 공급 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신고일 전에 주택을 소유했다가 처분한 사실이 있는 경우는 신청 가능) ※ 5페이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설명 참조
 -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른 1순위자*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인 분

* 본 단지는 투기과열지구에 해당하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라 아래 일반공급 1순위 조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청약이 가능합니다.

- 1)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하였을 것
- 2) 세대주일 것
- 3)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과거 5년 이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되지 아니하였을 것

※ 공고일 이후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의 청약통장 순위확인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재혼 포함)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입양을 포함하며, 신청자가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자녀(신청자의 태아 포함)를 말함)가 있는 분

※ 1인 가구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 신청이 불가합니다.



- ④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과거 1년 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분을 포함)로서 신청자 본인이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또는 제20조(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하며, 해당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 공제·세액공제·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 ⑤ 해당 세대의 **총자산 합계액이 “〈표3〉 총자산보유기준” 이하인 분**
- ⑥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 합이 “〈표5〉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의 **130%**(단,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200%**) **이하인 분**

공급유형	가구당 월평균소득 비율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생애최초 우선공급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7,533,763원	8,802,202원	9,326,985원	9,906,263원	10,485,541원	11,064,819원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9,040,516원	10,562,642원	11,192,382원	11,887,516원	12,582,649원	13,277,783원
생애최초 일반공급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	9,793,892원	11,442,863원	12,125,081원	12,878,142원	13,631,203원	14,384,265원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4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0,547,268원	12,323,083원	13,057,779원	13,868,768원	14,679,757원	15,490,747원
생애최초 추첨공급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	9,793,892원	11,442,863원	12,125,081원	12,878,142원	13,631,203원	14,384,265원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20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5,067,526원	17,604,404원	18,653,970원	19,812,526원	20,971,082원	22,129,638원

- ※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란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동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를 뜻합니다.(이하 ‘**맞벌이**’)
- ※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23.0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인 경우 10%p, 2명 이상인 경우(‘23.0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이고 ‘23.03.27. 이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포함) 20%p’ 가산하여 소득 및 자산기준이 완화되며, 완화 기준은 “〈표3-1〉 출산가구 자산보유기준 완화” 및 “〈표5-1〉 출산가구 소득기준 완화”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완화된 소득·자산 기준을 인정받으려는 분은 출생, 입양, 임신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해당 내용을 증명해야 하며,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격 미달일 경우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1단계 우선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위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격에 해당되며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 합이 “〈표5〉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공급신청자 또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올라 있는 경우만 가구원수에 포함)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00%**(맞벌이인 경우 **120%**) **이하인 분**을 대상으로 주택형별 공급량의 70%(소수점 이하는 올림)를 “〈표2〉 지역우선 공급기준”에 따라 공급합니다.
-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2단계 일반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위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격에 해당되며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 합이 “〈표5〉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공급신청자 또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올라 있는 경우만 가구원수에 포함)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30%**(맞벌이인 경우 **140%**) **이하인 분** 및 1단계 우선공급 낙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주택형별 공급량의 20%(소수점 이하는 올림)를 “〈표2〉 지역우선 공급기준”에 따라 공급합니다.
-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3단계 추첨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위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격에 해당되며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 합이 “〈표5〉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공급신청자 또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올라 있는 경우만 가구원수에 포함)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30%**(맞벌이인 경우 **200%**) **이하인 분** 및 2단계 일반공급 낙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잔여 물량에 대하여 “〈표2〉 지역우선 공급기준”에 따라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유의사항

[청약신청 관련]

- 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신고일 전에 당첨자로 관리된 사실 또는 주택을 소유했다가 처분(혼인신고일 전)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공급유형별 신청자격을 충족한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서울특별시거주자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복신청 관련]

- (공급유형 간) 생애최초 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 중복신청이 가능(특별공급간 중복신청은 불가)하나, 특별공급 주택에 당첨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신청자와 배우자 간) 부부(예비신혼부부 제외)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해 각각 청약할 수 있으나, 중복으로 당첨된 경우 청약접수일이 빠른 사람(분 단위까지의 접수시간을 포함하되, 분 단위로 동일하다면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의 당첨만 인정되고, 후 접수분은 무효 처리됩니다.
- (신청자와 세대구성원 간) 특별공급 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구성원이 특별공급, 일반공급에 중복청약하여 그 중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제한사항 관련]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 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적격 당첨된 주택의 당첨일로부터 1년)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특별공급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10.2.23) 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 및 제55조의3을 적용하는 경우는 제외)
- 특별공급으로 신청하여 당첨자로 선정된 분은 특별공급 당첨자로 관리되며, 이후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 경과 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 포함) 특별공급 대상으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추첨공급 관련]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라 우선공급 등의 물량을 정해진 비율만큼 선 배정 후 잔여 주택에 대해 추첨공급하기 때문에, 특별공급 주택 수에 따라 추첨공급 물량이 없을 수 있습니다.

4. 신생아 특별공급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2.27.) 현재 서울특별시 또는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하면서 아래조건(①~④)을 모두 갖춘 분
 -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의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 (출생) 당첨서류 제출 시 출산 및 양육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출생신고 전인 경우 출생증명서), 아동수당·부모급여 수령내역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류 미제출 시 부적격 처리되어 계약체결 불가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 (입양) 당첨서류 제출 시 입양 및 양육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입양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아동수당·부모급여 수령내역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입주 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고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입양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업주체가 정한 입주기간이 시작한 이후 발급받은 입양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 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 (임신) 당첨서류 제출 시 임신 관련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임신 및 출산 관련 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 ※ 임신상태가 입주기간 시작 이후까지 지속되는 경우, 입주기간 시작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 아동수당·부모급여 수령내역 등 자녀 양육사실 증빙서류는 공적 서류에 한하여 인정하며, 그 외 신청결과 문자 등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 ③ 해당 세대의 총자산 합계액이 “〈표3〉 총자산보유기준” 이하인 자
 - ④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5〉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40% (단,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200%) 이하인 분

구분	신생아 특별공급 소득 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생아 우선공급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7,533,763원	8,802,202원	9,326,985원	9,906,263원	10,485,541원	11,064,819원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9,040,516원	10,562,642원	11,192,382원	11,887,516원	12,582,649원	13,277,783원
신생아 일반공급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40%	10,547,268원	12,323,083원	13,057,779원	13,868,768원	14,679,757원	15,490,747원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5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1,300,645원	13,203,303원	13,990,478원	14,859,395원	15,728,312원	16,597,229원
신생아 추첨공급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40%	10,547,268원	12,323,083원	13,057,779원	13,868,768원	14,679,757원	15,490,747원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20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5,067,526원	17,604,404원	18,653,970원	19,812,526원	20,971,082원	22,129,638원



- ※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란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동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 소득이 있는 경우를 뜻합니다.(이하 '맞벌이')
- ※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23.0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인 경우 10%p, 2명 이상인 경우('23.0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이고 '23.03.27. 이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포함) 20%p 가산하여 소득 및 자산기준이 완화되며, 완화 기준은 "〈표3-1〉 출산가구 자산보유기준 완화" 및 "〈표5-1〉 출산가구 소득기준 완화"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 완화된 소득·자산 기준을 인정받으려는 분은 출생, 입양, 임신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해당 내용을 증명해야 하며,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격미달일 경우 부적격 처리 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1단계 우선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위 신생아 특별공급 신청자격에 해당되며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 합이 "〈표5〉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00%(맞벌이인 경우 120%) 이하인 분**을 대상으로 주택형별 공급량의 70% (소수점 이하는 올림)를 "〈표2〉 지역우선 공급기준"에 따라 공급합니다.
-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 "〈표11〉 신생아 특별공급 우선공급 및 일반공급 가점표"의 가점항목 다득점순으로 선정하되, 가점이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2단계 일반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위 신생아 특별공급 신청자격에 해당되며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 합이 "〈표5〉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40%(맞벌이인 경우 150%) 이하인 분** 및 1단계 우선공급 낙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주택형별 공급량의 20%(소수점이하는 올림)를 "〈표2〉 지역우선 공급기준"에 따라 공급합니다.
-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 "〈표11〉 신생아 특별공급 우선공급 및 일반공급 가점표"의 가점항목 다득점순으로 선정하되, 가점이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표11〉 신생아 특별공급 우선공급 및 일반공급 가점표

가점항목	평가요소	점수	비고
(1)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	① 70% 이하	3	맞벌이인 경우 소득 80% 이하
	② 70% 초과 100% 이하	2	맞벌이인 경우 소득 80% 초과 110% 이하
	③ 100% 초과	1	맞벌이인 경우 소득 110% 초과
(2) 미성년 자녀 수**	① 3명 이상	3	태아(입양) 포함
	② 2명	2	
	③ 1명	1	
(3) 해당 주택건설지역 연속 거주기간	① 2년 이상	3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내 주민등록표 등·초본상 계속해서 거주한 기간을 말하며,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0점 ※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으로 청약하는 자는 서울특별시에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 0점
	② 1년 이상 2년 미만	2	
	③ 1년 미만	1	
	④ 미거주	0	
(4)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인정 횟수	① 24회 이상	3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약저축) 가입 확인서 기준
	② 12회 이상 23회 이하	2	
	③ 6회 이상 11회 이하	1	

* (1)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 : 사회보장시스템을 통해 조회한 자료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을 초과하는 분이 해당 가점을 받아 당첨되었음이 판명될 경우 당첨자는 해당 사실을 소명해야 합니다. 만일 소명하지 못할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점수 선택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구당 월평균소득 비율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70% 수준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 70%	5,273,634원	6,161,541원	6,528,890원	6,934,384원	7,339,879원	7,745,373원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 80%	6,027,010원	7,041,762원	7,461,588원	7,925,010원	8,388,433원	8,851,855원
100% 수준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 100%	7,533,763원	8,802,202원	9,326,985원	9,906,263원	10,485,541원	11,064,819원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 110%	8,287,139원	9,682,422원	10,259,684원	10,896,889원	11,534,095원	12,171,301원

※ (출산가구 소득기준 완화) '23.0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인 경우 10%p, 2명 이상인 경우('23.0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이고 '23.03.27. 이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포함) 20%p 가산하여 소득기준이 완화되며, 완화 기준은 "〈표5-1〉 출산가구 소득기준 완화"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완화된 소득 기준을 인정받으려는 분은 출생, 입양, 임신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해당 내용을 증명해야 하며,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격 미달일 경우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2) 미성년 자녀 수 입력방법

- (일반)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미성년 자녀 수(임신/출산/입양한 자녀를 포함하며, 이하 '자녀'라고 함)를 말함
- (재혼 또는 이혼) 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자녀(직계비속)를 입력하되, 배우자의 재혼 전 자녀(배우자의 직계비속)는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인정합니다.
- (임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하고, 입주 시 출산관련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 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됩니다.
- (입양) 입주 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고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입양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양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 취소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3단계 추가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생아 특별공급 신청자격을 충족한 분 및 2단계 일반공급 낙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잔여물량을 “〈표2〉 지역우선 공급기준”에 따라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유의사항

[청약신청 관련]

-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공급유형별 신청자격을 충족한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서울특별시거주권인 수도권 거주자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복신청 관련]

- (공급유형 간) 신생아 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 중복신청이 가능(**특별공급간 중복신청은 불가**)하나, 특별공급 주택에 당첨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신청자와 배우자 간) **부부(예비신혼부부 제외)**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해 각각 청약할 수 있으나, 중복으로 당첨된 경우 청약접수일이 빠른 사람(분 단위까지의 접수시간을 포함하되, 분 단위도 동일하다면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의 당첨만 인정되고, 후 접수분은 무효 처리됩니다.
- (신청자와 세대구성원 간) 특별공급 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구성원이 특별공급, 일반공급에 중복청약하여 그 중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제한사항 관련]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 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적격 당첨된 주택의 당첨일로부터 1년)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특별공급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10.02.23.) 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신생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 및 제55조의3을 적용하는 경우는 제외)
- 특별공급으로 신청하여 당첨자로 선정된 분은 특별공급 당첨자로 관리되며, 이후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 경과 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 포함)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 특례 관련]

- 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신고일 전에 당첨자로 관리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 (출산특례) 신생아 특별공급의 경우, '24.06.19.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나 입양 포함)가 있는 분은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특별공급 당첨 이력이 있더라도 한 차례에 한정(1세대 1주택 기준)하여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신청자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주택 및 분양권 등을 소유한 경우에 한함) 청약 신청이 가능하나, 당첨 후 기존 소유 주택(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의 소유)의 처분 조건을 승낙하여야 합니다. 단, 이 경우 기존 소유 주택도 자산보유기준 적용 대상이 됩니다.(6페이지 출산특례 참고)

[추첨공급 관련]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라 우선공급 등의 물량을 정해진 비율만큼 선 배정 후 잔여 주택에 대해 추첨공급하기 때문에, 특별공급 주택 수에 따라 추첨공급 물량이 없을 수 있습니다.

5. 철거민 특별공급

■ 신청대상

• 회현제2시민아파트 정리사업 철거민

- 「서울특별시 철거민 등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규칙」(2008.04.17. 이전)을 적용받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제1항제12호 및 제13호에 해당하여(2008.04.17. 이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기준 제19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철거소재지 구청에 신청접수 후 금회 분양 대상단지에 **해당 구청으로부터 적격으로 확정 통보된 자**



■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2.27.)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세대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2의3)이 전원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

- 가.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주택공급신청자'라 함)
-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이하 같음)
- 라.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특별공급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10.02.23.) 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철거민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 특별공급은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제1항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으로 인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 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6.03.12.(목) 10:00 ~ 2026.03.13.(금) 17:00

※ 신청기간 중에는 인터넷으로 24시간 청약 가능

● 신청방법 : 청약자 편의를 도모하고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합니다.

SH 인터넷청약시스템(<https://www.i-sh.co.kr/app>) 접속 → 홈페이지 상단의 청약공고에서 마곡지구 17단지 [신청하기] 선택 → [청약중] 선택 → 인증서 로그인 → [특별공급] 선택 → [특별분양] 선택 → [철거민] 선택 → 청약신청서 작성 → 청약내용 확인 후 청약신청 완료

- ※ 인터넷 사용 취약자(만 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를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방문 인터넷 대행접수를 운영하며, 상세 내용은 46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철거민 특별공급 대상자는 반드시 위에 명시된 청약 신청기간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 ※ 신청일에 인증서(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용 민간인증서(카카오톡, KB국민은행, 통신사 PASS, 삼성패스, 네이버, 신한은행,뱅크샐러드, 하나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토스)) 중 1개를 반드시 소지하셔야 합니다.
- ※ 철거민 특별공급 대상자가 위 신청기간 및 방법에 따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철거민 특별공급 대상자의 지위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반드시 해당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선정 관련

- 서울 중구청 회현시민아파트 철거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신 분 중 신청기간(2026.03.12. ~ 03.13.)에 신청하신 분을 당첨자로 선정하며, 당첨자 선정 후 무주택 여부 및 청약제한사항을 심사하여 적격 당첨자와 계약을 체결합니다.
 - ※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을 시, 청약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포기 처리
- 당첨자로 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므로 신청자 본인과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모두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중복청약이 불가하며, 중복 청약 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 부적격 당첨, 계약 포기 등이 발생할 경우 해당 물량은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당첨자에 대한 동호배정은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한국부동산원)의 프로그램에 의해 신청 주택형 내에서 타입별·동별·층별·향별·축 세대 구분 없이 무작위로 전산추첨 합니다. (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변경 불가)

6. 일반공급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2.27.) 현재 서울특별시 또는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①~③)을 모두 갖춘 분
 -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약저축)에 가입한 분 ※ 5페이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설명 참조
 - ② 해당 세대의 총자산 합계액이 “〈표3〉 총자산보유기준” 이하인 분
 - ③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 합이 “〈표5〉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의 100% 이하인 분(단,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200%) 이하인 분

공급유형	가구당 월평균소득 비율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생아 우선공급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7,533,763원	8,802,202원	9,326,985원	9,906,263원	10,485,541원	11,064,819원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4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0,547,268원	12,323,083원	13,057,779원	13,868,768원	14,679,757원	15,490,747원
우선공급 (1순위자)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7,533,763원	8,802,202원	9,326,985원	9,906,263원	10,485,541원	11,064,819원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4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0,547,268원	12,323,083원	13,057,779원	13,868,768원	14,679,757원	15,490,747원
추첨공급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7,533,763원	8,802,202원	9,326,985원	9,906,263원	10,485,541원	11,064,819원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20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5,067,526원	17,604,404원	18,653,970원	19,812,526원	20,971,082원	22,129,638원

※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란 본인 및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할 예비 배우자)가 모두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사업 소득 또는 동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이하 '맞벌이')

※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23.0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인 경우 10%p, 2명 이상인 경우('23.0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이고 '23.03.27. 이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포함) 20%p 가산하여 소득 및 자산기준이 완화되며, 완화 기준은 "〈표3-1〉 출산가구 자산보유기준 완화" 및 "〈표5-1〉 출산가구 소득기준 완화"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완화된 소득·자산 기준을 인정받으려는 분은 출생, 입양, 임신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해당 내용을 증명해야 하며,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격미달일 경우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위 일반공급 신청자격에 해당되며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 소득이 "〈표5〉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의 100%(단,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40%) 이하인 분을 대상으로 주택형별 공급량의 50%(소수점 이하는 올림)를 "〈표12〉 일반공급 순위별 자격요건"의 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 동일 순위 내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표2〉 지역우선 공급기준"에 따라 공급하고, 1순위 내 동일지역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표13〉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에 따라 선정하며, 1순위 내 동일 순차 또는 2순위 동일지역 내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표12〉 일반공급 순위별 자격요건

순위	자격요건
1순위	아래를 모두 충족하시는 분 ①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된 분으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하신 분 ② 세대주이신 분 ③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과거 5년 이내에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되지 않은 분
2순위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약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은 분

〈표13〉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
가.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매월 최대 25만원까지만 인정)이 많은 분
나. 저축총액이 많은 분

※ 무주택기간 인정기준

산정예시
- 무주택기간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2.27.)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 (주택공급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산하되, 만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부터 계산)으로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이 된 날부터 기간을 산정(주택소유여부는 "II. 신청기준" 2. 무주택세대구성원 및 주택소유여부판정기준" 참조)
예시1 : 미혼인 신청자가 현재 만34세이고,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을 경우 무주택기간은 4년
예시2 : 미혼인 신청자가 현재 만35세이고, 무주택세대구성원이 가장 최근에 주택을 처분한 지 1년이 되었다면, 무주택기간은 1년
예시3 : 기혼(만26세 혼인)인 신청자가 현재 만31세이고,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을 경우 무주택기간은 5년
예시4 : 기혼(만26세 혼인)인 신청자가 현재 만34세이고,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처분한 지 2년이 되었다면, 무주택기간은 2년
예시5 : 현재 만32세 미혼(만26세에 혼인 후 이혼)인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6년
예시6 : 현재 만28세 미혼인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0년(불인정)
※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했다라도, 혼인 전 해당 주택을 처분했다면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2단계 우선공급(1순위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위 일반공급 신청자격에 해당되며 “〈표12〉 일반공급 순위별 자격요건”에 따른 **1순위자**로서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 소득이 “〈표5〉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의 **100%**(단,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40%**) 이하인 분 및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낙첨자(“〈표12〉 일반공급 순위별 자격요건”에 따른 **1순위자로 한정**)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공급량의 30%(소수점 이하는 올림) 및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잔여물량을 “〈표2〉 지역우선 공급기준”에 따라 공급합니다.
-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표13〉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에 따라 결정하고, 동일 순차 내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3단계 추첨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위 일반공급 신청자격에 해당되는 분과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낙첨자 및 2단계 우선공급(1순위자) 낙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잔여물량을 “〈표2〉 지역우선 공급기준”에 따라 공급합니다.
-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유의사항

[청약신청 관련]

-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공급유형별 신청자격을 충족한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서울특별시가 아닌 수도권 거주자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접수 결과 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잔여물량과 일반공급 물량을 합산한 물량의 600%에 미달할 경우, 일반공급 낙첨자 전원을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중복신청 관련]

- (공급유형 간) 특별공급(유형 무관) **1번, 일반공급 1번 중복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특별공급 주택에 당첨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신청자와 그 배우자 간) 부부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해 각각 청약할 수 있으나, 중복으로 당첨된 경우 청약접수일(분 단위까지의 접수 시간을 포함하되, 분 단위도 동일하다면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기준)이 많은 자)이 빠른 사람의 당첨만이 인정되고, 후 접수분은 무효 처리됩니다.
- (신청자와 세대구성원 간) 일반공급 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구성원이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중복으로 청약하여 그 중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청약제한사항 관련]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 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적격 당첨된 주택의 당첨일로부터 1년) 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생아 우선공급 당첨자 제출 서류]

- **(출생)** 당첨자 서류 제출 시 출산 및 양육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출생신고 전인 경우 출생증명서), 아동수당·부모급여 수령내역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부적격 처리.
- **(임신)** 당첨자 서류 제출 시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 사실의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또한 입주지정기간이 개시되기 전까지 출산 및 양육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아동수당·부모급여 수령내역 등)를 제출해야 하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의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되어 주택 계약의 체결이 불가하고,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 후까지도 지속되는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 이후에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입양)** 당첨자 서류 제출 시 입양 및 양육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양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아동수당·부모급여 수령내역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입주 시까지 입양 자격을 유지해야 하고,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입양 및 양육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양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아동수당·부모급여 수령내역 등)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만일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입주 전 파양한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되어 주택 계약의 체결이 불가하고,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추첨공급 관련]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라 우선공급 등의 물량을 정해진 비율만큼 선 배정 후 잔여 주택에 대해 추첨공급하기 때문에, 일반공급 주택 수에 따라 추첨공급 물량이 없을 수 있습니다.

4 신청 시 확인사항

1. 청약 신청 전 청약제한사항 확인방법

청약 신청 전 확인 가능한 청약제한사항	청약제한사항 확인방법
1. 세대구성원 청약자격확인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 → 청약자격확인 → 청약제한사항 확인 → 인증서 인증 → 조회기준일 입력 → 조회
2. 신청자 청약제한사항(재당첨제한, 특별공급제한, 과거당첨사실확인, 부적격당첨제한)	
3. 주택소유확인	
4. 청약통장순위확인서	

- 청년 특별공급의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의한 재당첨제한 적용주택(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등)에 기당첨되어 재당첨 제한기간 내에 있는 분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에 의한 부적격 당첨 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적격 당첨된 주택의 당첨일로부터 1년) 내에 있는 분은 금회 공급하는 주택의 청년 특별공급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신혼부부·생애최초·신생아·철거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의한 재당첨제한 적용주택(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등)에 기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에 의한 부적격 당첨 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적격 당첨된 주택의 당첨일로부터 1년) 내에 있는 분은 금회 공급하는 주택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예비)배우자의 혼인 전 당첨사실도 주택공급 신청자의 청약 신청에 영향이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아래와 같은 경우에도 청약 신청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제외)·생애최초·신생아 특별공급의 경우, 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신고일 전에 당첨자로 관리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 [혼인특례]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제외) 특별공급의 경우, 신청자 본인이 혼인신고일 전에 당첨자로 관리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한 차례에 한정하여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 [출산특례]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포함)·신생아 특별공급의 경우, '24.06.19.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나 입양 포함)가 있는 분은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특별공급 당첨 이력이 있더라도 한 차례에 한정(1세대 1주택 기준)하여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신청자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주택 및 분양권 등을 소유한 경우에 한함) 청약 신청이 가능하나, 당첨 후 기존 소유 주택(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의 소유)의 처분 조건을 승낙하여야 합니다. 단, 이 경우 기존 소유 주택도 자산보유기준 적용 대상이 됩니다.(6페이지 출산특례 참고)
- 신청자, (예비)배우자 및 세대원은 각자의 인증서를 이용하여 각각 검색하여야 합니다.
- 인증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입주자저축 가입은행에서 당첨사실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2. 재당첨제한, 전매제한, 거주 의무, 주택공공매입 안내

■ 재당첨제한, 전매제한, 거주 의무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으로 아래 기간만큼 재당첨제한, 전매제한 및 거주 의무가 적용됩니다.

구분	기준일 (~로부터)	기간	관련법령
재당첨제한	당첨자 발표일	10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전매제한	당첨자 발표일	10년	「주택법」 제64조, 「주택법 시행령」 제73조
거주 의무	최초 입주가능일	5년	「주택법」 제57조의2, 「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2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당첨자는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며, 당첨자 본인은 물론 당첨자의 배우자 및 세대원(세대원은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에 한하며,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포함)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10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 경과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하되,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에 한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또한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매제한 및 거주 의무]

- 「주택법」 제64조제4항에 따라 주택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없다는 내용과, 「주택법」 제57조의2제5항에 따라 거주 의무자가 거주 의무기간을 거주하여야 해당 주택을 양도할 수 있다는 내용이 소유권에 관한 등기에 부기등기 됩니다.
- 「주택법」 제57조의2제1항에 따라 해외 체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SH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는 「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2제2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외의 사유로 거주 의무기간 이내에 거주를 이전하려는 경우 거주 의무자는 SH에 해당 주택의 매입을 신청하여야 하며, 거주 의무자가 거주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주택법」 제57조의2제3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SH가 해당 주택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 거주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해당 주택을 양도하거나, 전매제한기간을 위반하여 주택을 전매하는 경우(전매 알선 포함) 「주택법」 제101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알선 포함)을 위반한 경우 「주택법」 제64조제7항에 따라 10년의 범위에서 주택의 입주자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공매입 관련

- 공회 공급되는 주택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서, 「주택법」 제78조의2에 따라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전매제한기간이 지나기 전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주택법 시행규칙」 제32조의2에 따른 매입신청서를 작성하고 일정서류(분양계약서 사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를 첨부하여 SH에 해당 주택의 매입을 신청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SH는 해당 주택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 또한 「주택법」 제6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전매제한기간 내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전매가 이루어진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SH가 해당 주택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 위의 경우 SH는 해당 주택의 매입비용과 보유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하여 해당 주택을 취득합니다.
- 「주택법 시행령」 제82조의2에 따른 매입비용
 - (거주 의무기간 경과 전) 납부한 입주금과 그 입주금에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합산한 금액 (이하 '매입비용')
 - (거주 의무기간은 경과했으나 전매제한기간은 경과하지 않은 경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주택에 대해 감정평가한 금액에서 입주금을 뺀 금액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과 입주금을 합산한 금액(다만, 이에 따라 합산한 금액이 매입비용보다 작은 경우에는 매입비용으로 지급)

3. 최하층 주택 우선배정 안내(노인·장애인·다자녀가구에 한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에 의거 거동이 불편한 노인, 장애인 및 다자녀가구를 배려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최하층 주택을 우선 배정합니다. (최하층 주택 공급세대수는 8페이지 '공급대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최하층은 1층을 말하며(1층을 대상으로 배정) 최하층 주택의 분양금액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금액보다 높은 경우 최하층 우선배정을 하지 않습니다.
- 최하층 주택 우선배정 신청자가 각 주택형별 최하층 주택수를 초과할 경우 최하층에 배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최하층 주택 우선배정에 대한 자격인증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부적격 당첨으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 기간 입주자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최하층 주택 우선배정 안내
신청자격	<p>청약 신청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중 아래 ①~③에 해당하는 분으로서 최하층 주택 희망자</p> <p>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5세 이상인 분 ②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분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태아는 포함하지 않음)가 있는 분 ※ 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을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에 근거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p>
신청방법	<p>- 희망자는 본인이 신청하고자 하는 공급유형(특별공급, 일반공급)의 신청일자에 SH인터넷청약시스템에서 청약 신청 시 '최하층 우선배정 요청' 문항에 체크</p> <p>- 당첨자로 선정되었을 경우 아래의 자격인증서류 제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자격 ①번 해당자: 주민등록표등본 · 신청자격 ②번 해당자: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사본 등 · 신청자격 ③번 해당자: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4. 중복청약 및 당첨 시 처리기준

■ 공통사항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중(5페이지 참고) 중 1인만 신청 가능하며, 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구성원이 중복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 선정 제한 등)]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청약홈 등 타기관을 통해 청약하는 경우도 포함)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금회 공급하는 주택과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다른 주택(민간 사전청약 포함)에 1인 2건 이상 청약 신청할 경우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됩니다.
- ※ **부부(예비신혼부부 제외)**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해 각각 청약할 수 있으나, 중복당첨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청약 접수일(분 단위까지의 접수시간을 포함)이 빠른 사람의 당첨(분 단위 접수시간이 동일한 경우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가 당첨된 주택을 말함)만을 인정하며, 후 접수분은 무효처리 합니다.

■ 사전청약 당첨자

- 사전청약 당첨자(입주예약자)가 “사전청약 당첨자” 신청일[2026.03.10.(화)~03.11.(수)]에 신청할 경우, 금회 공급하는 주택의 특별 및 일반공급에 신청이 불가하며, 중복청약 시 모두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됩니다.[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 선정 제한 등)]
- 사전청약 당첨자(입주예약자)가 “사전청약 당첨자” 신청일[2026.03.10.(화)~03.11.(수)]에 미신청(포기)한 경우에는, 금회 공급하는 주택의 특별 및 일반공급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당첨자 선정은 본청약 신청자와 동일하게 자격심사 및 경쟁을 거쳐야 합니다.
- 금회 공급하는 주택에 사전청약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이 각각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됩니다.[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등)]

■ 특별공급(청년, 신혼부부, 생애최초, 신생아) 및 일반공급

- 공급유형별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분은 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단, 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구성원이 일반공급 또는 특별공급에 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되거나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간 중복청약할 수 없으며 청년·신혼부부·생애최초·신생아 특별공급 중 2개 이상의 자격에 해당할 경우에도 하나의 특별공급만 신청 가능합니다. 중복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되거나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등)]
- **신혼부부 특별공급 중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신청자 외 예비배우자가 다른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중복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 철거민 특별공급

- 철거민 특별공급 당첨예정자는 당첨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므로,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당첨예정자 또는 그 세대원이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중복청약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합니다.

5. 예비입주자 등에 대한 사항

■ 공통사항

-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금회 공급하는 주택의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180일입니다. 해당 기간 경과 시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고, 공사가 보유한 예비입주자의 정보는 모두 폐기합니다.
- 사전청약 특별공급 당첨자 및 본청약 특별공급 당첨자의 부적격, 미계약 및 계약해지 등으로 특별공급 중에서 남은 주택이 발생할 경우, 추첨으로 결정된 주택형별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모두 공급하고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해당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의 계약 및 입주까지 대기기간이 다소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미계약 물량 모두를 공개한 후 동·호수 배정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 예비입주자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당첨자로 관리되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당첨자로 선정하는 경우 동·호수 배정에 참가하여 동·호수를 배정 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분도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금회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이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금회 예비입주자로서 공급을 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추첨에도 참가할 수 없습니다. 다만, 금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 배정일(당첨일)이 다른 주택의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다른 주택의 입주자 선정내역은 무효처리 됩니다.
- 예비입주자 공급일정 등에 대한 안내는 청약 시 기재하신 연락처를 기준으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별도 안내하므로, 연락처가 변경되거나 잘못 기재하신 경우 수정한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우리 공사에 서면으로 고지해야 합니다. 고지하지 않을 경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우리 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특별공급**

-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시 주택형별 전체 공급량의 **500%**까지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추첨으로 선정(소수점 이하 올림)합니다. 각 주택형별 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전체 공급량의 **600%**에 미달할 경우 낙첨자 전원을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일반공급**

-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 시 주택형별 특별공급 잔여물량과 일반공급 물량을 합산한 물량의 **500%**까지 예비입주자를 선정(소수점 이하 올림)하며, 각 주택형별 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잔여물량과 일반공급 물량을 합산한 물량의 **600%**에 미달할 경우 낙첨자 전원을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예비입주자는 청약자 수가 공급세대수를 초과한 주택형에 한해 한국부동산원에서 당첨자 선정 후 주택형별 낙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1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시 39페이지 “〈표13〉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에 따라 당첨자를 결정하며, 1순위 내 동일 순차 또는 2순위 동일지역 내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합니다.
- 동일 순위 내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서울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5 신청일정 및 신청접수 유의사항

방문 신청 시 우려되는 혼잡 방지 및 신청자 편의 도모를 위하여 인터넷 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1. 신청일정

일정구분		접수기간	장소
특별 공급	사전청약 당첨자	2026.03.10.(화) 10:00 ~ 03.11.(수) 17:00	· 인터넷신청 - SH 인터넷 청약시스템(www.i-sh.co.kr/app) · 방문 인터넷 대행 접수 - 장소 : SH 2층 대강당 (지하철 3호선 대청역 8번 출구 연결통로) - 대행 접수는 인터넷 사용 취약자(만 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를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운영합니다. - 대행 접수는 유형별 접수기간 중 10:00~ 16:00 내(신청 마감시간 1시간 전)에 공사에 도착 하신 분에 한해 접수가 가능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청년	2026.03.12.(목) 10:00 ~ 03.13.(금) 17:00	
	신혼부부		
	생애최초 신생아 철거민		
일반 공급	1순위자 (서울시 2년 이상 거주)	2026.03.16.(월) 10:00 ~ 17:00	
	1순위자 (서울시 2년 미만 거주, 수도권)	2026.03.17.(화) 10:00 ~ 17:00	
	2순위자	2026.03.18.(수) 10:00 ~ 17:00	
당첨자발표		2026.04.02.(목) 16:00 이후	

2. 신청시 유의사항

- 청약 신청은 인터넷 신청을 원칙으로 하오니 인터넷 청약을 위하여 신청접수일 전에 인증서(공동인증서, 간편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미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 일부 인증서의 경우 시스템점검 또는 오류 등으로 청약기간 중 사용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두 개 이상의 인증서를 준비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팸플릿 등으로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주택형별(개별 주택타입은 선택 불가)로 구분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한 해당 공급유형(특별공급, 일반공급)의 접수일자 마감시간 전까지만 신청내용을 변경(청약 신청 취소 포함)할 수 있습니다.
- 신청접수 시 신청내역에 대해 적합성 등은 검증하지 않으며, 신청자격 적격여부 검증은 당첨자와 그 세대에 속한 분(청년 특별공급 당첨자의 경우 당첨자 및 당첨자의 부모, 신혼부부 특별공급 중 예비신혼부부 당첨자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에 한해 실시합니다.
- 공급유형에 따라 신청일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신청일정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관계법령에 따라 각 공급유형 및 청약순위 신청일에 신청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의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및 청약저축) 순위, 납입인정금액, (당첨자 확정 후)주택소유여부 및 소득·자산기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기관에 필수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므로 청약 접수 완료 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공급 유형에 따라 신청자격이 상이하므로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제반사항을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 신청하여야 하며, 당첨 후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 기간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신청방법

1. PC인터넷 신청 · 모바일 신청

■ PC인터넷 · 모바일 신청방법

- 해당 신청일에 **인증서(공동인증서, 간편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소지하고 **SH 인터넷 청약시스템(www.i-sh.co.kr/app)**에 접속하여 인터넷 신청하시기 바라며, 모바일을 통해 청약할 경우 공동인증서 사용을 위해 인증서를 미리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SH 인터넷 청약시스템의 서비스다운 등으로 인해 신청이 불가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SH 홈페이지(www.i-sh.co.kr)** 또는 **인터넷 청약시스템(www.i-sh.co.kr/app)**에 공지 후 추가 접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 ※ 인증서는 공동인증서 발급기관(금융결제원, 코스콤,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 정보통신)의 공동인증서, 네이버 인증서 등 간편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중 하나를 소지하여야 인터넷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간편인증서 종류 : 카카오톡, KB국민은행, 통신사 PASS, 삼성패스, 네이버, 신한은행, 뱅크샐러드, 하나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토스)
 - ※ **일부 인증서의 경우 시스템점검 또는 오류 등으로 청약기간 중 사용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두 개 이상의 인증서를 준비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청약 당첨자**
SH 인터넷 청약시스템(www.i-sh.co.kr/app) → 시작화면의 마곡지구 17단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신청하기” 클릭 → 인증서(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중 택 1) 로그인 → “사전청약 당첨자” 선택 → 청약신청서 작성 → 청약내용 확인 및 청약완료
- **특별공급(청년, 신혼부부, 생애최초, 신생아, 철거민)**
SH 인터넷 청약시스템(www.i-sh.co.kr/app) → 시작화면의 마곡지구 17단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신청하기” 클릭 → 인증서(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중 택 1) 로그인 → “특별공급” 선택 → 공급구분(청년, 신혼부부, 생애최초, 신생아, 철거민) 및 주택형(59㎡, 84㎡) 선택 → 청약신청서 작성 → 청약내용 확인 및 청약완료
- **일반공급**
SH 인터넷 청약시스템(www.i-sh.co.kr/app) → 시작화면의 마곡지구 17단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신청하기” 클릭 → 인증서(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중 택 1) 로그인 → “일반공급” 선택 → 주택형(59㎡, 84㎡) 선택 → 청약신청서 작성 → 청약내용 확인 및 청약완료
- **신청일자 : (사전청약 당첨자) 2026.03.10.(화) 10:00 ~ 03.11.(수) 17:00, (특별공급) 2026.03.12.(목) 10:00 ~ 03.13.(금) 17:00, (일반공급) 2026.03.16.(월) ~ 03.18.(수) 각 일자별 10:00 ~ 17:00 / 일반공급 순위 및 지역별로 신청일자 상이**
 ※ 신청마감시간까지 청약신청을 완료(제출기준)하여야 하므로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신청하지 마시고, 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신청 시 공급유형별 접수 마감시간 전까지 신청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해당 공급유형의 접수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신청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 할 수 없습니다.

■ PC인터넷 · 모바일 신청 시 유의사항

- **주소 입력시** : 지역구분 선택 지역과 일치하게 주민등록상 주소, 우편번호를 정확하게 입력하여야 합니다.
- **신청접수 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본인의 신청자격(청약통장 가입은행, 신청순위, 해당지역 여부, 세대구성원, 무주택여부 및 기간 등)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에 한해 우리공사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 기간 입주자 선정 제한 등)을 받게 됨을 유념하시고, 본인의 착오 신청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 시 우리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납입인정금액 및 회차는 한국부동산원(www.applyhome.co.kr)에서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는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의 납입인정금액 및 회차를 기준으로 선정하오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납입인정금액 및 회차 조회방법

구 분	조회방법
인터넷 사용 가능 시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접속(www.aplyhome.co.kr) → 청약자격 확인 → 청약통장 순위확인서 → 기타 정보 입력 후 조회
인터넷 사용 불가 시	청약통장 가입은행 방문 →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발급 → 납입인정금액 및 납입인정 회차 확인

-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공급업무가 원활히 진행되지 못할 경우 공급일정 등은 변경 또는 지연될 수 있으며,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SH 홈페이지(www.i-sh.co.kr) 및 인터넷청약시스템(www.i-sh.co.kr/app)을 통해 안내드리겠습니다.



2. 방문 인터넷 대행접수 안내 [대상 : 인터넷 사용 취약자(만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

■ 청약 신청 안내사항

- 청약 신청은 인터넷 신청을 원칙으로 하오며, 방문 인터넷 대행접수는 인터넷 사용 취약자(만 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를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운영하는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급구분별 신청접수일이 다르므로 반드시 해당 접수일에 청약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격별 해당 접수일 이외의 일자에는 접수 불가함)

■ 방문인터넷 대행접수 장소

대행접수 장소	위치	연락처
SH 2층 대강당('26.03.10~03.18)	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621 (지하철 3호선 대청역 하차 8번 출구 연결통로)	1600-3456

- 인터넷 사용 취약자(만 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를 위한 대행접수는 공급유형별 해당 접수기간에만 운영합니다.
- 대행접수는 유형별 접수기간 중 10:00~16:00 내(신청마감시간 1시간 전)에 공사에 도착하신 분에 한해 접수가 가능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방문 인터넷 대행접수 신청방법

- 인터넷 대행접수는 고객님의 알려주시는 정보를 우리공사 직원이 입력하면서 인터넷청약을 진행합니다. 인터넷 대행접수 시 고객님의 현장에서 모든 입력정보를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입력내용 미확인 등으로 부적격 처리될 경우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인터넷 대행접수 변경·취소 시에는 접수장소를 직접 재방문하여 변경·취소하셔야 하니, 신청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행접수 시 구비서류(신청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신청 불가)

- 아래 표의 구비서류 외에 다른 서류는 접수받지 않으며 증빙서류는 당첨자발표 후 당첨자에 한해서 제출받아 확인할 예정입니다.

구분	구 비 서 류	비고
본인 신청 시	①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여권에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여권정보증명서만 가능)만 인정	신청자 구비
	②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 및 초본 ※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관계",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가 반드시 모두 표기되도록 발급 ※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추가 제출	
	③ 도장(서명가능)	
	④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 또는 청약통장 가입 은행에서 발급	
신청 주체별 구비서류	① 위임장(신청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또는 본인(신청자)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신청자 구비
	② 본인(신청자) 인감증명서(본인발급용) 또는 신청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수인인 서명란에 대리인 성명을 반드시 명기)	
	③ 본인(신청자) 인감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 시 불요)	
	④ 본인(신청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여권에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여권정보증명서만 가능)만)	
	⑤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 및 초본 ※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관계",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가 반드시 모두 표기되도록 발급 ※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추가 제출	
	⑥ 본인(신청자)의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 또는 청약통장 가입 은행에서 발급	

7

당첨자 발표, 서류제출 및 계약체결 등

1. 당첨자(예비입주자)발표, 서류제출 및 계약체결 일정

■ 일정 및 장소

당첨자(예비입주자) 발표	당첨자 서류제출(예비입주자는 일정 별도 안내)	계약체결(예비입주자는 일정 별도 안내)
2026.04.02.(목) 16:00 이후	2026.04.06.(월) ~ 04.09.(목) 10:00 ~ 17:00	2026.06.24.(수) ~ 06.26.(금) 10:00 ~ 17:00
	방문 제출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SH 2층 대강당	방문 계약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SH (상세 장소 추후 안내)
당첨자 확인 방법		
인터넷	SH 인터넷 청약시스템(www.i-sh.co.kr/app)→당첨자 조회(인증서 로그인)	
ARS	ARS 전화 연결(1600-3456) → 4번 → 2번 → 주민등록번호#	

- 당첨자는 당첨자 서류제출기한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 시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계약체결기간 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하지 않을 경우 계약포기(당첨자로 관리, 입주자저축 재사용 불가)로 간주됩니다.
- 당첨자 명단은 착오 안내 가능성이 있어 전화문의에는 응답할 수 없으므로 SH 인터넷 청약시스템(www.i-sh.co.kr/app) 또는 ARS(1600-3456)에서 신청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 이후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 당첨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당첨이 취소됩니다. 부적격자는 소명 후 적격자로 인정받은 경우에만 계약 체결이 가능하므로 위 계약체결 일정보다 늦어질 수 있습니다.
- 계약 이후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에도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계약이 취소됩니다.
- 예비입주자의 순번은 당첨자 발표 시 함께 안내하며, 서류제출 및 계약체결 일정은 잔여세대가 있을 경우 순번에 따라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청약 시 기재된 연락처로 안내하므로, 연락처가 변경되거나 잘못 기재하신 분은 수정할 연락처(주소, 휴대전화 번호)를 우리 공사에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합니다. 연락처를 변경하지 않을 경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우리 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불가피한 사유로 위 일정 또는 장소 등에 변동이 생길 경우, 당첨자를 대상으로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2. 당첨자(예비입주자) 제출서류

■ 공통 안내사항

- 당첨자는 서류제출 기한(2026.04.06.~04.09)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서류제출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 포기(당첨자로 관리, 입주자저축 재사용 불가)로 간주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예비입주자의 서류제출 일정은 잔여세대가 있을 경우 순번에 따라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 모든 제출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2.27.)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위·변조된 서류 등을 제출할 경우, 「주택법」 제65조(공급질서 교란)으로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입주자격이 제한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당첨자 제출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합니다. 부적격 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소명자료 제출관련 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 제출자로 간주하며(직계 존·비속 포함), 대리 제출자는 위임장, 본인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 당첨자의 배우자가 재외국민인 경우 주민등록표등본,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외국인등록증(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된 서류의 주민등록번호, 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는 입주자 자격을 심사할 수 있는 유효한 번호여야 하며, 미제출로 인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신청자의 배우자)의 외국인 직계존비속의 경우 소득, 자산 및 주택소유여부의 검증대상에 포함 됩니다.
- 제출하신 서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4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6개월간, 입주자로 선정 된 경우 접수일로부터 5년동안 보관한 뒤에 해당 기간이 경과하고 나면 폐기합니다.
-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고문에 표기된 서류 외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사전청약 당첨자 제출서류

*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2.27.)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주민등록번호 별표(*) 처리 없이 전체 표기되도록 발급

서류 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		① 당첨자 본인 신분증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2020.12.21. 이후 발급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인정 ※ 전자신분증의 경우 사본 발급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실물 신분증 지참
○		② 당첨자 청약서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 홈페이지(www.i-sh.co.kr) → SH소식 → 공고 및 공지 → 주택분양 → '마곡지구 17단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당첨자 발표'에 게시될 양식 또는 서류 제출 장소 현장에 비치된 청약서를 작성하여 본인 서명 후 제출
○		③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전부 포함하여 발급
○	○		배우자 및 세대구성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첨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 공고일 이후 '공고일 현재 세대주'와 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공고일 당시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동의서	본인 및 세대구성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 홈페이지(www.i-sh.co.kr) → SH소식 → 공고 및 공지 → 주택분양 → '마곡지구 17단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당첨자 발표'에 게시될 양식을 미리 작성하여 본인 및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한 후 제출하여야 하며,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자격 심사가 불가하여 계약 불가함 • 당첨자 및 세대구성원 전원(주민등록표등본 상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 14세 이상의 세대구성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		⑤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드시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성명/관계 등을 전부 포함하여 발급
○	○		배우자 및 세대구성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고일 이후 '공고일 현재 세대주'와 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공고일 당시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표초본 제출(상기 초본 발급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		⑥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첨자의 배우자가 없거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제출 ※ 반드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	⑦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또는 세대원 나이 증빙서류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 시 최하층 우선배정을 신청하신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이 장애인(장애인 등록증 제출) 또는 65세 이상 노약자(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제출)임을 증빙하고자 하는 경우 제출
○		⑧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1961.1.1 이전 출생의 경우 1961.1.1으로 지정) ~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2.27.)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발급(개명했을 경우, 개명 전후 모두 발급)

■ 특별공급(청년·신혼부부·생애최초·신생아·철거민) 당첨자 제출서류

*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2.27.)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주민등록번호 별표(*) 처리 없이 전체 표기되도록 발급

구분	서류 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동 서류	○		① 당첨자 본인 신분증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2020.12.21. 이후 발급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인정 ※ 전자신분증의 경우 사본 발급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실물 신분증 지참
	○		② 당첨자 약약서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 홈페이지(www.i-sh.co.kr) → SH소식 → 공고 및 공지 → 주택분양 → '마곡지구 17단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당첨자 발표'에 게시될 양식 또는 서류 제출 장소 현장에 비치된 약약서를 작성하여 본인 서명 후 제출
	○		③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사유, 세대구성사유, 세대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전부 포함하여 발급
		○		(예비)배우자 및 세대구성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첨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공고일 이후 '공고일 현재 세대주'와 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공고일 당시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동의서	본인 및 세대구성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 홈페이지(www.i-sh.co.kr) → SH소식 → 공고 및 공지 → 주택분양 → '마곡지구 17단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당첨자 발표'에 게시될 동의서를 미리 작성하여 본인 및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적격심사가 불가하여 계약 불가함 당첨자 및 세대구성원 전원(주민등록표등본 상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청년 특별공급으로 청약한 경우) 신청자 본인 및 부모 (예비신혼부부로 청약한 경우) 예비배우자 및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원 만14세 이상의 세대구성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		⑤ 금융정보 등 (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본인 및 세대구성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 홈페이지(www.i-sh.co.kr) → SH소식 → 공고 및 공지 → 주택분양 → '마곡지구 17단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당첨자 발표'에 게시될 동의서를 미리 작성하여 본인 및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적격심사가 불가하여 계약이 불가 당첨자 및 세대구성원 전원(주민등록표등본 상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청년 특별공급으로 청약한 경우) 신청자 본인 및 부모 (예비신혼부부로 청약한 경우) 예비배우자 및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원 만14세 이상의 세대구성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		⑥ 자산 보유 사실확인서	본인 및 세대구성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 홈페이지(www.i-sh.co.kr) → SH소식 → 공고 및 공지 → 주택분양 → '마곡지구 17단지 토지임대부 주택분양 당첨자 발표'에 게시될 해당 자산 보유 사실확인서에 아래 내용 작성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함 당첨자 및 세대구성원 전원(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청년 특별공급으로 청약한 경우) 신청자 본인 및 부모 (예비신혼부부로 청약한 경우) 예비배우자 및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원 * 임차보증금 및 임대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표시 되어야 함) (우리공사 임대주택의 임차보증금일 경우, 계약사실확인원 제출) * 분양권 : 분양계약서 사본 및 분양대금 납부확인원 * 비상장주식 : 증권사 조회내역, 주식보관증 등 종목, 수량 및 가액을 증명 할 수 있는 자료 * 출자금/출자지분 : 출자증서 사본 ※ 신고 누락된 자산이 추후 확인되어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계약 취소 처리될 수 있음 	



구분	서류 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 서류	○		⑦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 (초본발급 유의사항) 반드시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 사항, 세대구성명/관계 등을 전부 포함하여 발급
		○		(예비)배우자 및 세대구성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고일 이후 '공고일 현재 세대주'와 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공고일 당시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표초본 제출(상기 초본 발급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예비신혼부부로 청약한 경우) 예비배우자 및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원
	○		⑧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첨자의 배우자가 없거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관련] '23.3.28. 이후 출생한 자녀(입양 포함)가 있어 소득·자산기준 완화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출산특례 관련] '24.6.19. 이후 출생한 자녀(입양 포함)가 있어 출산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 반드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⑨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또는 세대원 나이 증빙서류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약 시 최하층 우선배정을 신청하신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이 장애인(장애인 등록증) 또는 65세 이상 노약자(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등)임을 증빙하고자 하는 경우
		○	⑩ 재직증명서(복무확인서)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분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자격으로 신청한 경우
		○	⑪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생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관련] 현재 임신중으로, 공고일부터 1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관련] '23.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어 소득·자산기준 완화를 적용받고자 하나, 아직 출생신고 전인 경우 출생증명서 ※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담당의사명·면허번호·의료기관등록번호·질병분류기호·출산예정일·의료기관 연락처·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이어야 함
		○	⑫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당첨자가 해당 사실을 입주 시 재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주체에게 관련 서류 제출을 확약(SH에서 제공하는 양식)
		○	⑬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양의 경우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관련] '23.03.28. 이후 출생 자녀를 입양한 사실을 인정받으려고 하는 경우
		○	⑭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본인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발급(개명했을 경우, 개명 전후 모두 발급) ●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1961.1.1 이전 출생의 경우 1961.1.1으로 지정) ~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2.27.)로, 출입국기록 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⑮ 국내거소신고증 및 외국인등록증	(예비)배우자, 세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첨자의 배우자 및 세대원이 외국인인 경우
	○	⑯ 기존주택 처분 관련 서약서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출산특례 관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2항제4호에 따른 서약서 	
청년 특별공급	○	①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아래 <표14> 참고)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첨자 본인의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표14>의 서류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의 최대 5개년도 서류 	
	○	②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님을 확인하기 위해 '상세'로 발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	①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모두 제출 신혼부부로서 혼인신고일 확인 시 필요하며, 동일 배우자와의 혼인합산 기간을 파악하기 위해 '상세'로 발급 예비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으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현재 혼인 중이 아님을 확인하기 위해 '상세'로 발급 ※ 예비신혼부부는 입주 시 혼인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사업시행자 요청 시 다시 제출해야 함	
	○		예비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비신혼부부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현재 혼인 중이 아님을 확인하기 위해 '상세'로 발급 	
	○	②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부모가족으로 신청하였으나, 가족관계증명서 상 배우자가 있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구분	서류 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생애최초 특별공급		○	① 주민등록표초본	직계존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첨자의 직계존속이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당첨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 하였음을 확인하여,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1년 이상의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		②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혼인 전 재당첨, 주택소유사실 여부 확인
		○		자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닌 분이 동일 등본상 만18세 이상인 자녀를 '미혼인 자녀'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 반드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③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아래 <표14> 참고)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첨자 본인의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표14>의 서류로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전의 5개년도 서류
신생아 특별공급	○		① 아동수당·부모급여 수령내역	본인 (또는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양육사실 증빙) 해당 급여를 사회보장급여 결정통지서 상 급여개시일로부터 수령하고 있는지 확인 ※ 급여수령내역 또는 거래내역 등 발급 시 본인 또는 배우자의 계좌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 (계좌번호, 생년월일, 발급일자, 발급번호, 입금자명 등) 포함. 단순열람용 서류 또는 캡처본 불인정 ※ 조회기간을 자녀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로 설정하여 발급
	○		② 사회보장급여 결정통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양육사실 증빙) 아동수당 및 부모급여 지급대상자 여부 확인
	○		③ 통장사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양육사실 증빙) 급여 수령 내역 확인 	
		○	④ 출생증명서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2세 미만 자녀를 둔 사실을 증빙하고자 하나, 출생 신고 전인 경우
		○	⑤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2세 미만 자녀(입양 포함) 증빙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자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발급
		○	⑥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혼인 전 당첨 여부 확인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발급

<표14> 청년 특별공급 우선공급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자격 및 소득세납부 입증 제출서류

서류구분	확인자격	증빙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과거 1년 내에 소득세 납부자) 입증서류	근로자	① 재직증명서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① 해당직장/세무서 ② 건강보험공단
	자영업자	① 사업자등록증명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 분으로 공고일 기준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분	①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납부내역증명 포함) (공고일 기준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분에 한함)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세 납부 기간 입증서류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 (근로자, 자영업자,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분으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자)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명서류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중 하나 ① 소득금액증명(근로자용 또는 종합소득세신고자용), 납부내역증명서(종합소득세 납부자), 납세증명서 ②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③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일용근로자용 소득금액증명 및 납세사실증명	① 세무서 ② 해당직장 ③ 해당직장/세무서



■ 일반공급 당첨자 제출서류

*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2.27.)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주민등록번호 별표(*) 처리 없이 전체 표기되도록 발급

서류 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		① 당첨자 본인 신분증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2020.12.21. 이후 발급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인정 ※ 전자신분증의 경우 사본 발급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실물 신분증 지참
○		② 당첨자 약약서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 홈페이지(www.i-sh.co.kr) → SH소식 → 공고 및 공지 → 주택분양 → ‘마곡지구 17단지 토지임대부 주택분양 당첨자 발표’에 게시될 양식 또는 서류 제출 장소 현장에 비치된 약약서를 작성하여 본인 서명 후 제출
○		③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의원의 전입일/변동일사유, 세대구성사유, 세대의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전부 포함하여 발급
	○		배우자 및 세대구성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첨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공고일 이후 ‘공고일 현재 세대주’와 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공고일 당시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동의서	본인 및 세대구성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 홈페이지(www.i-sh.co.kr) → SH소식 → 공고 및 공지 → 주택분양 → ‘마곡지구 17단지 토지임대부 주택분양 당첨자 발표’에 게시될 동의서를 미리 작성하여 본인 및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적격심사가 불가하여 계약 불가함 당첨자 및 세대구성원 전원(주민등록표등본 상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만14세 이상의 세대구성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		⑤ 금융정보 등 (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본인 및 세대구성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 홈페이지(www.i-sh.co.kr) → SH소식 → 공고 및 공지 → 주택분양 → ‘마곡지구 17단지 토지임대부 주택분양 당첨자 발표’에 게시될 동의서를 미리 작성하여 본인 및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적격심사가 불가하여 계약 불가함 당첨자 및 세대구성원 전원(주민등록표등본 상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만14세 이상의 세대구성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		⑥ 자산 보유 사실확인서	본인 및 세대구성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 홈페이지(www.i-sh.co.kr) → SH소식 → 공고 및 공지 → 주택분양 → ‘마곡지구 17단지 토지임대부 주택분양 당첨자 발표’에 게시될 해당 자산 보유 사실확인서에 아래 내용 작성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함 당첨자 및 세대구성원 전원(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청년 특별공급으로 청약한 경우) 신청자 본인 및 부모 (예비신혼부부로 청약한 경우) 예비배우자 및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원 * 임차보증금 및 임대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사본 (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우리공사 임대주택의 임차보증금일 경우, 계약사실확인원 제출) * 분양권 : 분양계약서 사본 및 분양대금 납부확인원 * 비상장주식 : 증권사 조회내역, 주식보관증 등 종목, 수량 및 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출자금/출자지분 : 출자증서 사본 ※ 신고 누락된 자산이 추후 확인되어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계약 취소 처리될 수 있음
○		⑦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본발급 유의사항) 반드시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 성명/관계 등을 전부 포함하여 발급
	○		(예비)배우자 및 세대구성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고일 이후 ‘공고일 현재 세대주’와 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공고일 당시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표초본 제출(상기 초본 발급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예비신혼부부로 청약한 경우) 예비배우자 및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원

서류 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		⑧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첨자의 배우자가 없거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신생아 우선공급] 2세 미만 자녀(입양 포함) 증빙 •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관련] '23.3.28. 이후 출생한 자녀(입양 포함)가 있어 소득·자산기준 완화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발급
	○	⑨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세 이전에 혼인하여 '공고일 현재 3년 이상의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할 경우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발급
	○	⑩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또는 세대원 나이 증빙서류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 시 최하층 우선배정을 신청하신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이 장애인(장애인 등록증) 또는 65세 이상 노약자(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등)임을 증빙하고자 하는 경우
	○	⑪ 재직증명서(복무확인서)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분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자격으로 신청한 경우
	○	⑫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생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신생아 우선공급,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관련] 현재 임신중으로, 공고일부터 1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 [신생아 우선공급,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관련] 2세 미만 자녀 또는 '23.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어 소득·자산기준 완화 적용 받고자 하나, 아직 출생신고 전인 경우 출생증명서 ※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담당의사명·면허번호·의료기관등록번호·질병분류기호·출산예정일·의료기관 연락처·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이어야 함
	○	⑬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생아 우선공급,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관련]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당첨자가 해당 사실을 입주 시 재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주체에게 관련 서류 제출을 확약(SH에서 제공하는 양식)
	○	⑭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양의 경우 • [신생아 우선공급,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관련] 2세 미만 자녀 또는 '23.03.28. 이후 출생 자녀를 입양한 사실을 인정받으려고 하는 경우
	○	⑮ 아동수당·부모급여 수령내역	본인 (또는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생아 우선공급 관련] 해당 급여를 사회보장급여 결정통지서 상 급여개시일부터 수령하고 있는지 확인 ※ 급여수령내역 또는 거래내역 등 발급 시 본인 또는 배우자의 계좌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 (계좌번호, 생년월일, 발급일자, 발급번호, 입금자명 등) 포함. 단순열람용 서류 또는 캡처본 불인정 ※ 조회기간을 자녀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로 설정하여 발급
	○	⑯ 사회보장급여 결정통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생아 우선공급 관련] 아동수당 및 부모급여 지급대상자 여부 등 양육사실 확인
	○	⑰ 통장사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생아 우선공급 관련] 급여 수령 내역 확인
	○	⑱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발급(개명했을 경우, 개명 전후 모두 발급) •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1961.1.1 이전 출생의 경우 1961.1.1으로 지정) ~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2.27.)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⑲ 국내거소신고증 및 외국인등록증	(예비)배우자, 세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첨자의 배우자 및 세대원이 외국인인 경우



3. 계약 시 구비서류

■ 아래의 계약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2.27.)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계약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계약이 불가합니다.

구 분	계약서류	
본인 계약 시	① 계약금 입금 확인서류 원본 (현장수납 불가) * 주택공급금액 10% + 발코니확장비용 계약금 확인 후 입금 바랍니다.	
	② 당첨자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20.12.21.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인정 * 전자신분증의 경우 사본발급이 불가하여, 실물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	
	③ 도장 (본인 서명도 가능)	
	④ 주택취득 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양식 다운로드 : SH 홈페이지-고객센터-자료실-SH 자료실)	
제3자 대리계약 시 추가서류	본인 외에는 모두 대리계약자로 간주되며, 위 '본인 계약 시 계약서류'와 함께 아래 서류를 추가 제출	
	인감증명 방식	서명확인 방식
	① 위임장(계약 장소에 비치) ※ 인감도장 날인 필수	① 본인(계약자)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 ※ '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 양식 다운로드 : SH 홈페이지-고객센터-자료실-SH 자료실)
	② 당첨자의 본인발급용 인감증명서(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및 인감도장(위임장에 직접 날인하려는 경우) ※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원본)의 경우 발급용도 및 제출처 확인 후 발급(발급용도(직접 작성) : 주택계약, 제출처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② 본인(계약자)서명사실확인서(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및 본인(계약자)의 도장
③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 '20.12.21.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인정 * 전자신분증의 경우 사본발급이 불가하여, 실물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	③ 대리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 '20.12.21.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인정 * 전자신분증의 경우 사본발급이 불가하여, 실물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	

※ 위 구비서류에 변동이 생길 수 있으며, 향후 당첨자를 대상으로 계약체결 전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4. 입주자(계약자) 사전점검 방문 및 입주 안내

■ 사전점검 방문 및 입주 일정

사전점검 방문일(예정)	입주기간(예정)
2026.07.11.(토) ~ 07.12.(일)	2026.08.28.(금) ~ 10.26.(월) [60일]

※ 상기 일정은 준공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추후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 입주지원센터는 입주 개시 3일 전, 관리사무소는 입주 개시 14일 전에 개소하며, 상세내용은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8 기타 유의사항 및 안내사항

1. 청약 및 당첨 관련 유의사항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공공주택 입주예약자 업무처리 지침」 등 관계법령에 따르며, 공고 이외에 주택공급 신청자가 주택공급 신청 시 알아야 할 사항은 공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상담 및 방문고객 청약상담 등은 청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상담내용에 대해 공고문 및 관련법령을 통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첨자는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사실이 한국부동산원에 통보됨에 따라 **당첨자로 전산관리 됩니다.**
- **입주자저축을 사용한 당첨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7조에 따라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입주자저축 효력이 상실되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예비입주자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다만,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동·호수 배정의 추첨 참가 의사를 표시한 후 동·호수를 배정받게 되면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아도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하며, 모든 책임은 당첨자에게 있습니다.**
- **당첨 발표 후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주택소유, 과거 당첨사실, 소득·자산기준 초과 등 부적격자로 안내된 분은 안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 소명기간(우리 공사가 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내에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부적격 당첨자로 당첨이 취소되며,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 선정 제한 등))**를 받게 됩니다.
- 공급 신청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급 신청 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으므로 신청접수 시 실제 자격과 주택공급신청서에 기재된 내용과의 일치여부를 반드시 대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및 지구여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단지 및 지구여건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단지 및 세대의 시설물 등에 대한 추가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2. 계약 및 입주 관련 유의사항

- 계약체결 후 해제하는 경우 계약서에 따라 위약금(총 입주금의 10%)을 공제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부동산 실거래 신고 대상**이 되며,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우리 공사가 관할 지자체에 단독 신고합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투기과열지구에 속한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이 의무**입니다. 따라서 계약체결 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서류(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증빙자료 포함)를 사업주체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해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법」 제48조의2에 따라 입주 전에 **입주자의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지정일(입주자 사전방문 등) 외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 입주 예정시기는 건축공정 등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개별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 당첨 이후 주소 및 연락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내용을 우리 공사로 서면 통보하시기 바라며, 변경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당첨자의 책임입니다.

3. 벌칙 등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법령 위반, 입주자저축 등을 타인 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분의 입주자저축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신청 및 계약하는 등의 공급질서 교란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취소 및 고발 조치하며, 부정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본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법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4.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안내

■ 장애인 편의증진을 위해 최초 계약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체장애인과 뇌병변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및 다목의 상이등급 3급 이상의 장애인이 있는 경우 계약 시 신청자에 한하여 장애 유형에 따라 아래 편의시설을 무료로 설치해드립니다.

구분	설치사항	
장애인 편의시설	공용욕실	좌변기 안전손잡이(좌변기 벽면에 안전손잡이 1개 설치)

※ 현장 여건에 따라 설치가 제한될 수 있음

※ 신청 즉시 설치가 시작되므로, 신청 후 취소나 변경이 절대 불가함

※ 준공 시까지 설치기간이 촉박하여, 입주자 사전점검 시 해당 부문의 시공이 진행 중일 수 있음

구분	내용
신청시기	현장 계약체결기간(2026.06.24. ~ 06.26.) 내 신청 필요
구비서류	① 신청자격 증명서류(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 국가공공자증, 보호보상대상자증, 지원대상자확인원 등) 1부 ② 부양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 ※ 신청서는 계약 장소에 비치

5. 지구·주변 및 단지 여건, 기타 유의사항 후

■ 지구 및 주변 여건

- 단지 인근에 김포공항이 위치하고 있어 항공기 소음 및 전파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며, 북동쪽에 위치한 서남물재생센터에서 여름철에 악취가 다소 발생할 수 있고, 남쪽에 위치한 강서농수산물도매시장로 인해 악취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수분양자 및 입주자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본 단지는 준주거지역에 위치하는 복합건축물(주택 + 판매시설 등)로 공향대로(광로)에 면하고 있음에 따라 도로변 차량소음이 심할 수 있고, 방음벽 설치 등 소음저감시설 설치계획이 없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마곡지구 내 도로, 상·하수도, 공원 및 녹지 등 각종 기반시설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제반여건 변동에 따라 당초 추진계획이 지연 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유소, 가스충전소, 주차장, 택시차고지, 전기공급설비, 열공급설비, 공동구(환기구 등 지상구조물 포함) 등 대상부지 인근 시설물 계획을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라며, 수분양자 및 입주자의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단지의 경계펜스는 지역 규정, 지구단위계획 지침 및 인허가 조건에 따라 설치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단지 외부시설(도로시설물/가로시설물/횡단보도 등)은 인·허가 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위치 및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주시점에 방화대로 등 일부 도로 조성이 완료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으며,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마곡도시개발사업 여건 변화 및 민원 해소 등을 위해 토지이용계획을 비롯한 개발계획, 실시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환경영향평가 등이 변경될 수 있고, 수분양자는 이에 대하여 수인하며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관련 도서 및 상세도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마곡도시개발 홈페이지(<https://www.i-sh.co.kr/magok/index.do>) 및 마곡위례사업부(☎02-3410-7682)에서 열람 가능
- 본 공동주택 인근 방화대로 개설공사, 서울~광명간 고속도로 사업은 이미 결정되어 추진 중인 사항으로 입주자는 이를 수인하며,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노선, 위치 변경 등) 등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토지 지적정리,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는 마곡도시개발사업이 준공된 후 가능하며, 준공일은 사업 추진 여건 변화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고일 현재 기준 준공예정일 : 2026.12.31.(예정)
- 대지경계 및 면적은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고, 이에 따라 지적공부 확정 시 공유대지 지분은 약간의 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외 기반시설(방화대로, 도로, 공원 등)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의 시공범위가 아니며, 세부사항은 해당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여야 합니다.
- 올림픽대로 연결도로 및 잠실방향 램프설치 공사는 서남물재생센터 현대화사업과 병행하여 추진되어야 하는 관계로 선행공종(서남물재생센터 현대화사업) 및 사업여건으로 인해 연결도로 및 램프설치 공사는 지연될 수 있고 수분양자는 이에 대하여 수인하며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부지 내 지장물 이설, 기반시설 설치 공사 등으로 인해 본 사업의 기간이 변경될 수 있으며, 수분양자는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사업지 인접 군부대 이전지(舊17사단 101연대)는 군부대 고유의 사업으로, 추후 군부대에서 별도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 사업지에 면하는 군부대 이전지 일부에 방화대로 도로설치공사가 실시될 예정으로, 인허가 등의 사유로 기반시설공사(방화대로 잔여구간 도로설치공사)가 순연될 수 있고, 본 공사로 인해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주자 고려사항으로 사전 고지된 내용이 일부 누락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청약 전에 반드시 당해 지구·단지를 방문 또는 관계기관에 문의하시어 소음, 조망, 일조, 도로, 환경 저해, 주변 혐오시설 유무 등 단지 및 주변 여건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단지 및 주변 여건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학교이용 안내

학교	학교명	위치	관할교육청	연락처
초등학교	공진초	강서구 마곡서로 33	서울특별시 강서양천교육지원청	02-2600-0996
중학교	강서양천1학교군	-		02-2600-0915

- ※ 입주시기의 학생수 및 학교의 수용여건에 따라 배정학교는 변동될 수 있으므로 입주 전 관할 교육지원청에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특히 중학교 배정은 당해 연도의 학생 수 및 학교수용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학생배치계획에 따라 대중교통 30분 이내 중학교로 전산 배정됨을 알려드립니다(향후 수용 여건에 따라 공항중, 마곡하늬중, 송정중 등으로 분산 배치될 수 있음).

■ 각종 간선시설, 기반시설 등 설치현황

단지	설치현황	비고
마곡도시개발사업구역 3공구	인접 도로 및 교통안전시설물 등 기반시설 설치(예정)	-

■ 공통사항

- 단지계획(건축, 기계, 전기, 통신, 소방, 조경 등)은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종 조감도, 단위세대 평면도 등은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인쇄 및 편집 과정에 일부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조감도에는 없는 문주(門柱)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 동일한 단지 내에 분양세대와 임대세대가 혼합된 소셜믹스 단지이며, 특정 동은 분양세대와 임대세대가 같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주차시설은 지하1~2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상에는 도로가 없고 보행로가 있습니다. [단, 비상차량(소방차 등), 이삿짐차량, 쓰레기 수거 차량만 사용가능, 택배차량 및 개인차량 사용 불가]
-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의 주차공간은 구분되나, 차량 주출입구는 동일합니다. [단, 주차 차단기는 별도 설치됩니다.]
- 비상차량(소방차 등)에 한하여 1704동, 1705동 사이로 있는 방화대로 진출입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발코니 빨래건조대는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수분양자가 직접 설치하여야 합니다.
- 아파트 저층부 석재는 국내 고품석으로, 색상이 원석에 따라 이색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사항에 따라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이 있으며, 관련 주차공간이 지하1층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 공동주택의 특성상 입주자의 거주방식에 따라 층간, 세대 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기준층은 철근콘크리트 무량판(중공슬래브)구조로, 내부에 기둥과 마감이 돌출될 수 있으며, 발코니에 설치되는 기둥의 위치는 동일 타입이라도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일부 세대의 경우 대지의 녹지 공간 확보로 사다리차 접근이 어려워 이삿짐 운반 시 후면 창 또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수 있으며, 전, 후면 보차도를 이용 시 관리사무소와 협의가 필요합니다.
- 주변 인접 단지로는 마곡엠밸리10단지과 마곡13단지힐스테이트마스터아파트가 있으며 이에 따라 일부 세대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등으로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옥상(지붕층 등)에는 태양광 발전설비(신재생에너지), TV공청안테나, 위성안테나, 피뢰침 설비 등이 설치될 예정이며, 이로 인한 미관 저해 및 소음이 일부 세대에 전달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진입의 유효높이는 약 2.7m로 탑차 및 이삿짐 사다리 차량 등의 출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발코니에 우수흡통 및 배수관이 노출되어 우기 시 배수소음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지역난방 방식이므로 개별난방에 비하여 세대 난방공급 온도가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실내온도 유지를 위한 난방 지속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 영구배수공법에 따른 배수펌프 가동 시 저층세대에 소음,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지하수위 관련 구조물 부력방지를 위해 영구배수공법이 적용되어 있어 「서울특별시 하수도 이용 조례」에 따라 하수도 사용료 및 전기료 등 유지 관리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 부대복리시설 및 공용부의 냉난방, 급수, 급탕, 전력, 조경용수, 동파방지열선, 결로방지 에어컨, 배수펌프, 환기 장치사용으로 공용 전기료, 수도료, 지역난방요금 등이 관리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환기 및 결로방지를 위해 송풍기 가동이 필요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전기료 등 유지관리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 계량기(전기, 급수, 급탕, 난방, 가스)는 원격식 검침방식입니다.
- 비주거시설, 근린생활, 부대시설 및 판매시설 상부, 지붕층에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상부에 위치한 동의 일부 세대에 소음, 시각적 프라이버시 침해, 냄새 등의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 안방(벽걸이형 설치기준) 및 거실(스탠드형 설치기준)에 에어컨 매립배관이 설치되어 있으며 평형별로 에어컨 배관이 다르게 설치될 수 있고 에어컨 실외기 소음이 내부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 지정된 실외기실에 실외기를 설치해야 하고(발코니 외부에는 설치공간을 제공하지 않음), 에어컨 실외기 작동 시 그릴창호를 개방 후 사용해야 합니다. 소음이나 진동이 세대 내부로 전달될 수 있고, 조망권, 일조권 등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입주 시 실측을 통하여 실외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 실외기실에는 환기설비장치 및 배관의 설치로 미관을 해칠 우려가 있으며 장비 가동 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단위세대 타입 별로 환기설비가 설치된 실외기실 위치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주방 및 욕실환기를 위한 공동연도를 사용하므로 이웃세대의 렌지후드/환기팬 가동으로 인한 냄새 및 소음이 세대 내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기계실 및 각 동 지하에는 아파트의 급수, 급탕, 난방 및 배수를 위한 장비가 설치되어 있으며, 장비 가동 시 발생한 소음이 저층부 세대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 결로방지를 위하여 지하2층 엘리베이터 홀에 설치된 제습장치로 인해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입주민은 장비 가동에 의한 전기료 등 유지 관리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 세대 싱크대 하부장에 온수분배기, 음식물 탈수기 설치로 실제 사용 공간이 다소 협소할 수 있으며, 난방 가동 시 온수분배기에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급수, 급탕분배기는 화장실 천장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 부대시설(주민공동시설, 지하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관리사무소 등)에는 주민공동을 위한 드라이 에어리어(지하 채광·환기창)가 설치되며, 일부 드라이 에어리어는 아파트 건물에 매립되어 이와 인접한 일부 세대는 소음 등에 따라 생활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판매시설 상부에 주방 배기팬 및 탈취기 설치로 인근 세대에 소음, 시각적 프라이버시 침해, 냄새 등의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부 세대 간벽 및 외벽에 면하는 침실의 콘센트는 결로현상 및 소음 전달 방지를 위해 다른 세대와 위치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아파트 계단실 창은 4개층 당 1개소(3개소 고정창)로 환기를 위한 개폐가 가능합니다.
- 세대 내·외 방법창은 설치되지 않으며, 설치를 원하는 세대는 개별적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 지상에 재활용보관소가 위치하고 있어 일부 인접세대의 경우 냄새, 미관 저해 등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며, 겨울철에는 수전 동파방지를 위하여 사용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승강기 제어반은 최상층 엘리베이터 승강로 근처에 설치되어 있어 야간에 승강기 작동으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거실, 침실2, 침실3: 이중창 외창 하부에 고정창(유리난간)이 설치되어 열리지 않으며 상부만 개폐 가능합니다.
- 세대 싱크대 상·하부장 및 불박이장(드레스장, 신발장) 뒷면과 바닥에는 합판마루, 타일, 몰딩, 걸레받이, 도배 등 마감재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발코니는 비난방구역으로 발코니에 설치된 수전류, 배수배관, 배수트랩(Trap)은 겨울철 동결 및 동파 우려가 있으므로 창문 및 실외기 그릴을 닫고 보온조치를 하는 등 동파에 대한 입주자의 관리가 필요합니다.
- 세탁기 설치 시 발코니 출입문이 협소하여 탈착 후 설치해야 하므로 다소 불편할 수 있습니다.
- 84A 타입 다용도실 벽체는 건식벽체 마감으로 시공되어 물침소로 인한 과도한 물 튀김으로 누수 및 곰팡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물 튀김을 최소화하여야 합니다.
- 부부욕실 내 샤워부스는 유리문이 없이 일부 파티션이 설치되며, 출입 시 수건걸이 등에 간섭을 받을 수 있으니 각별한 유의가 필요합니다.
- 주방가구 하부장 상판은 엔지니어드스톤이며 길이로 인한 온장 시공(자재를 자르지 않고 원래의 크기 그대로 사용하여 붙이는 방식)이 불가하여 이음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층 계절창고는 한정된 공간으로 인해 세대당 1개씩 배정이 불가하고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1701동, 1710동 사이에 설치되는 문주(門柱)로 인하여 일부 세대는 조망이 제한될 수도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면상 돌출세대 지붕에서 비둘기 울음소리 또는 배설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공공보행통로는 지구단위계획상 결정된 보행통로로 대중에 개방하여야 하며, 아파트 주민뿐만 아니라 공공의 보행자들도 통행할 수 있습니다.
- 보행로 또는 단지 내에 기반시설 공급을 위한 전기, 통신, 수도, 가스, 지역난방 맨홀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각 동 주변에는 지하주차장, 제연팬룸(화재 발생 시 발생하는 연기를 제어하기 위한 제연설비(송풍기 등)가 설치된 전용공간, 지하 시설물 환기시설이 설치되며 이로 인한 통행, 소음, 냄새, 미세한 진동 및 기류에 의한 사생활 및 환경권이 침해당할 수 있습니다.
- 실외기는 개구부 구조물 높이에 따른 원활한 환기 및 과열 화재 예방을 위하여 설치 시 하부에 개구부 높이에 따라 별도의 받침대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 욕실 환기 장치 가동으로 인한 개인별 민감도에 따라 소음 체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욕실 천장은 욕실문 닫힘 시 압력으로 천장재 움직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최상층 세대는 우천, 강풍 시 무동력 흡출기 바람 유입 및 빗소리로 인하여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방충망은 일반용 구조로서 충격이나 물리적 힘에 탈락할 수 있으니, 강제로 방충망을 밀거나 몸으로 지지하면 탈락할 수 있습니다.
- 계단실 방화문은 화재 확산 및 연기 확산 방지를 위해 항상 닫힘구조로 되어 있으며, 차압으로 인해 적은 힘으로는 개폐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주방가구 하부장 하부, 아일랜드장 하부에 먼지 발생 방지 페인트가 도색되어 있습니다.
- 발코니는 마감 품질 향상을 위해 일부 구배 및 높이 최소화로 화분이나 물청소 시 내부로 물이 유입될 수 있으므로 물이 유입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리가 필요합니다.
- 발코니, 실외기실, 대피공간 등은 복합단열재 벽체로 시공되었으나, 세대별 난방 정도와 환기 미흡으로 인한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팬트리룸(주방 옆에 위치하는 소규모 식료품 저장고), 드레스룸은 외부 창호가 없으므로 환기가 어려워 결로로 인한 곰팡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는 승하강, 바람 유입 등으로 인해 운행 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거실, 침실2, 침실3: 이중창 외창은 상부 창호 자중으로 인해 중간바에 의한 외부 조망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탐차 진입은 제한높이로 인해 일부 탐차의 진입이 제한됩니다.
- 무인택배 보관함은 냉동기능이 없습니다.
- 옥상(고층, 저층)은 태양광 시설, 조경플랜트 등으로 인해 배수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수시로 배수드레인에 낙엽, 쓰레기 등이 쌓이지 않도록 청소 유지관리가 필요합니다.
- 일부 옥탑 지붕은 높이가 낮아 별도의 사다리가 설치되지 않으니 유지관리가 필요할 경우 별도의 사다리로 이동해야 합니다.
- 옥상 출입문은 항공기 고도 제한에 의한 높이 제한으로 인해 일부 동에는 외부 출입문 크기가 작게 설치되어 원활한 출입이 다소 어려울 수 있으며, 옥상 출입공간은 키 높이로 인해 머리 부딪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지하1층 바닥은 구조체의 진동, 충격에 의한 콘크리트 바닥 균열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지하2층 슬래브 누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하1층 물청소나 차량 물 유입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합니다.
- 판매시설 옥상은 플랜트로 구성되어 있어 휴게공간이 없으므로 외부 출입자의 제한이 필요합니다.
- 단지 부대시설은 시설 편의성을 고려하여 당초 설계의도와 다르게 내부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배치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저층세대의 경우 단지 내 공공장소인 휴게공간과 필로티, 유아놀이터, 어린이 놀이터, 관리사무소 및 경로당, 부속정원, 보행로, 운동시설, 주민공동 시설, 공공보행통로 등의 설치로 인접세대에 생활 소음피해, 실내투시로 인한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경계에는 별도의 담장을 설치하지 않고 관목 및 교목 등 수목을 식재합니다.
- 어린이놀이터기구, 운동기구 등 조경시설물은 현장 여건 및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주자 고려사항으로 사전 고지된 내용이 일부 누락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청약 전에 당해 지구를 반드시 방문하여 소음, 환경저해 등 단지 및 주변 여건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단지 및 주변여건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정일(입주자 사전점검 등의 지정일) 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해 건설현장 내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 인허가 과정에서 아파트 및 근린생활시설의 외관디자인(입면, 색채, 마감재료 재질, 조경 등)은 변경 또는 수정될 수 있습니다.
- 저층부 일부 세대는 도로, 공원녹지 및 인근 산책로, 기타 부대시설 등에 인하여 실내가 투시될 수 있고 공용재산인 조경용 수목으로 인한 일조권·조망권 침해 및 보안등(가로등) 설치로 인한 세대 내부 사생활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조경 및 식재 계획은 수급여건 및 현장여건, 관계기관의 협의 등의 결과에 따라 수종(규격, 수량 등) 및 수목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용부의 공용시설물(조경수목 포함)에 대하여 이설, 증설, 변경 등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조경, 현관, 지하출입구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를 수 있으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지구설계, 단지설계, 동별 설계, 세대 내부 설계, 외부 및 내부의 시설물, 자재 및 형태(입면, 색채, 재질, 조경) 등이 인허가 관청의 명령, 자재의 품질, 자재가격의 비정상적 급등, 갑작스런 관련법규 변경 등에 의해 변경 또는 수정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경공간에 지하시설물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환기창, 드라이 에어리어, 제연팬룸, 탑라이트(채광유도창)]이 노출될 수 있어, 단지 내 통행로 등에 인접한 경우 생활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며, 또한 인접세대는 소음, 분진, 악취 및 조망권 등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실제 시공 시 입면디자인(저층부 도장 디자인 포함), 주출입구, 조경, 색채, 몰딩, 창호, 문주, 부대복리시설, 옥상 장식물, 필로티, 각종 시설물의 디자인 및 마감사양, 동선체계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경 수목, 시설물 등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위치와 형태, 재료가 입주자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저층 세대는 보행자의 시선에 사생활 또한 조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단지 경계부는 도로, 주변 부지와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동별 배치에 따라 같은 방향이라도 층에 따라 일조량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동의 저층부 일부 세대는 공용재산인 조경용 수목으로 인한 조망권, 일조권 침해 및 가로등 설치로 인한 세대 내부 사생활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배치 특성상 단지내외도로(지하주차장 램프 포함)와 단지내 비상차로 등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의 경우 경사진 도로 및 곡선도로, 주통행도로, 인근산책로, 부대시설이용 등으로 인하여 차량전조등, 보안등, 주차관제용 출차주의등, CCTV 및 소음 등으로 인한 사생활권 및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지하주차장 입구에 설치된 차량 출차주의등과 장애경보등에 인접한 일부 동은 경보음으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기계실, 비상발전기실, 전기실 및 지하주차장의 환기를 위한 급·배기용 환기탑(드라이 에어리어)이 일부 동 주변에 설치되어 소음, 냄새, 냉각탑 가동으로 인한 수증기 및 비상발전기 운전으로 인한 매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가로등, 자전거보관소, 재활용품보관소, 옥외쓰레기함 등이 주변세대에 근접하여 설치되어 있어 이로 인한 냄새, 미관저해, 소음, 매연, 진동, 불빛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호별 위치에 따라 승강기, 비상발전기, 각종기계, 환기, 공조설비 등의 설비 가동으로 인한 진동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아파트와 근린생활시설·판매시설 등의 전기공급을 위한 한전 시설물(변압기, 개폐기 등)이 동 주변, 산책로 등 지상에 설치되어 일부 세대, 산책로에서 보일 수 있습니다.
- 단지의 지하주차장 출입구 지상부에는 주차관제(진출입)설비가 설치되지 않으며,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주차관제(진출입)설비는 단지 여건상 경비실과 떨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천정은 각종 배선 및 배관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방범용 CCTV는 지하주차장, 승강기 내부, 단지출입구, 어린이놀이터, 지하층 및 1층 공동현관 주출입구 등에 설치되어 있으며 야간에 설치 위치 환경에 따라 화질이 주간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전기자동차 전용 급속충전기(50KW) 1대, 완속충전기(7KW) 3대가 지하주차장 지하1층 1709동과 1710동 사이에 설치됩니다.
- 전기자동차 충전용 과금형콘센트(3.5KW) 22개가 지하주차장 지하2층 1702동과 1703동 사이에 5개, 1704동과 1705동 사이에 3개, 1709동과 1710동 사이에 5개, 지하1층 1702동과 1703동 사이에 6개, 1709동과 1710동 사이에 3개 설치됩니다.
- 전기자동차 주차구획과 충전설비의 설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충전설비 설치공간으로 인해 일부 주차구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경관조명(공용조명, 단지홍보사인물 포함)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보수 등의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의2 및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4조의2 등에 의거, 기간통신사업자 협의대표인 한국전파진흥협회 이동통신설비 구축지원센터와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장소 및 설치방법 등에 대해 협의하였습니다.
- 단지 내에 기간통신사업자의 이동통신 중계기 및 옥외안테나가 설치될 예정이며, 본 공사 시 우수한 통신품질이 제공될 수 있는 위치로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이동통신설비가 지하주차장(1703동, 1705동 주변)과 옥상(1703동, 1707동, 1709동)에 설치될 예정이며, 추후 이와 관련하여 문제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TV공청안테나, 위성안테나 및 피뢰침은 1701동 옥탑층에 설치되어 이로 인해 미관이 저해될 수 있으며, 일부 동 옥상에 야간경관용 조명이 설치되어 이로 인한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한 피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각동 옥상에는 태양광 발전설비가 설치되어 있고, 배선을 위한 케이블덕트시설이 옥상바닥에 노출될 수 있으며, 일부 세대의 경우 태양광발전설비의 반사광으로 일시적 눈부심 현상 및 인버터의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 타입별 아트월 및 가구, 도배, 타일, 조명기구, 배선기구, 위생도기와 마감재의 경우, 동일 타입이라도 평면상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별로 설치되는 조명기구, 배선기구, 월패드, 주방TV폰 등 마감자재는 동일 면적의 타입일지라도 사이버 견본주택에서 보이는 이미지와 디자인 및 색상이 다를 수 있으며 설치수량 및 배치 구조도 실내 공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일부 세대 간벽 및 외벽에 면하는 침실의 콘센트는 결로현상 및 소음 전달방지 등을 위해 다른 세대와 위치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동체감지기는 1,2층 및 최상층에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 거실 벽면에 벽걸이TV 설치를 위한 못 박음이나 드릴을 이용한 작업 시 전기·통신용 매입배관이 파손될 수 있으니 설치 전 반드시 관리사무소에 확인 받으시기 바랍니다.
- 세대 내 주방의 식탁용 조명기구는 보편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을 예상하여 위치를 선정하였으며, 조명기구 위치변경은 불가하며 계약 전 위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통신 통합단자함, 전기 세대분전반은 현관 측벽에 설치되어 있어 점검 및 추가 장비설치 시 관리사무소에 확인 받으시기 바랍니다.
- 정수기, 비데, 인덕션 레인지 등 일부 가전제품 사용 시 순간전압강하 현상에 의해 세대 내 전등에 깜빡임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전제품 구입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여건

- 마곡지구 17단지는 총 577세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분양세대(381세대) 및 장기전세주택 196세대(주거약자형 16세대 포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1705동과 1706동은 공향대로, 1701동, 1702동, 1703동, 1704동은 방화대로에 접하여 있으며 이에 따른 소음 및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703동과 1707동에 어린이놀이터가 있고, 1708동 부근에 유아놀이터가 있어 인접한 세대는 소음, 사생활 침해 등 생활 불편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지상 재활용품보관소는 1701동과 1702동 사이, 1703동 서측, 1704동, 1707동, 1708동, 1709동 각각 동측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 위치는 사용성 및 지자체 조례 등의 최종 검토결과에 따라 위치 및 개소가 일부 조정될 수 있으며, 시설 주변 동은 조망권 및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불가피하게 동 인접 배치로 인해 일부 저층세대에 음식물쓰레기 악취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RFID시스템 도입 및 수시 청소관리가 필요합니다.
- 필로티는 1702동, 1704동, 1705동, 1706동, 1707동, 1709동에 설치되었으며, 필로티 옆 또는 상부층 세대는 자전거보관대, 우편보관함의 시설 이용과 보행자 통행에 의한 소음 발생으로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무인 택배보관함은 각 동 지하 1층에 라인별 1개소씩 설치되어 있습니다.
-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이 1701동 1층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 1707동 1층에는 게스트 하우스, 창작소, 피트니스센터가 위치하고 있어 소음 등 생활불편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1704동 지하에는 전기실, 발전기실이 위치하고 있어 소음, 진동 등 생활불편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1701동, 1709동, 1710동은 지하주차장 출입구와 인접하여 있어 소음 등 생활불편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1701동, 1710동 사이에 주출입구가 있어 출퇴근 시간대에 차량소음 및 매연발생이 예상됩니다.
- 1709동 2~4호라인은 단지 내 지하주차장 출입구가 인접하여 자동차 전조등에 의한 불빛 등으로 생활 불편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1706동 북측 방향에 공향대로 및 버스정류소가 있어 차량 소음 및 매연으로 인한 불편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1708동 저층부분은 1층에 보육시설이 설치되어 음식 냄새 또는 소음 및 사용상 불편이 발생할 수 있어 반드시 청약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704동 1층에 관리사무소가 설치되어 있어 사용상 유리하나, 입주민 통행으로 개인 프라이버시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1701동 1층, 1704동 1~3층, 1705동 1~3층, 1706동 1~3층, 1707동 1~2층에는 근린생활시설 또는 판매시설로 인하여 소음, 진동 및 냄새 등 사생활권 및 환경권의 제약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배치 및 사용 편의성을 충분히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1702동과 1703동 사이(1703동 서측), 1707동과 1708동 사이(1707동 동측)에 어린이놀이터가 있고, 1708동 인근에 유아놀이터가 있어 인접한 세대에 소음, 실내투사로 인한 사생활 침해 등 생활 불편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1703동과 1704동 사이에 주민운동시설이 있어 인접한 세대에 소음, 실내투사로 인한 사생활 침해 등 생활 불편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1702동 동측, 1709동 동측에 주민휴게시설이 있어 인접한 세대에 소음, 실내투사로 인한 사생활 침해 등 생활 불편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1707동 3층에 휴게공간(수목 식재공간)이 있어 해당 층 북측 세대는 소음, 실내투사로 인한 사생활 침해 등 생활 불편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1710동 1층(저층) 세대는 남측 인접보도로부터 실내투사로 인한 사생활 침해 등 생활 불편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1702동 동측에 설치되는 미술작품은 스테인리스를 따라 물이 낙하하는 형태의 작품으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701동, 1704동, 1706동 일부 세대 PD 내부에 판매시설 배기덕트가 설치되어 소음, 진동 등 생활 불편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공공장소인 휴게공간과 필로티, 유아놀이터, 어린이 놀이터, 관리사무소 및 경로당, 보행로, 운동시설, 주민공동시설 등의 설치로 인접한 세대에 생활 소음피해, 실내투사로 인한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 동 주출입구에 인접하여 자전거보관소가 설치되며 저층 일부 세대 조망권 및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부대시설

-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내용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내용(위치)
부대시설	주차장	총 625대 - 지하1층(278대), 지하2층(347대) ※ 공동주택 542대, 판매시설 79대, 근린생활시설 4대
	관리사무소	1704동 1층
	경비실	지상 1개소, 지하 1개소(지하1층)
	통신실	지하 1층
	기계/전기실	지하 2층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내용(위치)
복리시설	경로당	1703동 서측 1층
	어린이집	1708동 서측 1층
	작은도서관	1703동 남측 1층
	주민공동시설	피트니스, 게스트룸, 창작소, 실내놀이터, 멀티룸, 사회적기업
	게스트하우스	1707동 동측 1층
	주민운동시설	1704동 전면부 체력단련시설 5종 설치
	휴게시설	1702동 독서마당 휴게소 조성, 1709동 창작마당조성 환경조형물설치
	근린생활시설	1701동 1층 전체
	어린이놀이터	1703동, 1707동 어린이놀이터 1, 2조성(조합놀이대 등)
	유아놀이터	1708동 보육시설 전면부 유아놀이터 조성

■ 기타 유의사항

- 각종 인쇄물 및 이미지, 모형에 표현된 조경계획 및 식재, 시설물, 주민운동시설, 포장, 주변 환경, 부지 고저차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SH 홈페이지 또는 팸플릿 등의 인쇄물에 삽입된 각종 조감도, 배치도, 평면도 등[단위세대 실내마감(세면기, 변기 위치, 창호 종류 및 위치, 등기구 종류, 벽체 등 포함), 외부색채계획, 단지주변 건물 및 도로, 조경시설물, 단지 진입로 등 포함]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것으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인쇄 및 편집과정에 일부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당첨자가 계약체결 시 기본주택,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 단지설계, 동별 설계, 세대 내부 설계, 외부 및 내부의 시설물, 자재 및 형태 등이 인허가 관청의 명령, 자재의 품질, 자재가격의 비정상적 급등, 갑작스런 관련법규 변경 등에 의해 변경 또는 수정될 수 있습니다.
- 사이버 모델하우스 촬영세대 및 팸플릿 등에 적용된 마감자재는 유사 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사이버 모델하우스 촬영에 설치된 조명기구, 콘센트, 스위치, 통신월패드, 현관도어폰은 모양, 규격 및 설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광고, 홈페이지 홍보물 등 홍보물 제작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기, 오타자로 인하여 잘못 기재될 수 있으니 청약 시 충분히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주변 토지 및 건물 현황은 간략하게 표현된 것이므로 입주 전에 반드시 현장 답사 및 사전확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지 조경 및 세부식재 계획은 수급여건 및 현장여건,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의 결과에 따라 수종(규격, 수량 등) 및 수목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조감도, 세대평면도의 면적, 치수 등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것으로, 실제 시공 시 불합리한 설계의 개선 및 표현 오류·오기의 정정, 성능개선, 품질제고를 위해 경미한 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또한 성능, 제품의 사양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내 공기질관리법」 제9조에 의거 공동주택 실내 공기질 측정결과를 입주 3일 전부터 60일간 입주민의 확인이 용이한 곳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마곡지구 17단지는 건축법 제65조와 친환경 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녹색 건축 예비 인증 우수등급,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 예비인증 1++등급으로 인증되었습니다.
- 내화성능시험이 요구되는 공종의 경우, 성능인증 및 인증표시는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등으로 같음할 수 있으며, 입주 후 임의해제 및 부속물(도어락 등)의 임의설치, 교체에 따른 성능시험 결과는 발주처 및 시공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 공용부의 공용시설물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이설, 증설, 변경 등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단지 준공 후 구조물 및 시설물의 유지 및 안전을 위한 관계기관 점용료는 입주자 부담으로 합니다.
-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세대 내부를 입주자 임의로 개조하는 것은 불법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불법개조로 인하여 화재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우리 공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각종 인쇄물에 명기된 면적의 소수점 이하 숫자는 실제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계약 이후 계약자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은 불가합니다.

- 지정일(건본주택 운영기간, 입주자 사전점검 등의 지정일) 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해 건설 현장 내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 건본주택 및 팸플릿 등에 적용된 마감재 수준 이상으로의 변경 요구는 불가하니, 마감재 수준을 자세히 확인한 후 신청 및 계약체결 하시기 바랍니다.
- 건본주택 및 팸플릿 등에 적용된 마감재는 유사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건본주택 동, 호수의 도배, 마루, 가구문짝, 가구손잡이, 도장은 향후 재시공할 예정이며 상기 품목 이외에 대하여 교체요구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건본주택은 대표평형만 운영하며, 사이버모델하우스 및 팸플릿 상 마감재 수준을 필히 확인 후 신청 및 계약체결 하시기 바랍니다.
- 본 분양주택의 공급가격은 각 세대의 주택형별, 동별, 층별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세대별 공급 금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택의 동·호수는 동별, 층별, 향별 구분 없이 전산 추첨하므로 신청인이 주택의 방향, 평면 배치 등 아파트 배치 구조와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체결하여야 합니다.
-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부터는 입주를 하지 않을 경우에도 제반 공과금 및 관리비를 입주예정자가 납부해야 합니다.
- 신청 및 계약 시 분양장소 주변의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부동산중개 등)는 우리 공사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 잔금은 은행에서만 수납이 가능하며 관리사무소 및 주거복지센터에는 납부 불가합니다.
- 입주금(주택가격, 발코니확장비용 포함)의 납부는 계약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열쇠 불출(비밀번호 수령) 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잔금 납부 전에는 인테리어 공사, 입주청소 등 각종 개인 목적을 위한 열쇠불출(비밀번호 수령)이 불가하며, 잔금을 완납하더라도 입주개시시작일 이전에는 열쇠불출(비밀번호 수령)이 불가합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상 가능합니다.
- 하자 관련 문의 및 하자 접수는 입주지원센터 내 하자상담실(운영기간 : 입주개시 3일 전부터 약 6개월간) 및 하자119센터(운영기간 : 입주지원센터 종료 후 약 6개월간)를 통하여 이루어지며, 이후 하자 접수는 관리사무소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단지 여건에 따라 운영기간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공용부분(주거공용 제외)과 부대시설(경로당, 작은도서관, 주민복지시설 등) 중 일부가 입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입주지원 업무시설(입주지원센터 및 하자119센터) 및 하자보수용 자재 보관장소로 사용될 수 있으며, 장소 사용에 대한 사용료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주택가격에는 소유권이전등기 시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취득세는 계약자가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재지 관할구청에 분양계약서와 분양금납부확인서를 지참하시어 자진신고 후 납부하여야 합니다.
- 건물소유권이전등기 필요서류 교부신청은 우리공사 명의의 건물보존등기 접수 후에 발송하는 건물등기안내문을 수령한 후에 방문신청하시고, 건물 소유권이전등기 필요서류 교부는 건물보존등기가 완료된 후에 교부할 수 있습니다.



6. 주택성능등급의 표시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

- 1. 공동주택명 : 마곡지구 공동주택 10-2단지 건설공사
- 2. 신청자 : 서울주택도시공사
- 3. 대지위치 :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도시개발사업지구 AC10-2BL
- 4. 성능등급

가. 소음 관련 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1. 경량충격을 차단성능	★★★★
2. 중량충격을 차단성능	★
3. 세대 간 경계벽의 차음성능	★★
4. 교통소음(도로, 철도)에 대한 실내·외 소음도*	-
5. 화장실 급배수 소음	★★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적용의 특례)에 해당하는 경우 성능등급 표시대상에 포함하지 않음

나. 구조 관련 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1. 내구성	★
2. 가변성	★★★★
3. 수리용이성 전용부분	★
4. 수리용이성 공용부분	★★

다. 환경 관련 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1. 기존대지의 생태학적 가치	★★★★
2. 과도한 지하개발 지양	-
3. 토공사 절토·성토량(땅췌기·흙쌓기를 한 양) 최소화	★★★★
4. 일조권 간섭방지 대책의 타당성	-
5. 에너지 성능	★★★★
6. 에너지 모니터링 및 관리지원 장치	★
7. 신·재생에너지 이용	★★★★
8. 저탄소 에너지원 기술의 적용	★★★★
9.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사용 금지	★
10. 환경성선언 제품(EPD)의 사용	★★★
11. 저탄소 자재의 사용	★★★
12. 자원순환 자재의 사용	★★★
13. 유해물질 저감 자재의 사용	★★★
14. 녹색건축자재의 적용 비율	★★★
15. 재활용가능자원의 보관시설 설치	★
16. 빛물관리	★★
17. 빗물 및 유출지하수 이용	★★★
18. 절수형 기기 사용	★★

라. 환경 관련 등급(계속)

성능항목	성능등급
19. 물 사용량 모니터링	★★
20. 연계된 녹지축 조성	-
21. 자연지반 녹지율	★
22. 생태면적률	★
23. 생물서식공간(비오톱) 조성	-
24. 실내공기 오염물질 저방출 제품의 적용	★★★
25. 자연 환기성능 확보	-
26. 단위세대 환기성능 확보	★★★
27. 자동온도조절장치 설치 수준	★★

리. 생활 환경 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1. 단지내·외 보행자 전용도로 조성 및 연결	★★★★
2. 대중교통의 근접성	★★★
3. 자전거주차장 및 자전거도로의 적합성	★
4. 생활편의시설의 접근성	★★★★
5. 건설현장의 환경관리 계획	★★★
6. 운영·유지관리 문서 및 매뉴얼 제공	★★★★
7. 사용자 매뉴얼 제공	★★★★
8. 녹색건축인증 관련 정보제공	★★★★
9. 단위세대의 사회적 약자배려	★
10. 공용공간의 사회적 약자배려	★★
11. 커뮤니티 센터 및 시설공간의 조성수준	★★★
12. 세대 내 일조 확보율	★
13. 홈네트워크 종합시스템	★★★
14. 방범안전 콘텐츠	★★★

마. 화재·소방 관련 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1. 감지 및 경보설비	★
2. 제연설비	★
3. 내화성능	★
4. 수평피난거리	★★
5. 복도 및 계단 유효너비	★
6. 피난설비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 16조,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 및 「주택법」 제3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2022년 07월 22일

한국부동산원



7.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구 분	적용 여부
외벽(외기직접면함)	적용
외벽(외기간접면함)	적용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외기직접면함)	적용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외기직접면함)	적용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외기간접면함)	적용
창호(외기직접면함)	적용
창호(외기간접면함)	적용
현관문(외기간접면함)	적용
단열조치	적용
바닥난방의 단열재	적용
방습층	적용
설계용 외기조건준수	적용
열원 및 반송설비	적용
고효율 전동기	적용
고효율 난방, 급탕·급수 펌프	적용
절수형 설비	적용
실별 온도조절장치	적용
수변전설비	적용
간선 및 동력설비	적용
조명	적용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적용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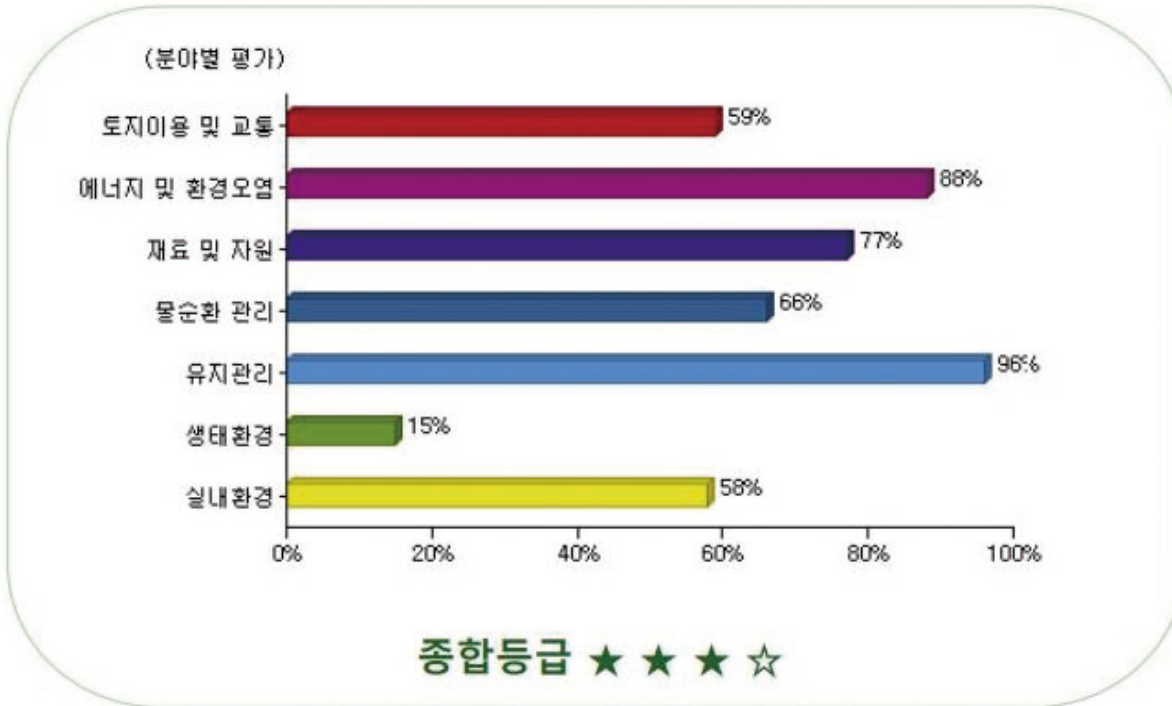


8. 녹색건축 예비인증서

녹색건축 예비인증서

건축물 개요	인증 개요
건축물명 : 마곡지구 공동주택 10-2단지 건설공사 건축주 : 서울주택도시공사 준공(예정)일 : 2025.06.30. 주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도시개발사업지구 AC10-2BL 층수 : 지하2층, 지상16층 연면적 : 77,215.7300㎡ (평가 연면적: 77,215.7300㎡) 건축물용도 : 공동주택 설계자 : (주)한빛종합건축사사무소	인증번호 : G-SEED-P-2022-0814-5 인증기관 : 한국부동산원 유효기간 : 2022.07.22. ~ 사용승인일과 녹색건축인증서 발급일 중 앞선날 인증 등급 인증등급 : 우수(그린2등급) 인증기준 : 녹색건축 인증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 2019-764호, 환경부고시 제2019-248호, 인증기준 운영세칙(2020.04.30.))

위 건축물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 및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녹색건축(우수(그린2등급)) 건축물로 인증되었기에 예비인증서를 발급합니다.



2022년 07월 22일

한국부동산원장



* 예비인증 받은 건축물은 완공 후에 본인증을 받아야하며, 설계변경에 따라 인증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9. 마감자재 목록표

구분	항목		전용 59㎡	전용 84㎡
현관	현관도어록		디지털도어록	디지털도어록
	세대현관문		철재방화문	철재방화문
	바닥		포세린타일	포세린타일
	마루귀틀		인조대리석	인조대리석
	신발장		설치	설치
	다기능생활정보기(일괄소등)		설치	설치
거실	벽지/천장지		친환경(실크)	친환경(실크)
	거실아트월		설치	설치
	거실가구		미설치	미설치
	바닥		강화합판마루	강화합판마루
주방	벽지/천장지		친환경(실크)	친환경(실크)
	바닥		강화합판마루	강화합판마루
	주방벽		엔지니어드스톤	엔지니어드스톤
	주방가구	문짝	설치	설치
		상판	엔지니어드스톤	엔지니어드스톤
	주방TV폰		설치	설치
	걸레받이		PVC / 무늬목시트	PVC / 무늬목시트
	레인지후드		설치	설치
	빌트인 가스쿡탑		설치	설치
	음식물탈수기		설치	설치
	싱크수전 절수기		미설치	미설치
	행주도마살균기		미설치	미설치
전기요븐/식기세척기		미설치	미설치	
주침실	바닥		강화합판마루	강화합판마루
	화장대		설치	설치
	드레스룸 의류수납장		설치	설치
	스위치		네트워크스위치	네트워크스위치
침실 1,2	침실문	문틀/문선	목재문	목재문
		문짝	목재문	목재문
	바닥		강화합판마루	강화합판마루
	벽지/천장지		친환경(실크)	친환경(실크)
욕실	벽		도기질 타일	도기질 타일
	바닥		자기질 타일	자기질 타일
	천장		ABS	ABS
	세면기(부부욕실)		페데스탈일체형	페데스탈일체형
	세면기(공용욕실)		페데스탈일체형	페데스탈일체형



구분	항목	전용 59㎡	전용 84㎡
욕실	욕조(공용욕실)	세라믹	세라믹
	욕조수전(공용욕실)	싱글레버	싱글레버
	샤워수전(부부욕실)	레인형 샤워	레인형 샤워
	양변기(공용욕실)	비데일체형	비데일체형
	양변기(부부욕실)	원피스형	원피스형
	휴지걸이	매립형	매립형
	양변기청소솔	설치	설치
	코너선반(1단,공용욕실)	유리형	유리형
	수건걸이	일반형	일반형
발코니	바닥	자기질 타일	자기질 타일
	내부창호	합성수지	합성수지
	외부창호	합성수지	합성수지
	발코니샤시	합성수지	합성수지
	발코니동작감지기	동체감지기(1~2층, 최상층)	동체감지기(1~2층, 최상층)
	세탁기/발코니 수전	설치	설치
에어컨 냉매배관		설치(거실 및 주침실)	설치(거실 및 주침실)
환기시스템		전열교환기(강제환기)	전열교환기(강제환기)
난방시스템		지역난방	지역난방
조명설비	식탁등	설치	설치
	각실 조명등기구	설치	설치
	거실벽부등	미설치	미설치

※ 마감자재는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10.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 공시

- 주택법 제57조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분양가격을 다음과 같이 공시하며,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의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분양가격은 상한금액 미만으로 책정되었고, 아래 공시내역은 실제 분양가격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단위 : 천원)

항목	세분류	단지 총 금액	공급면적 ㎡당	
공사비 (51개)	토목 (13개)	조경공사	1,122,060	35
		토공사	3,263,742	101
		흙막이공사	2,621,436	81
		비탈면보호공사	-	-
		옹벽공사	-	-
		석축공사	-	-
		우오수공사	191,556	6
		공동구공사	-	-
		지하저수조 및 급수공사	-	-
		도로포장공사	114,933	4
		교통안전시설물공사	-	-
		정화조시설공사	-	-
		부대시설공사	263,671	8
		소 계	7,577,398	234

항목	세분류	단지 총 금액	공급면적 ㎡당	
공사비 (51개)	건축 (23개)	공동가설공사	1,093,172	34
		가시설물공사	2,088,081	65
		지정및기초공사	1,891,556	59
		철골공사	20,471	1
		철근콘크리트공사	18,204,582	563
		용접공사	-	-
		조적공사	2,879,674	89
		미장공사	1,248,754	39
		단열공사	1,912,027	59
		방수.방습공사	1,826,047	56
		목공사	151,488	5
		가구공사	2,556,364	79
		금속공사	1,678,473	52
		지붕및흡통공사	94,168	3
		창호공사	3,444,685	107
		유리공사	1,052,229	33
		타일공사	1,229,171	38
		돌공사	1,873,020	58
		도장공사	1,379,771	43
		도배공사	618,236	19
		수장공사	1,224,189	38
		주방용구공사	196,525	6
		그 밖의 건축공사	1,263,212	39
	소 계	47,925,895	1,483	
	기계 설비 (9개)	급수설비공사	1,051,697	33
		급탕설비공사	611,433	19
		오배수설비공사	2,299,474	71
		위생기구설비공사	1,339,424	41
		난방설비공사	2,833,930	88
		가스설비공사	453,389	14
		자동제어설비공사	325,007	10
		특수설비공사	463,267	14
		공조설비공사	854,476	26
	소 계	10,232,099	317	
	그밖의 공종 (4개)	승강기공사	1,427,942	44
		전기설비공사	5,647,977	175
		정보통신공사	3,929,251	122
		소방설비공사	4,403,220	136
	소 계	15,408,391	477	
	그밖의 공사비 (2개)	일반관리비	1,757,859	54
		이윤	915,705	28
		소 계	2,673,564	83
	간접비 (6개)	설계비	1,066,061	33
		감리비	4,066,851	126
		분담금 및 부담금	485,491	15
		그 밖의 사업비성경비	8,623,866	267
		일반분양시설경비	-	-
		보상비	-	-
	소 계	14,242,269	441	
	그밖의비용(1개)	기본형건축비에 가산되는 비용	29,453,403	911
	건물분양가격 계		127,513,019	3,945

※ 공급면적 : 주거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



11. 건축비 가산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구분	단지 총액	구분	단지 총액
구조형식	3,800,639	말뚝박기 공사비	2,462,412
공동주택성능등급	1,520,256	흙막이 및 차수벽 공사비	2,333,890
법정초과 복리시설	526,633	감리비 가산비	4,588,282
인텔리전트설비	4,756,642	설계 가산비	148,125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1,811,930	안전관리비	259,334
사업승인 조건부	1,561,202	법령, 조례 등의 제정·개정	5,288,861
지하주차장 층고 상향	395,197	소계	29,453,403

※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의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으며, 분양가격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12. 택지의 감정평가기관 및 감정평가액

감정평가금액(산술평균액)	가. 대화감정평가법인	나. 가람감정평가법인
283,601,100천원	285,906,800천원	281,295,400천원

13. 사업주체 및 시공업체 현황

지구 및 단지	사업주체 (사업자등록번호)	시공업체 (사업자등록번호)	연대 보증인	감리회사
마곡지구 17단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주체 : SH ○ 사업자등록번호 : 218-82-00136 ○ 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6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체명 : 이수건설(주) ○ 사업자등록번호 : 206-81-40254 	-	(주)건축사사무소 건원엔지니어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체명 : 파인건설(주) ○ 사업자등록번호 : 314-81-96613 		(주)케이디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체명 : 엘티삼보(주) ○ 사업자등록번호 : 617-81-08420 		(주)건축사사무소 테크뱅크
				(주)토문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주)아이티엠 건축사사무소

14. 견본주택 및 공식 홈페이지 안내

마곡지구 17단지 견본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동 747-1 ○ 주차 : 주차가 불가하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시는 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하철 : 5호선 마곡역 7번 출구 도보 10분, 5호선 송정역 3번 출구 도보 10분 - 버스 : 공향중학교, 마곡엠밸리 9·10단지 하차 (60, 60-3, 388, 1002, 601, 605, 654, 6629, 6633) ○ 운영기간 : 2026.03.07.(토) ~ 03.09.(월) 10:00 ~ 17:00
사이버 견본주택	공식 홈페이지 및 문의전화
<p>SH인터넷청약시스템(www.i-sh.co.kr/app) > 사이버 모델하우스 > 주택분양 > 마곡지구 17단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홈페이지 : www.i-sh.co.kr ○ 인터넷청약시스템 : www.i-sh.co.kr/app ○ 문의전화 : 1600-3456



SH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06336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개포동 14-5)

www.i-sh.co.kr

콜센터 1600-3456